동행·매력 특별시 서울

서울시보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www.seoul.go.kr

제3979호(그2)

2024. 5. 23.(목)

서울특별시

목 차

◈ 자치법규 등

[입법예고]

제2024-1584호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2
제2024-1585호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169

자치법규 등

[입법예고]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1584호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5월 23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민선8기 후반기 시정 추진력 강화를 위한 조직개편으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정 핵심사업 추진을 위한 기구 신설 및 간결한 명칭으로의 기구 명칭 변경
- 전략적 이민·외국인정책 추진을 위한 ‘글로벌도시정책관’과 부실공사 ZERO 서울 실현을 위한 ‘건설기술정책관’ 신설
-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가족실), 경제정책실 (→ 경제실), 복지정책실 (→ 복지실), 도시교통실 (→ 교통실), 노동·공정·상생정책관(→ 민생노동국), 디지털정책관(→디지털도시국), 재난안전관리실 (→ 재난안전실), 주택정책실 (→ 주택실), 푸른도시여가국 (→ 정원도시국)

※ 직급상향 등을 반영한 명칭변경 : 미래청년기획단(→미래청년기획관), 민생사법경찰단(→민생사법경찰국)

나. 주요 실국(1급 기구)의 핵심사업 추진력 강화를 위한 통솔범위 조정
- 교통실, 복지실, 주택실, 재난안전실에 ‘교통운영관’, ‘돌봄·고독정책관’, ‘주택정책관’, ‘도로기획관’ 신설

다. 환경변화와 신규 행정수요 대응을 위한 기구 개편 및 소관사무 기능 조정
- (여성가족실) 저출생 대응을 위한 전담부서 ‘저출생담당관’ 신설
  - ▸ 외국인 주민·다문화가족 관련 업무는 글로벌도시정책관으로 이관
  - ▸ 1인가구 지원사업은 복지실로 이관
- (미래청년기획관) 미래청년기획단을 미래청년기획관으로 재편하고, 산하에 ‘청년정책담당관’ 및 ‘청년사업담당관’ 신설
- (기획조정실) 약자와의동행추진단을 기획조정실 산하 ‘약자동행담당관’으로 재편하고,

인구변화대응 기능 등 부서 간 업무조정

▸ 공공자산에 관한 사무는 도시공간본부 및 미래공간기획관으로 이관

▸ 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 운용 업무는 균형발전본부로 이관

- (경제실)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 기능을 강화하여 대학창업과를 '대학협력과'로 재편

▸ 국제교류에 관한 사무는 글로벌도시정책관으로 이관

- (복지실) 돌봄 복지 및 사회적 고립 해소 전담 '돌봄·고독정책관' 신설 및 고독고립 문제 및 사회적 교류 지원 총괄 부서인 '고독대응과' 신설
- (교통실) 교통환경 조성을 담당하는 '교통운영관'을 신설하고, 교통지도과를 교통지도단 속반으로 재편하여 주차계획과 산하로 편제
- (문화본부) 문화재정책과 및 문화재관리과를 '문화유산보존과' 및 '문화유산활용과'로 재편하여 문화유산 유지보수·전수·계승, 문화유산 복원·가치제고 기능 강화

▸ 서울사진미술관 및 서울우리소리박물관 업무를 서울시립미술관 및 서울역사박물관으로 각각 이관

- (시민건강국) 시민의 건강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건강관리과'를 신설하고, 감염병연구센터 및 공공의료추진단 폐지하며 기능을 감염병관리과 및 공공의료과로 이관
- (민생노동국)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을 민생노동국으로 재편하고, 부서편제 및 명칭변경
- (디지털도시국) 디지털정책관을 디지털도시국으로 재편하고, 부서편제와 명칭을 변경하며, 정보시스템담당관·정보공개담당관을 '정보시스템과'로 통합하고, 정보통신보안담당관을 폐지하고 '정보보안과' 및 '정보통신과' 신설
- (민생사법경찰국) 민생사법경찰단을 민생사법경찰국으로 재편하고, 산하에 '경제수사과' 및 '안전수사과' 부서 신설
- (미래공간기획관)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전담 '용산입체도시담당관' 신설 및 펀시티 서울 조성 전담 '도시활력담당관' 신설
- (디자인정책관) 자율신설기구였던 디자인정책관을 행정2부시장 산하 보좌기구로 재편
- (재난안전실) 도로분야 업무를 전담하는 '도로기획관'을 신설하고, 보도 안전관리 강화 및 특색있는 매력거리 조성을 위한 '보행환경개선과' 신설

▸ 건설혁신과 관련 사무는 건설기술정책관으로 이관

- (주택실) 주택정책·기획 업무를 총괄하는 '주택정책관'을 신설하고, 한시기구였던 주택공급기획관을 일반기구인 '건축기획관'으로 변경하며, 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임대주택과'를 신설하고 주택실 내 부서 명칭 및 직제순을 변경

▸ 지역건축안전센터 관련 사무는 건설기술정책관으로 이관

- (균형발전본부) 한시기구인 '균형발전기획관'을 일반기구화하여 균형발전사업의 지속적 추진기반 마련
- (시립병원) 병원 현장 간호서비스 제고 및 환자간호 책임성 강화를 위하여 3개 시립병원에 병동단위로 '병동간호과' 설치
- (감사위원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인식 개선을 위한 '청렴담당관'을 신설

▸ 인권 관련 업무 기능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로 이관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고, 인권 관련 업무를 위원회 소관으로 편제

- 그 외, 행정국, 재무국, 도시공간본부, 정원도시국, 서울아리수본부, 미래한강본부, 데이터센터, 서울역사박물관, 서울공예박물관, 서울도서관, 서울역사편찬원 사무분장 현행화 등 조문정비

라. 개방형 직위 관련 변경사항 반영

- 개방형 직위해제에 따른 규칙개정 7건, 직위 신규지정에 따른 개정 7건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12일까지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참조 : 조직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조직담당관(전화: 02-2133-672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의견서에 기재할 사항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2)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 조직담당관
- 이메일 : syg1108@seoul.go.kr
- 온라인 :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 이 입법예고문 및 규칙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규칙 제 호

이 규칙의 개정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홍보기획관, 약자와의동행추진단”을 “홍보기획관”으로, “여성가족정책실, 노동·공정·상생정책관, 비상기획관, 디지털정책관, 민생사법경찰단, 미래청년기획단”을 “여성가족실, 비상기획관, 미래청년기획관”으로, “기술심사담당관을 둔다”를 “건설기술정책관을 둔다”로 한다.

제6조를 삭제하고 제7조를 제6조(종전의 제7조)로 하며,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글로벌도시정책관) ① 글로벌도시정책관은 지방이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 글로벌도시정책관은 이민·외국인정책, 외국인주민·다문화가족 지원, 도시외교, 국제협력 사무에 관하여 행정(1)부시장을 보좌한다.
③ 글로벌도시정책관 밑에 외국인이민담당관·다문화담당관·도시외교담당관·국제협력담당관을 두고, 외국인이민담당관·다문화담당관·도시외교담당관·국제협력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④ 제3항의 도시외교담당관은 개방형직위로서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⑤ 외국인이민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이민·외국인정책에 관한 사항 총괄 기획·조정
2. 이민·외국인정책 관련 정부부처 협력 및 제도개선
3. 외국인 인력 유치 확대, 정착 유도 및 지원
4.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 정착 유도 및 지원
5. 서울 글로벌센터 빌딩 운영 및 관리
6. 외국인 학교 건립 및 교육환경 개선
7. 외국인 인력 분포, 고용 등 통계 관리
8. 그 밖에 글로벌도시정책관 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⑥ 다문화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외국인주민·다문화가족 생활 지원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총괄 기획·조정
2.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 운영
3.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시설 설치 및 운영
4.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개발·추진

5. 문화다양성 및 다문화 인식 개선에 관한 사항
6. 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에 관한 사항

⑦ 도시외교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아시아태평양·유럽 등 해외지역과의 교류·협력
2. 관할 해외지역 주한 외국공관, 외교부 등과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3. 관할 해외지역의 시민·민간단체와의 국제교류에 대한 지원
4. 국제의전 및 외국인 상훈에 관한 사항
5. 서울특별시 각종 국제회의 총괄 및 조정
6. 국제기구·회의 유치 및 지원·협력에 관한 사항
7. 시티넷 사무국 운영에 관한 사항
8. 글로벌 전문가 등을 활용한 시정 현안 자문 및 국제 협력방안 논의에 관한 사항

⑧ 국제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서울시 국제개발협력사업 총괄
2. 서울시 우수정책 해외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
3. 대외협력기금 국제협력계정 운용에 관한 사항
4. 외국 공무원 초청연수 프로그램 총괄
5. 중앙아·서남아·아세안·중동·중남미·아프리카 등 해외지역과의 교류·협력
6. 관할 해외지역 주한 외국공관, 외교부 등과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7. 관할 해외지역의 시민·민간단체와의 국제교류에 대한 지원

제6조(종전의 제7조)의 제목 “(여성가족정책실)”을 “(여성가족실)”로 한다.

제6조(종전의 제7조)제1항 중 “여성가족정책실장”을 “여성가족실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양성평등, 출생 및”을 “여성가족실장은 저출생, 양성평등,”으로, “가족,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 1인가구”를 “가족”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여성가족실장 밑에 저출생담당관·양성평등담당관·영유아담당관·아이돌봄담당관·아동담당관·가족담당관을 두고, 저출생담당관·양성평등담당관·영유아담당관·아이돌봄담당관·아동담당관·가족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제6조(종전의 제7조)제4항부터 제8항까지 및 제9항을 각각 제5항부터 제9항까지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제6호 중 “시행, 일·생활 균형 업무”를 “시행”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8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제7호부터 제12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안심귀가스카우트, 안심마을보안관, 안심물품·장비, 안심이 시스템 등 안심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제6조(종전의 제7조) 제5항(종전의 제4항)제14호부터 제16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제1호 중 “영유아 및 초등돌봄계획”을 “돌봄 지원 기본계획”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서울형 키즈카페,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제6조(종전의 제7조) 제7항(종전의 제6항)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6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

각 제5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가족다문화담당관”을 “가족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7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제7호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0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11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아이돌보미 사업지원, 공동육아방, 공동육아나눔터 등 영유아 돌봄사업 운영

8. 청소년 한부모·부모 지원 사업

11.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상담시설 운영 지원

제6조(종전의 제7조) 제9항(종전의 제8항)제10호(종전의 제11호) 중 “보호”를 “보호·자립”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인가구담당관”을 “저출생담당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저출생 대응 인구·가족 정책개발 및 기본계획 수립

2. 자녀양육 환경개선 등 출산 및 양육 친화에 관한 사항

3.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지원 및 지도 감독

4. 일·생활 균형 업무

5. 늘봄학교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실 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7조의2를 제17조의3으로하고, 제6조(종전의 제7조)의 제목 “(여성가족정책실)”을 “(여성가족실)”로 한다.

제17조의3(종전의 제7조의2)의 제목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을 “(민생노동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민생노동국에 소상공인정책과·노동정책과·상권활성화과·공정경제과·농수산유통과를 둔다.

② 민생노동국장은 지방이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소상공인정책과장·노동정책과장·상권활성화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공정경제과장·농수산유통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제17조의3(종전의 제7조의2)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노동정책담당관”을 “노동정책과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프리랜서, 플랫폼종사자, 노무제공자 등 비정형노동자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제17조의3(종전의 제7조의2)제5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상공인담당관”을 “소상공인정책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소상공인 온라인 판매 활성화 및 매출 확대 지원에 관한 사항

제17조의3(종전의 제7조의2) 제3항(종전의 제5항)제6호(종전의 제7호) 중 “시민시장 등 소상공”을 “소상공”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9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12호부터 제15호까지를 각각 제9호부터 제

12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16호를 제13호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상권활성화담당관”을 “상권활성화과장”으로 한다.

제17조의3(종전의 제7조의2)제6항(종전의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정경제담당관”을 “공정경제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민생대책 종합계획”을 “공정경제 기본계획”으로 하며, 같은 항 제17호 중 “관리·운영 및 지원”을 “육성 시책 수립 및 관리·운영”으로 하고, 같은 항 제19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18호를 제1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8호 및 제2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수산유통담당관”을 “농수산유통과장”으로 한다.

18. 사회적경제와 관련된 인프라, 지원에 관한 사항

20. 중소기업육성기금(사회적경제계정)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제17조의4를 제17조의6으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17조의4) 제5항제4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5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제8호 중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이의신청”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제3호 중 “불납 결손처분된”을 “정리보류된”으로 하고, 제17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4(디지털도시국) ① 디지털도시국에 디지털정책과·데이터전략과·정보시스템과·정보보안과·정보통신과·공간정보과를 둔다.

② 디지털도시국장은 지방이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디지털정책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데이터전략과장·정보시스템과장·정보보안과장·정보통신과장·공간정보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제2항의 데이터전략과장 및 정보보안과장은 개방형 직위로서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④ 디지털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중장기계획 수립·조정 및 총괄
2. 서울디지털재단 운영 지원 및 지도·감독
3. 인공지능 정책 수립·조정
4. 인공지능 기반 서비스 구축·운영
5. 블록체인 플랫폼 운영 및 비대면 디지털행정서비스 구축·운영
6. 데이터센터 운영의 지도·감독
7. 디지털정책 홍보·마케팅 및 해외교류 협력 추진
8. 위고(WeGO) 사무국 운영 지원
9. 메타버스 계획 총괄 및 행정서비스 구축·운영
10. 전자정부 플랫폼(Platform)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한 사항
11. 디지털 취약계층 역량 강화 관련 사업
12.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데이터전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빅데이터 분석·활용 전략계획 수립·조정
2. 빅데이터 수집·저장·분석·활용 총괄조정
3. 시정 주요 사업 기획·평가를 위한 데이터 분석·지원 등 데이터 기반 행정 추진

4.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운영
5. 공공데이터 표준화 및 품질관리
6. 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 활성화
7. 통계조사의 총괄·조정 및 시행
8. 통계자료 분석 가공·생산, 데이터베이스 구축·운영

⑥ 정보시스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행정정보시스템 정책 수립·조정
2. 업무관리, 데스크톱가상화(VDI), 영상협업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3. 공인 관리·고시·공고·공포 및 발령번호 부여에 관한 사항
4. 문서접수·배부, 우편물 접수·발송 등 문서실 운영에 관한 사항
5.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 심사에 관한 사항
6. 정보화사업 추진 절차에 관한 사항
7. 정보기술아키텍처(EA) 운영에 관한 사항
8. 행정포털, 메일, 메신저, 문자전송시스템, 우편물관리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9. 공공서비스예약, 시도·시군구 행정, 공통행정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10. 모바일오피스, 인공지능회의록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11. 중앙정부와의 정보시스템 연계 추진
12.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관한 사항
13. 행정정보 공개제도 총괄·조정·운영에 관한 사항
14. 정보소통광장 및 문서공개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15. 기록관, 기록문화관, 기록관리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16. 서울기록원 운영의 지도·감독

⑦ 정보보안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정보보안 정책 수립·조정
2. 정보보안감사 총괄 조정 및 시행
3.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 및 사이버침해사고 대응 총괄
4.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 및 운영·관리
5.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에 관한 사항
6. 정보보호시스템 및 서울시사이버안전센터 구축·운영
7. 개인정보보호 정책 수립·조정
8. 개인정보보호시스템 구축·운영
9.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평가 및 유·노출 대응 총괄
10. 사이버공격 대응훈련 및 사이버보안진단의 날 시행
11.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계획 수립·시행
12.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신기술 및 기술기준 보급
13. 중앙정부·유관기관과의 사이버침해 대응 및 개인정보보호 공동협력에 관한 사항

⑧ 정보통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정보통신 정책 수립·조정 및 총괄
2. Wi-Fi, 이동통신 등 유·무선 통신인프라 구축·운영

3. 초고속정보통신 인프라 구축·운영 및 통신망운영센터 운영·관리
4. 소프트웨어기반 정보통신인프라 구축·운영
5. 사물인터넷 계획 수립·조정 및 총괄
6. 정보통신 관련 신기술 및 기술기준 보급
7. 국가정보통신 서비스 관련 사항
8. 영상회의시스템 구축 및 운영
9. 영상정보처리기기 정책 수립·조정
10. 스마트서울 안전망 및 서울시CCTV안전센터 구축·운영
11. 정보통신공사업, 자가전기통신설비 민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2. 다기능 사무기기 및 소프트웨어 보급·관리

⑨ 공간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간정보정책 수립·조정
2. 국가공간정보체계 구축 추진
3. 공간정보 데이터 구축 및 시스템 운영·유지관리
4. 공간정보 표준화 및 품질관리
5. 공간정보 통합·유통·개방 및 이용 활성화
6. 공간정보 교육·홍보 및 정책발굴
7. 3차원 기반 Virtual Seoul 구축·운영
8. 주소정보 정책 수립 및 조정·운영
9. 수치지형도 제작, 갱신 및 유지관리
10. 지도정보 플랫폼 및 스마트서울맵 구축·운영
11. 지하시설물 통합관리체계 구축·운영
12. 실내 공간정보 구축·활용
13. 항공사진의 촬영·관리·활용
14. 무인 비행장치(드론) 및 위성 공간정보 활용체계 구축
15. 서울스마트불편신고 구축·운영
16. 공간정보 보안정책 관리·운영

제9조의 제목 “(디지털정책관)”을 “(미래청년기획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디지털정책관은 지방이사관 또는”을 “미래청년기획관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디지털정책관은 정보화사업”을 “미래청년기획관은 청년정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미래청년기획관 밑에 청년정책담당관·청년사업담당관을 두고, 청년정책담당관·청년사업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제9조제4항 중 “제3항의 빅데이터담당관은 개방형직위로서 제3항의 규정에”를 “제1항의 미래청년기획관은 개방형직위로서 제1항의 규정에도”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디지털정책담당관”을 “청년정책담당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블록체인 플랫폼”을 “서울청년참여기구”로, “비대면 디지털행정서비스 구축·운영”을 “지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

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및 총괄 조정
2.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운영 및 민관협의체 운영지원
3. 청년정책 관련 자치법규(조례, 규칙)의 제·개정 및 운영
5. 국내외 청년교류 및 네트워크 구축
6. 청년인재 발굴 및 지원
7. 청년 주간 운영

제9조제5항제8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빅데이터담당관”을 “청년사업담당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8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7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1. 청년수당 등 청년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2. 사회적 고립청년 등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청년의 정신건강 증진 지원에 관한 사항
4. 청년시설 설치 및 운영
5. 서울광역청년센터 등 청년지원기관의 운영 및 지원
6. 청년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사항
7. 청년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사항

제9조의3 및 제9조의4를 각각 삭제한다.

제10조의 제목 “(기획조정실에 두는 담당관)”을 “(기획조정실)”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정책기획관·재정기획관·기획담당관·조직담당관·창의행정담당관·법무담당관·법률지원담당관·예산담당관·재정담당관·공공자산담당관·평가담당관·공기업담당관”을 “정책기획관·재정기획관·기획담당관·조직담당관·약자동행담당관·창의행정담당관·법무담당관·법률지원담당관·예산담당관·재정담당관·평가담당관·공기업담당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기획담당관·창의행정담당관·법무담당관·법률지원담당관·예산담당관·재정담당관·평가담당관·공기업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조직담당관·공공자산담당관”을 “기획담당관·약자동행담당관·창의행정담당관·법무담당관·법률지원담당관·예산담당관·재정담당관·평가담당관·공기업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조직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조직관리”를 “조직관리, 약자동행, 창의행정”으로, “공공자산 운용, 성과평가”를 “성과평가”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제19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0호를 제21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0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7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8항부터 제10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 서울시 인구변화대응 정책 총괄·조정
20. 도시경쟁력 평가에 관한 사항

⑦ 약자동행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회적 약자와의 동행 계획 수립·총괄 조정
2. 사회적 약자 사각지대 발굴 및 정책 지원에 관한 사항
3. 사회적 약자 동행 지수 개발, 평가에 관한 사항
4. 사회적 약자 지원 관련 유관기관 협력에 관한 사항

5. 각 실·본부·국별 사회적 약자 지원 사업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6. 각 실·본부·국별 사회적 약자 지원 사업 재구조화 및 개선에 관한 사항
7. 각 실·본부·국별 사회적 약자 지원사업 협력에 관한 사항

제10조제8항(종전의 제7항)제8호 중 “도시경쟁력 평가”를 “정책과제 개발 및 자문”으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담당관”을 “예산담당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세입·세출 예산편성
2. 예산집행 및 사후관리 총괄
3. 교육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4. 예비비 관리

제10조제11항제5호 중 “민간보조금사업”을 “중기재정계획 수립”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재정수요 통계지표 선정 및 개발”을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운용”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정부재정지원”을 “복권 수익금 운용·관리”로 하고, 같은 항 제8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공자산담당관”을 “재정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공공기여시설 통합관리”를 “민간보조금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7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시 재정의 경영합리화 총괄
2. 민간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사항
3. 부채관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4. 시 재정 투자사업 심사
6. 재정수요 통계지표 선정 및 개발에 관한 사항
7. 정부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8. 기금관리 총괄
9. 시민참여예산제 운영에 관한 사항
10. 시민 예산절감과 예산낭비 신고 및 예산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
11. 고향사랑 기부에 관한 사항

제10조의2의 제목 “(소방재난본부에 두는 과)”를 “(소방재난본부)”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경제정책실에 두는 국·과)”를 “(경제실)”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경제실에 경제일자리기획관·창조산업기획관·경제정책과·일자리정책과·창업정책과·대학협력과·금융투자과·창조산업과·뷰티패션산업과·첨단산업과·산업입지과를 둔다.

제11조제2항 중 “경제정책실장”을 “경제실장”으로, “경제일자리기획관은 지방이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창조산업기획관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경제정책과장·일자리정책과장·창업정책과장·대학창업과장·금융투자과장·창조산업과장·국제교류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첨단산업과장·뷰티패션산업과장·산업입지과장”을 “경제일자리기획관·창조산업기획관은 지방부이사관으로, 경제정책과장·일자리정책과장·창업정책과장·대학협력과장

·금융투자과장·창조산업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뷰티패션산업과장·첨단산업과장·산업입지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5항부터 제10항”을 “제4항부터 제8항까지의 사무를, 창조산업기획관은 제9항부터 제1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5항) 제3호 중 “서울산업진흥원”을 “서울경제진흥원”으로 한다.

제11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학창업과장”을 “금융투자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대학 창업 정책협의회 운영”을 “서울국제금융센터 관리”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8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9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10항 및 제11항을 각각 제11항 및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금융산업 육성 및 금융중심지 조성에 관한 사항
3. 국제금융지구 조성 추진에 관한 사항
4. 지역금융특화를 위한 금융수요 개발에 관한 사항
5. 금융전문인력 양성 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6. 국제금융기구 및 글로벌 금융기업 유치에 관한 사항
7. 외국인 투자유치 종합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8. 외국인 투자유치 홍보·마케팅에 관한 사항
9. 글로벌기업 등 투자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10. 여의도 금융중심지 기부채납 계획수립 등 금융허브 조성에 관한 사항
11. 외국인투자 촉진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2. 외국인 투자자를 위한 전담 지원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⑩ 뷰티패션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뷰티산업 육성·지원정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패션·봉제산업 육성·지원정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귀금속·보석 산업 육성 지원정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4. 동대문 패션 클러스터 조성 추진
5. 서울패션허브 추진에 관한 사항
6. 서울뷰티허브 추진에 관한 사항
7. 도시제조업 등 지역특화산업 육성계획의 수립·조정
8. 서울도시제조허브 및 패션제조 기반시설 조성·운영에 관한 사항
9. 도시제조업 및 도시형소공인지원에 관한 사항

제11조제11항(종전의 제10항)제3호 중 “서울바이오허브”를 “서울바이오허브 앵커시설”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창동·상계 바이오메디컬”을 “바이오·의료”로 하며, 같은 항 제11호 중 “양자 기술 산업”을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으로 한다.

제11조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뷰티패션산업과장”을 “산업입지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제1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4호(종전의 제2호) 중 “패션·봉제산업”을 “뿌리산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서울패션허브 추진”을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구성·운영”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서울뷰티허브 추진”을 “산업·특정개발

진흥지구 지정·운영”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도시제조업 및 도시형소공인지원”을 “준공업지역 내 임대산업시설 운영·관리”로 하며, 같은 항에 제9호부터 제13호까지 및 제1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산업 거점 조성에 관한 사항 총괄
2. 산업입지 수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산업단지 지정에 관한 사항
6. 온수산업단지 재생·활성화에 관한 사항
7.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정 및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관리에 관한 사항
9. 수도권 공장총량제 운영에 관한 사항
10. 마곡산업단지 관리·운영 총괄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11. 서울디지털산업단지(G밸리) 활성화에 관한 사항
12. 서울무역전시장(SETEC) 복합개발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13. 디지털미디어시티(DMC) 용지 공급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15. 인쇄·기계금속 산업 지원시설 조성·운영에 관한 사항

제11조제1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14항을 제7항으로 하며, 같은 항(종전의 제1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입지과장”을 “대학협력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구성·운영”을 “서울지역고등교육위원회 운영”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9호부터 제18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1.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정책에 관한 사항
2.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계획 수립, 시행,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3.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전담 센터 지정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5. 대학 창업 활성화 정책 수립, 시행,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6. 대학 창업지원시설 조성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7. 대학 창업기업 성장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대학 관련 대외 협력에 관한 사항

제12조의 제목 “(복지정책실에 두는 국·과)”를 “(복지실)”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복지정책실장”을 “복지실장”으로, “복지정책과장·안심소득추진과장·안심돌봄복지과장·어르신복지과장·장애인복지정책과장·장애인자립지원과장·자활지원과장”을 “돌봄·고독정책관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복지정책과장·안심소득과장·장애인복지과장·장애인자립지원과장·자활지원과장·어르신복지과장·고독대응과장·돌봄복지과장·1인가구지원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같은 조 제4항부터 제10항”을 “제4항부터 제8항까지의 사무를, 돌봄·고독정책관은 제9항부터 제1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심소득추진과장”을 “안심소득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제7항 및 제9항을 각각 제11항, 제9항 및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복지실에 복지기획관·돌봄·고독정책관·복지정책과·안심소득과·장애인복지과·장애인자립지원과·자활지원과·어르신복지과·고독대응과·돌봄복지과·1인가구지원과를 둔다.

⑥ 장애인복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장애인복지종합계획의 수립·조정 및 시행
2. 사회복지기금(장애인복지계정)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3. 장애인복지 관련 법인 및 비영리단체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5. 장애인단체 활동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6. 장애인 인권분야 상시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7. 장애인 권익증진 및 사회적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제12조제11항(종전의 제6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5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제1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 제12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심돌봄복지과장”을 “돌봄복지과장”으로 한다.

제12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장애인복지정책과장”을 “자활지원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사회복지기금(장애인복지계정)관리·운영”을 “노숙인 시설 확충·운영·지원·평가”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장애인복지”를 “노숙인 복지”로, “비영리단체”를 “비영리 단체”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장애인 인권분야 상시 지도·점검”을 “노숙인 일자리·재활·자활·의료지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노숙인 종합업무계획, 쪽방촌 지원 종합대책, 지역자활계획 수립
4. 거리노숙인 감소대책 수립 및 상담활동
5. 노숙인 통합정보시스템 운영·관리
7. 노숙인·쪽방주민 주거지원 및 생활안정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8. 자활근로사업 및 자활공동체에 관한 사항
9. 사회복지기금(자활계정)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제12조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활지원과장”을 “고독대응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자활근로사업 및 자활공동체”를 “독거어르신 돌봄”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1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고독·고립 대응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에 관한 사항
3. 사회적 고립가구 발굴, 지원, 관리
4.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에 관한 사항
5. 고독 고립 관련 사회적 교류 지원 사업 개발·시행·조정 등에 관한 사항
6. 고독·고립 관련 네트워크 및 민·관 협력체계 구축
8. 어르신 주거복지시설, 재가노인지원 서비스 제공 기관에 관한 사항

⑫ 1인가구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1인가구 대책 총괄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1인가구 실태조사 및 사업 개발
3. 각 실·본부·국별 1인가구 지원사업 추진상황 점검 및 개선

4. 1인가구 대책 자문단 구성 운영
5. 1인가구 지원 관련 유관기관 협력에 관한 사항

제13조의 제목 “(도시교통실에 두는 과)”를 “(교통실)”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도시교통실장”을 “교통실장”으로, “교통기획관”을 “교통기획관·교통운영관”으로, “주차계획과장·보행자전거과장·교통운영과장 및 교통지도과장”을 “주차계획과장·보행자전거과장·교통운영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교통실에 교통기획관·교통운영관·교통정책과·도시철도과·버스정책과·미래첨단교통과·택시정책과·주차계획과·보행자전거과·물류정책과·교통운영과를 둔다.

④ 교통기획관은 제5항부터 제9항까지의 사무를, 교통운영관은 제10항부터 제13항까지의 사무를 분장한다.

제13조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사항”을 “다음 사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5호부터 제22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4항을 삭제한다.

15. 교통지도단속 종합계획 수립
16. 주·정차위반 관련 단속, 지도점검 및 자치구 지도·감독
17. 사업용차량 관련 단속, 지도점검 및 자치구 지도·감독
18. 전용차로 통행 위반 단속, 과태료 부과·징수
19.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단속, 과태료 부과·징수
20. 교통지도단속 관련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시스템·장치에 관한 사항
21. 교통불편민원에 대한 조사·단속 등 처리
22. 교통사법경찰(교통 분야 특별사법경찰) 운영 및 관리

제15조의 제목 “(문화본부에 두는 과)”를 “(문화본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문화정책과·문화예술과·문화재정책과·문화재관리과·박물관과·문화시설과”를 “문화정책과·문화예술과·문화유산보존과·문화유산활용과·박물관과·문화시설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문화정책과장·문화예술과장·문화재정책과장·문화재관리과장·박물관과장·문화시설과장은 지방서기관”을 “문화정책과장·문화예술과장·문화유산보존과장·문화유산활용과장·박물관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문화시설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0호 중 “문화시민도시정책위원회”를 “서울시문화도시위원회”로 한다.

제15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정책과장”을 “문화유산보존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보존과 활용”을 “보존”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무형문화재”를 “무형유산”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문화재위원회”를 “국가유산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 중 “문화재”를 각각 “국가유산”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매장문화재”를 “매장유산”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문화재주변”을 “국가유산주변”으로, “문화재 보호구역”을 “국가유산 보호구역”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 표석 설치”를 “국가유산 및 표석”으로 하며, 같은 항 제10호 중 “문화재매매업 및 문화재사범”을 “국가유산매매업 및 국가유산사범”으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 중 “등록문화재”를 “등록문화유산”으로 하며, 같은 항 제16호를 제18호로 하고, 같은 항 제13호 및 제

14호를 각각 제16호 및 제17호로 하며, 같은 항 제12호를 제1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2호 및 제1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3호(종전의 제12호) 중 “문화재 보수·복원정비”를 “국가유산 보수”로, “문화재보수”를 “국가유산보수”로 하고, 같은 항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서울미래유산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

14. 국가유산 안전관리 총괄 및 국가유산 수리업 등의 등록에 관한 사항

15. 국가유산 관리에 관한 기술지도 및 보급·선양에 관한 사항

제15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관리과장”을 “문화유산활용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11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제8호 중 “박물정책심의위원회·미술관정책심의위원회”를 “박물관정책심의위원회·미술관정책심의위원회”로 한다.

1. 역사 문화유산의 활용을 위한 기본정책 수립 및 시행

2. 국가유산 복원정비 설계 및 시공관리, 활용에 관한 사항

12. 한성백제박물관 운영의 지도·감독

제17조의2의 제목 “(시민건강국에 두는 과)”를 “(시민건강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보건의료정책과·스마트건강과·정신건강과·감염병관리과·식품정책과·감염병연구센터·공공의료추진단을” 을 “보건의료정책과·스마트건강과·건강관리과·정신건강과·감염병관리과·식품정책과·공공의료과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보건의료정책과장·스마트건강과장·정신건강과장·감염병관리과장·식품정책과장”을 “보건의료정책과장·스마트건강과장·건강관리과장·정신건강과장·감염병관리과장·식품정책과장·공공의료과장”으로, “지방기술서기관으로, 감염병연구센터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공공의료추진단장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을 “지방기술서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보건의료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보건의료행정계획의 총괄·조정

2. 자치구 보건소의 육성·지원

3. 응급의료에 관한 사항

4. 재난응급의료 대응 및 대비 업무에 관한 사항

5. 보건·의료 복지 관련 법인 및 단체에 관한 사항

6. 의료행정에 관한 사항

7. 약무행정에 관한 사항

8.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사항

9. 병상 수급관리 및 병상 확보에 관한 사항

10. 외국인 환자 유치기관 등록에 관한 사항

11. 보건·의료 복지 관련 법인 및 단체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시민의 보건, 의료 증진에 관한 사항

제17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의료정책과장”을 “스마트건강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제1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하며, 같은 항 제1호(종전의 제3호) 중 “어르신건강 증진”을 “서울형 헬스케어”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서울형 헬스케어 플랫폼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서울형 헬스케어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4. 서울형 헬스케어 플랫폼 고도화에 관한 사항
5. 서울형 헬스케어 데이터 관리에 관한 사항
6. 서울형 헬스케어 사업 평가 분석에 관한 사항

제17조의2제4항제7호 중 “응급의료”를 “서울형 헬스케어 국내·외 유관기관 협력”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스마트건강과장”을 “건강관리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서울형 헬스케어 추진”을 “임신 및 난임 등”으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0호를 제12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어르신건강 증진 정책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9. 어르신에 대한 사전 예방적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10. 어르신 등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11. 방문건강관리 전문인력 역량강화에 관한 사항

제17조의2제6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제6호부터 제11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 제4호, 제5호 및 제1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정신건강사업 종합 진단·평가에 관한 사항
4.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사업에 관한 사항
5. 정신건강증진시설에 관한 사항
12. 실종노인의 발생 예방 및 배회감지기 보급에 관한 사항

제17조의2제7항에 제15호부터 제2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9항을 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11항을 제9항으로 하며, 같은 항(종전의 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공의료추진단장”을 “공공의료과장”으로 한다.

15. 감염병 정책 연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16. 감염병 정책 관련 국제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17. 감염병 정보 분석 및 동향 파악에 관한 사항
18. 감염병 관련 데이터 관리 및 자료집 발행에 관한 사항
19. 감염병 환자치료 및 임상시험 지원에 관한 사항
20. 의료자원 분석 및 의료인력 교육에 관한 사항

제17조의3을 제17조의5로 하며, 제17조의5(종전의 제17조의3)의 제목 “(행정국에 두는 과)”를 “(행정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제6호 중 “의무실·치과운영”을 “부속의원 운영”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제2호 중 “전국시도지사협의회”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로 한다.

제17조의6(종전의 제17조의4)의 제목 “(재무국에 두는 과)”를 “(재무국)”으로 한다.

제17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7(민생사법경찰국) ① 민생사법경찰국에 경제수사과·안전수사과를 둔다.
②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경제수사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안전수사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각각 보한다.
③ 경제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특별사법경찰 지명직무에 따른 방문판매, 대부, 부동산, 상표 범죄(이하 "경제분야"라 한다) 수사계획 수립
2. 경제분야 수사 및 송치에 관한 사항
3. 특별사법경찰 직무교육 등 역량강화에 관한 사항
4. 자치구 특별사법경찰 운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특별사법경찰 운영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특별사법경찰 운영 관련 유관기관 협력에 관한 사항
7. 수사 관련 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④ 안전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특별사법경찰 지명직무에 따른 공중위생, 동물보호, 청소년, 사회복지, 식품 위생·원산지 표시, 환경, 의약범죄(이하 "안전분야"라 한다) 수사계획 수립
2. 안전분야 수사 및 송치에 관한 사항
3. 안전분야 수사 특화교육 등 수사관 역량강화에 관한 사항
4. 안전분야 수사 유관기관 협력에 관한 사항

제18조제3항 중 "미래공간기획담당관, 공공개발기획담당관, 공공개발사업담당관을 두고, 미래공간기획담당관·공공개발기획담당관·공공개발사업담당관"을 "미래공간담당관, 공공개발담당관, 용산입체도시담당관, 도시활력담당관을 두고, 미래공간담당관·도시활력담당관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공공개발담당관·용산입체도시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7항으로 하며, 같은 항(종전의 제4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공간환경사업 기획 및 발전"을 "용산국제업무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공공건축 설계공모"를 "용산국제업무지구 토지분양 및 보상"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7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계획 수립 및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2. 용산국제업무지구 사업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등에 관한 사항
3. 용산국제업무지구 기반시설 복합화 및 공공시설 조성에 관한 사항
5. 용산국제업무지구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
7. 용산전자상가 도시재생활성화사업 및 도시재생혁신지구 사업에 관한 사항
8. 용산 게이트웨이 조성에 관한 사항
9. 용산공원 조성 및 시민소통에 관한 사항
④ 제3항의 도시활력담당관은 개방형직위로서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제18조제7항(종전의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공간기획담당관"을 "용산입체도시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공개발기획담당관"을 "미래공간담당

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제8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8호(종전의 제4호) 중 “사전협상제도”를 “도시·건축디자인혁신 제도”로, “사전협상 추진”을 “사업 추진”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건축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공공건축가 선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공공건축 기획, 사전검토, 심의 등 공공건축 품질향상에 관한 사항
4. 공간환경사업 기획 및 발전에 관한 사항
5. 총괄건축가(민간전문가)의 서울시 공간환경사업(공공건축, 도시계획, 조경 등) 조정·자문 활동 등 지원에 관한 사항
6. 공공건축 설계공모에 관한 사항
7. 건축서비스산업의 발전 기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사항
9. 노들 글로벌 예술섬 조성에 관한 사항

제18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공개발사업담당관”을 “공공개발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9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공공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도시계획·도시개발사업 공공성 확보 및 공공지원방안에 관한 사항
3. 대규모 민간부지 도시계획적 활용방안 수립·검토에 관한 사항
9. 주요 토지자원을 활용한 민관협력, 민자사업 발굴 및 기획·실행에 관한 사항
10. 주요 공공토지 및 건축물의 활용방안에 관한 사항
11. 주요 자산 매입 등 취득 결정에 관한 사항
12. 공공 토지자원의 종합적 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사전협상제도 운영·관리 및 사전협상 추진에 관한 사항
5. 기반시설 입체복합 활용에 관한 사항
6. 지역거점 활용구상 및 선제적 전략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7. 저이용, 낙후 도시계획시설의 활용방안에 관한 사항
13. 공유재산 위탁개발에 관한 사항

⑧ 도시활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시활력을 위한 주요거점 종합전략 수립 및 총괄 조정
2. 도시활력을 위한 신규사업 발굴·기획 및 실행
3. 도시활력을 위한 거점 공간 조성 및 활력 콘텐츠 구상
4. 상암 일대 활성화를 위한 종합전략 수립 및 실행에 관한 사항

제18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의 디자인정책관”을 “제1항의 디자인정책관”으로, “제2항의 규정”을 “제

1항의 규정” 으로 한다.

① 디자인정책관은 지방이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 디자인정책관은 디자인진흥정책, 디자인산업, 도시경관계획 및 도시빛정책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 행정(2)부시장을 보좌한다.

③ 디자인정책관 밑에 디자인정책담당관・디자인산업담당관・도시경관담당관을 두고, 디자인정책담당관・디자인산업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도시경관담당관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제19조의 제목 “(기술심사담당관)” 을 “(건설기술정책관)”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건설기술정책관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

제19조제2항 중 “기술심사담당관은 건설기술업무” 를 “건설기술정책관은 건설정책, 건설기술, 건설업, 건축물 안전관리 사무” 로 한다.

제19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3항)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9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8호(종전의 제7호) 중 “건설사업 관리” 를 “건설사업관리” 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를 제10호로 하며, 같은 항 제1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3호부터 제19호까지를 각각 제11호부터 제17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6호(종전의 제18호) 중 “자문” 을 “확인” 으로 하며, 같은 항 제17호(종전의 제19호) 중 “건설기술용역업” 을 “건설엔지니어링업” 으로 하고, 같은 항 제20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21호부터 제23호까지를 각각 제19호부터 제21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24호를 제22호로 하며, 같은 항 제19호(종전의 제21호) 중 “건설기술용역업자” 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로 하고, 같은 항 제22호(종전의 제24호) 중 “설계 경제성” 을 “설계경제성” 으로 한다.

1. 건설정책 수립・총괄 조정

18. 불법・부조리 하도급관련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지도감독

제19조에 제3항,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건설기술정책관 밑에 기술심사담당관・건설혁신담당관・지역건축안전센터를 두고, 기술심사담당관・건설혁신담당관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지역건축안전센터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⑤ 건설혁신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건설업분야 주요계획 수립, 법령 및 제도개선
2. 건설 혁신대책 총괄
3. 건설혁신 정책포럼 서울 운영
4. 불법・부조리 하도급 관련 건설업체 지도감독
5. 하도급 부조리 근절 종합대책 수립 및 제도개선
6. 하도급 관련 법령 및 조례에 관한 사항
7. 하도급 관련 업무지침 작성 및 시행
8. 하도급 개선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9. 하도급 실태 정기점검 및 조치

10. 건설공사대금지급시스템 사용지원 및 모니터링
11. 건설기계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2. 긴급복구, 건설업체·장비동원 등 충무계획 수립 운영
13. 종합건설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4. 전문건설업 등록 및 관리업무의 지도·감독
15. 하자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하자관리 지원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16. 공공·민간 건설부실 근절대책 총괄

⑥ 지역건축안전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민간건축물의 안전에 관한 조사연구와 분석 및 건축물 부문의 안전관리에 대한 정책개발
2. 주택·건축분야의 안전업무 및 민간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종합계획 수립
3. 건축물 안전 관련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건축행정(건축허가·신고, 착공신고, 사용승인) 수행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보고·확인·검토·심사 및 점검
5. 지진·화재 등 민간건축물 부문 재난대비 안전대책 수립
6. 기존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에 관한 사항
7. 임의관리대상 건축물의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8. 소규모 노후건축물 등 보수·보강 지원에 관한 사항
9. 안전취약 건축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0. 민간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1. 건축물관리법 및 조례 운용에 관한 사항
12. 해체공사장 안전관리 정책개발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13. 건축물 관리점검기관 및 해체공사 감리자 모집·등재·관리 등에 대한 사항
14. 건축물 안전관리 관련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
15. 자치구 건축안전센터 기술 및 제도 지원

제20조의 제목 “(재난안전관리실에 두는 과)”를 “(재난안전실)”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재난안전관리실장”을 “재난안전실장”으로, “안전총괄관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재난안전정책과장·재난안전예방과장·중대재해예방과장·건설혁신과장”을 “재난안전기획관·도로기획관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재난안전정책과장·재난안전예방과장·중대재해예방과장”으로, “도로계획과장·도로관리과장·도로시설과장·교량안전과장”을 “도로계획과장·도로관리과장·보행환경개선과장·도로시설과장·교량안전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안전총괄관”을 “재난안전기획관”으로, “시설안전, 건설정책, 도로계획, 도로관리, 도로시설관리, 교량관리”를 “시설안전”으로, “재난안전관리실장을 보좌한다”를 “재난안전실장을 보좌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재난안전실에 재난안전기획관·도로기획관·재난안전정책과·재난상황관리과·재난안전예방과·중대재해예방과·도로계획과·도로관리과·보행환경개선과·도로시설과·교량안전과를 둔다.

④ 도로기획관은 제9항부터 제13항까지의 사무를 분장한다.

제20조제5항(종전의 제4항)제1호 중 “안전관리계획 수립 등 안전관리업무”를 “안전관리업무”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제2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12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점검·관리에 관한 사항

제20조제10항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며, 같은 항 제7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8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항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11호부터 제19호까지를 각각 제7호부터 제15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 제20호부터 제22호까지를 각각 제17호부터 제19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6호 및 제2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9호(종전의 제22호) 중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지하안전평가”로 하고, 같은 항 제23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24호를 제20호로 하고, 같은 항 제25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26호부터 제28호까지를 각각 제22호부터 제24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29호부터 제36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16. 노면표시 정비계획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1. 지하안전평가 이행 실태점검에 관한 사항

제20조제11항 및 제12항을 각각 제12항 및 제1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⑪ 보행환경개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도유지관리 계획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보도유지관리에 대한 중기투자 재정계획 수립 조정에 관한 사항
3. 보도포장 관련 지침, 제도개선 연구
4. 보도포장 전문기술교육에 관한 사항
5. 보도공사 실명제 등 각종제도 시행 및 관리
6. 보도정비, 보도블록 관리
7. 친환경 보도환경 조성 및 유지관리
8. 보도공사 설계 및 현장 지도점검
9. 자치구 위임 보도관리에 관한 사항
10. 보도포장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
11. 거리모니터링단 운영 및 관리
12. 가공배전선로 지중화 및 공중케이블 정비에 관한 사항
13.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에 관한 사항
14. 보도상 불법행위 단속 및 보도상 영업시설물 지도·감독
15. 도로부속물(방음벽, 방호울타리, 중앙분리대 등)에 관한 유지관리
16. 도로사면 안전관리 계획 수립 및 안전점검

제20조제13항(종전의 제12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교량에서의 안전사고 및 투신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안전난간 등)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20조의2의 제목 “(주택정책실에 두는 과)”를 “(주택실)”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주택정책실장”을 “주택실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주택실에 주택정책관·건축기획관·주택정책과·임대주택과·주택정책지원센터·공공주택과·주거환경개선과·건축기획과·전략주택공급과·공동주택과·주거정비과·재정비촉진과·한옥건축자산과를 둔다.

② 주택실장은 지방관리관 또는 지방이사관으로, 주택정책관·건축기획관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주택정책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임대주택과장·공공주택과장·건축기획과장·공동주택과장·주거정비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주택정책지원센터장·주거환경개선과장·전략주택공급과장·재정비촉진과장·한옥건축자산과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④ 주택정책관은 제5항에서 제9항까지의 사무를, 건축기획관은 제10항에서 제15항까지의 사무를 분장한다.

제20조의2제5항제7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8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제7호부터 제10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 제12호부터 제15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16호를 제11호로 하며, 같은 항 제17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8호를 제12호로 한다.

제20조의2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략주택공급과장”을 “임대주택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계획”을 “공공임대주택 혁신방안”으로, “지원·활성화”를 “제도개선”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5호(종전의 제4호) 중 “민간토지 활용”을 “임차형”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삭제한다.

2.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3. 민간임대주택 공급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재건축·재개발·재정비촉진·민영주택건설사업·소규모주택정비사업·민영주택건설사업 등으로 건립되는 공공임대주택 매입·귀속 및 공급에 관한 사항

6. 다가구·원룸 공공임대주택 매입·귀속 및 공급에 관한 사항

7. 공공임대주택 관리 종합개선 대책에 관한 사항

8. 공공임대주택 관리 총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9. 사회주택·공동체주택 공급에 관한 사항

제20조의2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공주택과장”을 “주택정책지원센터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11호부터 제19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1. 주택정책 개발 및 연구 수행에 관한 사항

2. 주택수요 및 공급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3. 주택·건축관련 정책 수립 및 추진 지원에 관한 사항

4. 주택시장 동향분석·시장 안정대책 및 연구에 관한 사항

5. 주택통계, 주거실태조사 및 주거지표에 관한 사항

6. 준주택, 비아파트 등 공급관리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7. 주택청약, 특별공급 등 주택배분체계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8. 건축행정시스템 및 제반건축주택정보시스템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9. 정비사업 시기조정에 관한 사항

10. 주택시장 모니터링단 운영에 관한 사항

제20조의2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동주택지원과장”을 “공공주택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1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18호부터 제23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1. 공공주택 공급 총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공공주택 공급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공공주택 중장기 수급에 관한 사항
4. 공공주택 개발·공급에 관한 사항
5. 공공주택 특별법령 및 조례에 관한 사항
6. 공공주택 통합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7. 공공주택 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8. 공공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
9. 타 공공기관에 의한 공공주택 건설사업(승인, 협의)에 관한 사항
10. 공공주택지구 지정, 공공주택 지구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11. 택지개발사업·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등 공공주택 공급을 위한 계획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12. 공공주택·택지개발지구 내 용지·택지 매각·공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3.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에 관한 사항
14. 공공임대주택 단지 재건축 등에 관한 사항
15. 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관리에 관한 사항
16. 역세권 주택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17. 「주택법」에 의한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관한 사항

제20조의2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거정비과장”을 “주거환경개선과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1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제20조의2제9항제16호부터 제24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1. 저층주거지 주거환경개선 및 재생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주거환경개선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별 정비계획 수립 및 사업추진 등에 관한 사항
4. 주거환경개선사업 거점시설 확충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성곽마을 보전·관리 종합계획 수립 및 권역별 사업추진 등에 관한 사항
6.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빈집 관련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8. 빈집 매입 및 정비에 관한 사항
9. 저층주거지 재생사업 모델 개발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0. 주거지보전사업에 관한 사항
11. 주거재생지역 내 생활편의시설 확충에 관한 사항
12. 도시재생뉴딜사업(근린재생일반형·주거지지원형·우리동네살리기)에 관한 사항
13. 서울형 도시재생사업(근린재생일반형) 선정, 활성화계획 수립 등 추진에 관한 사항
14. 휴먼타운 및 뉴빌리지 사업에 관한 사항

15. 도시재생지원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제20조의2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택정책지원센터장”을 “건축기획과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부터 제2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건축 정책 및 행정의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
2. 건축 관련 법령 및 조례의 운용에 관한 사항
3. 건축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건축사법」 운용 및 건축사 관리에 관한 사항
5. 건축사징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건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건축행정(건축허가, 사용승인 및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
8. 건축민원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 건축물 기계·전기설비 및 승강기 관리 등에 관한 사항
10. 녹색건축물 조정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11. 건축물 에너지소비총량 관리에 관한 사항
12.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기준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13. 무허가 및 위법건물의 단속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4. 건축행정관리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15. 건축물 생애관리 및 공적공간 관리에 관한 사항
16. 건축물의 건축계획 및 교통영향분석, 경관 등 통합심의에 관한 사항
17. 공공임대 사업승인에 따른 평면계획 등 건축계획 심의 또는 자문에 관한 사항
18.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사전재난영향성 검토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19. 경관법령에 의한 공공건축물 경관심의에 관한 사항
20. 초고층건축물 등 서울시 허가대상 건축물의 인허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1. 「건축법」 제25조에 따른 허가권자 지정 감리자 및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업무대행 건축사 선발과 운영에 관한 사항
22.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계획 수립 및 조례의 운용에 관한 사항
23. 집합건물 관리 체계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24. 민간건축물 설계시공 품질관리 강화 및 감리의 독립성 확보에 관한 사항

제20조의2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축기획과장”을 “전략주택공급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8호를 제1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호(종전의 제8호) 중 “건축민원전문위원회 구성”을 “모아주택·모아타운 정책수립”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9호부터 제1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19호부터 제27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8.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 법령 및 조례 제정·운영 등에 관한 사항
2. 소규모주택정비사업(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3.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 지침 마련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승인·고시에 관한 사항

5.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공공지원에 관한 사항
6. 소규모주택정비 사업 현장지원단 운영에 관한 사항
7.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통합심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9. 민간토지 활용 공공주택 공급에 관한 사항
10. 서울형 민간 임대형기숙사 사업관리 및 입주지원,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11. 임대형기숙사 건립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의 운용에 관한 사항
12. 청년안심주택 및 어르신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의 운용에 관한 사항
13. 청년안심주택 및 어르신안심주택 건립 및 운영 기준에 관한 사항
14. 청년안심주택 및 어르신안심주택 사업관리 및 입주지원,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15. 청년안심주택 및 어르신안심주택 매입에 관한 사항(공공기여·SH공사 선·후 매입)
16. 청년안심주택 및 어르신안심주택 임차인 주거비 지원에 관한 사항
17.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18.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운영자문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제20조의2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비촉진사업과장”을 “공동주택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9호 중 “재정비촉진사업”을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로, “매몰·융자금 등 비용지원”을 “사업추진”으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부터 제1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17호부터 제2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공동주택 수요공급 및 관리계획 수립 시행
2. 아파트 지구 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3. 공동주택 재건축 기본계획 수립
4. 공동주택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재건축사업에 관한 사항
5. 공동주택 시유지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6.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한 공동주택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 관한 사항
8.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단 및 공동주택상담실 운영
10. 시범·시민아파트 관리 및 정리에 관한 사항
11.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운용에 관한 사항
12.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에 관한 사항
13. 공동주택 감사에 관한 사항
14.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자치구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
15.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사항
16. 민영주택 품질점검단 운영에 관한 사항
17. 소규모재건축에 관한 사항
18. 공동주택 행위허가에 관한 사항
19.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에 관한 사항
20. 재건축 안전진단에 관한 사항
21. 공동주택 관리사업 자치구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
22.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 및 전자결재시스템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23.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결정에 관한 사항

제20조의2제1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거환경개선과장”을 “주거정비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1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16호부터 제2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 및 조례에 관한 사항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부문) 수립 및 정비에 관한 사항
3.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공공재개발 포함)의 구역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공공정비계획수립 지원에 관한 사항
5. 재개발 관리대책에 관한 사항
6. 정비구역 직권해제 계획수립·실행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파견 계획 수립·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8. 공공지원 추진위원회 구성 및 조합설립 지원 제도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9. 공공지원 정비사업 표준 선거관리규정 및 공공지원 추진위원회 구성 선거관리기준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10. 공공지원 시공자·설계자·정비업체·공동시행 건설업자 선정기준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11. 공공지원 정비사업 예산·회계규정, 표준 행정업무규정, 조합설립지원을 위한 업무기준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12. 조합운영 실태점검 계획수립·실행 및 개선에 관한 사항
13. 조합설립추진위원회·조합에 대한 정비사업 융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14. 정비사업 종합정보관리시스템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15. 정비사업 관련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 운영에 관한 사항
16. 정비사업 관련 통계에 관한 사항
17.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사용비용 보조에 관한 사항
18.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구역 내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9. 주택사업특별회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계정 운용 및 시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20.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1. 민간·공공재개발 공모 및 선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22. 정비사업 통합심의에 관한 사항
23. 정비사업 실태조사 및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24. 정비사업 강제철거 예방대책 추진에 관한 사항

제20조의2제1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역건축안전센터장”을 “재정비촉진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12호부터 제1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재정비촉진사업 종합(지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및 재정비촉진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
3. 재정비촉진지구(구역) 및 단독주택재건축 구역 지정·해제 등에 관한 사항
4. 도시재정비위원회 및 소위원회, 시·구합동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령·조례 운영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주택사업특별회계 재정비촉진사업 계정 운영에 관한 사항
7. 재정비촉진지구 기반시설확보·부담기준 및 설치비용 지원기준 등에 관한 사항
8. 재정비촉진지구 기반시설 설치비 국고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
9. 재정비촉진사업 계획수립 및 매몰·융자금 등 비용지원에 관한 사항
10. 재정비촉진지구 및 단독주택재건축구역 사업현황 등 통계에 관한 사항
11. 재정비촉진지구 내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 준공검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2. 재정비촉진지구 및 단독주택재건축구역 내 공사장 안전점검 지원에 관한 사항
13. 단독주택재건축구역 내 기반시설 설치계획 수립 및 추진사항 관리
14. 재정비촉진지구 및 단독주택재건축구역 내 강제철거예방대책 및 인권지킴이 활동에 관한 사항
15. 단독주택재건축구역 세입자대책에 관한 사항
16. 재정비촉진구역 및 단독주택재건축구역(해제지역) 공공재개발 정비계획 결정 및 사업시행에 관한 사항

제20조의2제1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옥정책과장”을 “한옥건축자산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7호부터 제2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 서울건축문화제 및 서울시 건축상에 관한 사항
18. 건축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
19.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추진에 관한 사항
20. 서울도시건축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제21조의 제목 “(도시공간본부에 두는 과)”를 “(도시공간본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도시공간전략과장·도시계획과장·도시계획상임기획과장·도시재창조과장·신속통합기획과장·도시관리과장·시설계획과장”을 “도시공간전략과장·도시계획과장·도시계획상임기획과장·도시재창조과장·신속통합기획과장·도시관리과장·시설계획과장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제9호, 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제10호, 제11호 및 제1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 및 제1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국가철도구간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에 관한 종합계획 및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2. 도시계획 및 도시공간 정책 홍보에 관한 사항

제21조제6항에 제14호 및 제1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공공기여시설 통합관리에 관한 사항
15. 공공기여 관련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

제21조제7항제6호 중 “연혁관리 및 도시계획 홍보”를 “연혁관리”로 하고, 같은 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미래서울도시관’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21조제8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 제5호 및 제7호를 각각 제2호, 제3호 및 제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관련 계획 의제처리 포함)
7. 역세권 활성화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6. 역세권 활성화사업에 대한 정책 및 제도 수립·운영에 관한 사항

제21조제8항제8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10항에 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서울도심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관한 사항
11. 서울도심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제21조제12항제1호 중 “토지행정”을 “부동산정책”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3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14호를 제1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5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6호부터 제18호까지를 각각 제15호부터 제17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18호 및 제1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운용에 관한 사항
4.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운용에 관한 사항
5. 부동산정보포털시스템 및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6.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운용에 관한 사항
7. 공익사업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추천에 관한 사항
8.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운용에 관한 사항
9. 「공인중개사법」 운영에 관한 사항
10. 지적측량 적부심사 및 지방지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1. 부동산 시장 동향분석, 거래상황 조사 및 부동산동향 작성에 관한 사항
1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운용에 관한 사항
14.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운용에 관한 사항
18. 외국인을 위한 글로벌 공인중개사무소 지정, 운영에 관한 사항
19. 조상 땅찾기 및 공공기관 부동산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제22조의 제목 “(균형발전본부에 두는 과)”를 “(균형발전본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부이사관으로, 균형발전정책과장·도시정비과장·동남권사업과장·동북권사업과장·광화문광장사업과장”을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지방기술서기관으로, 균형발전정책과장·도시정비과장·동남권사업과장·동북권사업과장·광화문광장사업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16호를 제1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균형발전특별회계 운용에 관한 사항

제23조의 제목 “(푸른도시여가국에 두는 과)”를 “(정원도시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정원도시국에 정원도시정책과·공원여가사업과·공원조성과·조경과·자연생태과·동물보호과·산지방재과를 둔다.

제23조제2항 중 “푸른도시여가국장”을 “정원도시국장”으로, “공원여가정책과장·공원조성과장·자연생태과장·동물보호과장”을 “정원도시정책과장·공원조성과장·자연생태과장·동물보호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원여가정책과장”을 “정원

도시정책과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10호를 제11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제7호를 삭제한다.

10. 공원·산림 등 여가·문화사업 홍보에 관한 사항

제71조제1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복합개발건축과장은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제76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4항으로 한다.

제85조제8항제6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9항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4호부터 제15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14호까지로 한다.

4. 수상택시 및 도선사업의 인·허가 및 관리

제90조제1항 중 “기획관리과·정보자원운영과·인터넷통신과·클라우드센터운영과·에스플렉스센터운영과를 두고, 기획관리과장, 정보자원운영과장, 클라우드센터운영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인터넷통신과장, 에스플렉스센터운영과장”을 “기획관리과·정보자원운영과·인터넷통신과·상암정보운영과·에스플렉스센터운영과를 두고, 기획관리과장·정보자원운영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인터넷통신과장·상암정보운영과장·에스플렉스센터운영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통합정보관리시스템(SMS)”을 “종합관제시스템”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7호 및 제8호 중 “정보시스템”을 각각 “정보자원”으로 한다.

1. 내부행정 전산장비 서버·주변기기 운영
5. 전산장비 유지관리
6. 데이터센터 정보자원(H/W, S/W 등) 도입 및 유지보수

제90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클라우드센터운영과장”을 “상암정보운영과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클라우드센터”를 각각 “상암센터”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4. 클라우드포털 및 관제시스템 운영

제92조제1항 중 “진료부·간호부·간호1과·간호2과·약제”를 “진료부·간호부·약제”로, “간호1·2과장은 지방간호사무관으로, 약제과장”을 “약제과장”으로, “보한다”를 “보하고, 간호부 밑에 간호행정과·31병동간호과·32병동간호과·33병동간호과·34병동간호과·41병동간호과·42병동간호과·43병동간호과·51병동간호과를 두며 각 과장은 지방간호사무관으로 보한다”로 한다.

제92조제2항 중 “진료부·간호부·약제부·간호1과·간호2과·원무”를 “진료부·간호부·약제부·원무”로, “지방기술서기관으로, 간호1·2과장은 지방간호사무관으로”를 “지방기술서기관으로”로, “보한다”를 “보하고, 간호부 밑에 간호행정과·14병동간호과·15병동간호과·17병동간호과·25병동간호과·34병동간호과·35병동간호과·53병동간호과·54병동

간호과를 두며 각 과장은 지방간호사무관으로 보한다”로 한다.

제92조제3항 중 “진료부·간호부·간호1과·간호2과·약제”를 “진료부·간호부·마약관리센터·약제”로, “진료부장·간호부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간호1과장·간호2과장은 지방간호사무관으로”를 “진료부장·간호부장, 마약관리센터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로, “보한다”를 “보하고, 간호부 밑에 간호행정과·24병동간호과·41병동간호과·42병동간호과·51병동간호과·52병동간호과를 두며 각 과장은 지방간호사무관으로 보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진료부장”을 “진료부장과 제3항 마약관리센터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간호부에 간호행정과와 병동간호과를 두고, 간호행정과장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을, 병동간호과장은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을 분장한다.

제92조제6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간호사 근무”를 “공급실, 외래간호 등”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간호부 내 행정에 관한 사항
2. 간호부 인력 운영 및 근무에 관한 사항
4. 병동 내 간호인력 근무에 관한 사항
5. 병동 환자의 간호 및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6. 병동 내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항

⑨ 은평병원 마약관리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마약류 중독 검사, 외래 진료 및 입원 치료
2. 마약 중독 관련 상담 및 재활
3. 마약류 중독 연구 및 교육
4. 마약류 중독 대응 관련 민관 파트너십 구축

제99조제4항제3호 중 “문화재·유적조사”를 “국가유산·유적조사”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동대문역사관 및 서울생활사박물관”을 “동대문역사관, 서울생활사박물관 및 서울우리소리박물관”으로 한다.

제104조제1항 본문 중 “교육홍보과장”을 “백제학연구소장”으로, “유물과학과장 및 백제학연구소장”을 “교육홍보과장 및 유물과학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전시기획과장”을 “백제학연구소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몽촌토성·몽촌역사관·백제집자리전시관”을 “몽촌토성·서울백제어린이박물관·백제집자리전시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제1호 중 “국가귀속문화재”를 “국가귀속문화유산”으로 한다.

제106조제3항제2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1호 중 “국가귀속문화재”를 “국가귀속문화유산”으로 한다.

제108조제5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서울사진미술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111조제2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제4호 및 같은 조 제6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구의야구공원 및 뚝섬승마훈련원”을 각각 “구의야구공원”으로 한다.

제113조제3항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 제3호(종전의 제4호) 중 “책 보물섬”을 “서울책보고 및 서울아트책보고”로 하고, 같은 항 제6호(종전의 제7호) 중 “과 의”를 “과의”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3호 및 제6호를 각각 제6호 및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종전의 제6호) 중 “도서관”을 “지역도서관 업무 및 운영개선”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지역도서관 발전 및 도서관서비스 강화를 위한 시책 수립·시행
3. 지역도서관 지원 및 협력사업 수행
7. 독서문화진흥 시책 발굴 및 시행
5. 지역도서관 협력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8. 그 밖에 도서관 등록·평가 등 광역대표도서관으로서의 업무

제115조제1항 본문 중 “지방학예연구관”을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학예연구관”으로 한다.

제127조제1항 본문 중 “공원운영과장 및 공원여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를 “공원운영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공원여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으로”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129조제1항 본문 중 “공원운영과장 및 공원여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를 “공원운영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공원여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으로”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131조제1항 본문 중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시설과장은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를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으로, 시설과장은 지방공업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으로”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133조제1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144조제2항 중 “감사 및 인권”을 “감사”로 한다.

제145조제1항 중 “감사담당관·공공감사담당관·안전감사담당관·조사담당관·인권담당관”을 “감사담당관·청렴담당관·공공감사담당관·안전감사담당관·조사담당관”으로, “지방기

술서기관으로 보하고, 인권담당관” 을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청렴담당관”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8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제6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감사위원장이 명하는 감사 및 조사사항의 처리

제145조제2항제1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2호를 제10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공감사담당관” 을 “청렴담당관” 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일상감사” 를 “적극행정 지원, 사전컨설팅, 적극행정 면책 운영” 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청렴도 향상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부패방지에 관한 추진계획 수립·운영 및 부패영향평가 총괄
3. 반부패·청렴 교육 및 홍보에 관한 계획·운영 총괄
4. 청렴·부패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5. 이해충돌 및 공무원행동강령에 관한 사항
7. 공직자 재산등록 및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145조제3항제8호 중 “감사사항” 을 “감사 및 조사사항” 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감사담당관” 을 “공공감사담당관” 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기술, 안전분야” 를 “지방공사·공단 및 출연기관” 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6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5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지방공사·공단 및 출연기관 감사, 감사결과 처리
3. 지방공사·공단 및 출연기관 자체감사기구 평가
4. 지방공사·공단 및 출연기관 상임감사 성과평가
5. 일상감사에 관한 사항
7. 감사위원장이 명하는 감사 및 조사사항의 처리

제145조제4항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조사담당관” 을 “안전감사담당관” 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9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4호 및 제6호를 각각 제9호 및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9호(종전의 제4호) 중 “조사사항” 을 “감사 및 조사사항” 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술, 안전분야 감사에 관한 계획 수립·조정
2. 도시기반시설의 시설계획 및 건설기술 관련사항의 감사
3. 시설물·공사장 및 주택·건축물의 안전관리실태 감사
6.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자치구, 공사·공단 포함)
5. 하도급 관련 시·자치구 및 그 산하기관 감사
7. 하도급 부조리 민원사항 조사 및 처리

제145조제5항제8호 중 “공직자비리신고센터 및 공익제보지원센터” 를 “하도급호민관제” 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권담당관”을 “조사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인권영향평가”를 “공익제보자 보호·지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9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4호(종전의 제9호) 중 “조사사항”을 “감사 및 조사사항”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비위사항의 조사·처리
2. 정보 및 동향 보고사항의 처리
3. 사이버 정보유출 조사사항의 처리
5. 주요시책 사항의 점검
6. 소관 사항 관련 징계 처분된 공무원의 소청 및 행정소송에 관한 사항
7. 공직자비리신고센터 및 공익제보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9. 공무원행동강령에 관한 조사 및 처리
10. 부조리신고보상금 지급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11. 공직자 기강감찰에 관한 사항
12. 공무직, 공공안전관 비위사항 조사·처리

제146조제1항 중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을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정감시 및 고충민원 조사·감사”를 “시정감시, 고충민원 조사·감사, 인권 관련”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5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10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8호(종전의 제9호) 중 “청렴계약”을 “공공사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9호(종전의 제10호) 중 “120현장민원, 시민불편살피미”를 “120현장민원”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2호부터 제1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민원배심제 운영에 관한 사항
12. 인권정책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
13.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운영
14.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운영 및 인권침해 사항 상담·조사·결정·이행관리
15. 인권보호 및 인권증진 정책 개발
16. 인권교육 실시 및 시민 인권의식 확산
17. 국내·외 인권단체 및 기관 교류 협력
18. 인권경영 및 인권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별표 4의 제목 중 “제91조제2항 관련”을 “제93조제3항 관련”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부시장 사무분장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경제실, 복지실, 교통실, 기후환경본부, 문화본부, 관광체육국, 평생교육국, 시민건강국, 민생노동국, 디지털도시국, 행정국, 재무국, 민생사법경찰국, 여성가족실, 글로벌도시정책관, 비상기획관, 미래청년기획관 소관 사항

제3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재난안전실, 주택실, 도시공간본부, 균형발전본부, 정원도시국, 물순환안전국, 미래공간기획관, 디자인정책관, 건설기술정책관, 도시기반시설본부, 서울아리수본부, 미래한강본부 소관 사항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정무부시장은 대변인, 홍보기획관의 소관 업무와 대국회·대의회 협조 및 정당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② 서울특별시 법제사무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위원 : 대변인, 홍보기획관, 감사위원장, 자치경찰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여성가족실장, 글로벌도시정책관, 비상기획관, 미래청년기획관, 경제실장, 복지실장, 교통실장, 기후환경본부장, 문화본부장, 관광체육국장, 평생교육국장, 시민건강국장, 민생노동국장, 디지털도시국장, 행정국장, 재무국장, 민생사법경찰국장, 미래공간기획관, 디자인정책관, 건설기술정책관, 재난안전실장, 주택실장, 도시공간본부장, 균형발전본부장, 정원도시국장, 물순환안전국장, 소방재난본부장, 서울아리수본부장, 미래한강본부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제22조제4항 중 “재난안전관리실장”을 “재난안전실장”으로 한다.

제31조제1항 “정보공개담당관”을 “정보시스템과장”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중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을 “양성평등담당관”으로 하고, “갈등관리협치과”를 “평가담당관”으로 한다.

③ 서울특별시 보안업무 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복지정책실장"을 "복지실장"으로, “디지털정책관”을 “디지털도시국장”으로 한다.

④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을 “민생노동국”으로, “경제정책실”을 “경제실”로, “복지정책실”을 “복지실”로, “도시교통실”을 “교통실”로, “재난안전관리실”을 “재난안전실”로, “주택정책실”을 “주택실”로, “푸른도시여가국”을 “정원도시국”으로 한다.

별표 중 “경제정책실”의 주관부서 란 “미디어콘텐츠산업과”를 “창조산업과”로 하고,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의 주관부서 란 “공정경제담당관”을 “공정경제과”로, “농수산유통담당관”을 “농수산유통과”로 한다.

별표 중 “기술심사담당관”을 “건설기술정책관”으로 하고, 재난안전관리실의 건설혁신과란을 삭제한다.

기술심사담당관 아래에 건설혁신담당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건설기술정책관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기술심사담 당 관	1.「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자 및 그에 소속된 건설기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제1항)	구청장
건설혁신 담당관	1.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종은 제외한다)을 등록한 자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가. 건설업 등록 신청의 접수 및 신청내용의 확인과 건설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의 접수 및 신고내용의 확인	○「건설산업기본법」 제9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1호가목	
	나.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의 기재사항의 변경 신청의 접수 및 신청 내용의 확인	○「건설산업기본법」 제9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1호나목	
	다. 건설업의 양도·법인합병 및 상속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신고 내용의 확인	○「건설산업기본법」 제9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1호다목	
	2.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자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가. 건설업의 등록 및 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의 수리	○「건설산업기본법」 제9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2호	
	나. 건설업등록증 및 건설업등록수첩의 교부·재교부	○「건설산업기본법」 제9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3호	
	다. 표시제한을 위반한 자에 대한 광고물의 강제철거 등의 조치	○「건설산업기본법」 제9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3의2호	
	라. 건설업의 양도·법인합병 및 상속에 대한 신고의 수리	○「건설산업기본법」 제9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4호	
	마. 건설업 폐업신고의 수리 및 건설업 등록말소	○「건설산업기본법」 제9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5호	
	바. 시정명령·지시	○「건설산업기본법」 제9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8호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사. 영업의 정지 또는 과징금의 부과	○「건설산업기본법」 제9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9호	
	아. 영업정지, 과징금의 부과 또는 건설업 등록말소	○「건설산업기본법」 제9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9의2호	
	자. 건설업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건설산업기본법」 제9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10호	
	차. 건설업등록말소 등의 공고 및 통지	○「건설산업기본법」 제9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10의2호	
	카. 청문	○「건설산업기본법」 제9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11호	
	타. 과태료의 부과징수	○「건설산업기본법」 제9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12호	
	파. 건설업등록 등 건설행정에 관한 사항의 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 입력 및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9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12의2호	
	하. 건설업등록대장의 작성·보관	○「건설산업기본법」 제9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13호	

⑤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재난안전관리실장”을 “재난안전실장”으로, “재난안전관리실”을 “재난안전실”로 하고, "안심돌봄복지과"를 "돌봄복지과"로, “소상공인담당관”을 “소상공인정책과”로 “상권활성화담당관”을 “상권활성화과”로, “정보통신보안담당관”을 “정보통신과장”으로 “디지털정책담당관”을 “디지털정책과장”으로, “건설혁신과”를 “건설혁신담당관”으로, “공원여가정책과”를 “정원도시정책과”로 한다.

별표 2의 수습주무부서란 연번37번 “경제정책실” 및 “전략산업기반과”를 “경제실” 및 “산업입지과”로, 연번39번 “경제정책실” 및 “국제협력과”를 “글로벌도시정책관” 및 “도시외교담당관”으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을 “민생노동국”으로, “디지털정책관”을 “디지털도시국”으로, “재난안전관리실”을 “재난안전실”로, “푸른도시여가국”을 “정원도시국”, “도시교통실”을 “교통실”로, “상수도사업본부”를 “아리수본부”로, 연번20번 수습주무부서란 중 “주택정책실”을 “건설기술정책관”으로, 연번58번 수습주무부서란 중 “주택정책실”을 “주택실”로, “공정경제담당관”을 “공정경제과”로, “농수산유통담당관”을 “농수산유통과”로, 정보통신보안담당관”을 “정보통신과”로, “공공의료추진단”을 “공공의료과”로 한다.

⑥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3호 중 “주택정책실장”을 “주택실장”으로 한다.

⑦ 서울특별시 한양도성 보존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주택정책실장”을 “주택실장”으로, "푸른도시여가국장"을 "정원도시국장"으로, “안전총괄실장”을 “재난안전실장”으로 한다.

⑧ 서울특별시 정보화사업 추진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디지털정책관”을 “디지털도시국”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통계사무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디지털정책관”을 “디지털도시국장”으로, “빅데이터담당관”을 “데이터전략과장”으로 한다.

⑨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 중 “자원순화과장”을 “자원회수시설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자원순환과”를 “자원회수시설과”로 한다.

⑩ 서울특별시 동물원 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푸른도시여가국장"을 "정원도시국장"으로 한다.

⑪ 서울특별시 도로 파손 등 신고포상금 지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재난안전관리실장”을 “재난안전실장”으로 한다.

⑫ 서울특별시 도로보수 건설기계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재난안전관리실장”을 “재난안전실장”으로 한다.

⑬ 서울특별시 재난관리 의무 위반 처분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재난안전관리실”을 “재난안전실”로 하고, 제16조제1항 중 “재난안전관리실장”을 “재난안전실장”으로 한다.

⑭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재난안전관리실장”을 “재난안전실장”으로 한다.

⑮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 중 “경제정책실장”을 “경제실장”으로 한다.

⑯ 서울특별시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여성가족정책실장”을 “여성가족실장”으로 한다.

⑰ 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2호 중 “노동정책담당관”을 “노동정책과장”으로 한다.

⑱ 서울특별시 공간정보 보안업무 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공간정보담당관”을 “공간정보과장”으로 한다.
제20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디지털정책관”을 “디지털도시국장”으로 한다.
제20조제2항제1호 중 “디지털정책담당관, 빅데이터담당관, 정보시스템담당관, 정보공개담당관, 공간정보담당관, 정보통신보안담당관”을 “디지털정책과장, 데이터전략과장, 정보시스템과장, 정보보안과장, 정보통신과장, 공간정보과장”으로 한다.
제20조제2항제2호 중 “공간정보담당관”을 “공간정보과장”으로 한다.

⑲ 서울특별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협조처란 “정보공개담당관”을 “정보시스템과장”으로 한다.

⑳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물품관리총괄관(보조총괄관)란, 물품관리관란, 물품출납공무원란
“정보통신보안담당관”을 “정보통신과장”으로 한다.

㉑ 서울특별시 공간정보의 구축과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공간정보담당관”을 “공간정보과장”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중 “공간정보담당관”을 “공간정보과”로 한다.

㉒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정보공개정책과장”을 “정보시스템과장”으로 한다.

㉓ 서울특별시 건축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미래공간기획담당관”을 “미래공간담당관”으로 하고 같은조 제3항 중 “미래공간기획담당관”을 “미래공간담당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중 “미래공간기획담당관”을 “미래공간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의 “미래공간기획담당관”을 “미래공간담당관”으로 한다.

㉔ 서울특별시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감사담당관”을 “청렴담당관”으로 한다.

㉕ 서울특별시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중 “감사담당관”를 “청렴담당관”으로 한다.

㉖ 서울특별시 일반건설업 행정처분 심의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안전총괄관”을 “건설기술정책관”으로, “건설혁신과장”을 “건설혁신담당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건설혁신과장”을 “건설혁신담당관”으로 한다.

㉗ 서울특별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민협력과장"을 "평가담당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중 "시민협력과장"을 "평가담당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시민협력과장"을 "평가담당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 및 제3항 중 "시민협력과장"을 "평가담당관"으로 한다.

㉘ 서울특별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및 제4항 중 “환경시민협력과장”을 각각 “기후환경정책과장”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중 “환경시민협력과장”을 각각 “기후환경정책과장”으로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보좌기관)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밑에 대변인, 홍보기획관, 약자와의동행추진단을 두고, 행정(1)부시장 밑에 여성가족정책실, 노동·공정·상생정책관, 비상기획관, 디지털정책관, 민생사법경찰단, 미래청년기획단을 두며, 행정(2)부시장 밑에 미래공간기획관, 디자인정책관, 기술심사담당관을 둔다.	제3조(보좌기관) ① ---------- ---------- --- 홍보기획관---------- ---------- ----- 여성가족실, 비상기획관, 미래청년기획관---------- ---------- ---------- ---------- ---------- 건설기술정책관을 둔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약자와의동행추진단) ①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	<삭 제>
②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은 약자와의 동행 관련 사무에 관하여 시장을 보좌한다.	
③ 약자와의동행추진단 밑에 동행정책담당관, 동행사업담당관을 두고, 동행정책담당관·동행사업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④ 동행정책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회적 약자와의 동행 계획 수립·총괄 조정 2. 사회적 약자 실태조사, 사각지대 발굴 및 정책 지원에 관한 사항 3. 사회적 약자 동행 지수 개발에 관한 사항 4. 사회적 약자 동행 지수 평가에 관한 사항 5. 사회적 약자 지원 관련 유관기관 협력에 관한 사항 6. 사회적 약자와의 현장 소통에 관한 사항 ⑤ 동행사업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회적 약자 지원 신규 사업 발굴에 관한 사항 2. 각 실·본부·국별 사회적 약자 지원 사업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3. 각 실·본부·국별 사회적 약자 지원 사업 재구조화 및 개선에 관한 사항 4. 각 실·본부·국별 사회적		

약자 지원사업 협력에 관한 사항	
<신 설>	제7조(글로벌도시정책관) ① 글로벌도시정책관은 지방이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 글로벌도시정책관은 이민·외국인정책, 외국인주민·다문화가족 지원, 도시외교, 국제협력 사무에 관하여 행정(1)부시장을 보좌한다. ③ 글로벌도시정책관 밑에 외국인이민담당관·다문화담당관·도시외교담당관·국제협력담당관을 두고, 외국인이민담당관·다문화담당관·도시외교담당관·국제협력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④ 제3항의 도시외교담당관은 개방형직위로서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⑤ 외국인이민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이민·외국인정책에 관한 사항 총괄 기획·조정 2. 이민·외국인정책 관련 정부

	부처 협력 및 제도개선 3. 외국인 인력 유치 확대, 정착 유도 및 지원 4.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 정착 유도 및 지원 5. 서울 글로벌센터 빌딩 운영 및 관리 6. 외국인 학교 건립 및 교육환경 개선 7. 외국인 인력 분포, 고용 등 통계 관리 8. 그 밖에 글로벌도시정책관 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⑥ 다문화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외국인주민·다문화가족 생활 지원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총괄 기획·조정 2.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 운영 3.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시설 설치 및 운영 4.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개발·추진 5. 문화다양성 및 다문화 인식

		개선에 관한 사항 6. 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에 관한 사항 ⑦ 도시외교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아시아태평양·유럽 등 해외지역과의 교류·협력 2. 관할 해외지역 주한 외국공관, 외교부 등과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3. 관할 해외지역의 시민·민간단체와의 국제교류에 대한 지원 4. 국제의전 및 외국인 상훈에 관한 사항 5. 서울특별시 각종 국제회의 총괄 및 조정 6. 국제기구·회의 유치 및 지원·협력에 관한 사항 7. 시티넷 사무국 운영에 관한 사항 8. 글로벌 전문가 등을 활용한 시정 현안 자문 및 국제 협력 방안 논의에 관한 사항 ⑧ 국제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서울시 국제개발협력사업 총괄 2. 서울시 우수정책 해외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 3. 대외협력기금 국제협력계정 운용에 관한 사항 4. 외국 공무원 초청연수 프로그램 총괄 5. 중앙아·서남아·아세안·중동·중남미·아프리카 등 해외지역과의 교류·협력 6. 관할 해외지역 주한 외국공관, 외교부 등과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7. 관할 해외지역의 시민·민간단체와의 국제교류에 대한 지원
제7조(여성가족정책실) ①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지방관리관으로 보한다. ②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양성평등, 출생 및 보육, 아이돌봄, 아동, 가족,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 1인가구 사무에 관하여 행정(1)부시장을 보좌한다. ③ 여성가족정책실장 밑에 양성	제6조(여성가족실) ① 여성가족실장----------. ② 여성가족실장은 저출생, 양성평등, ---------- 가족 ----------. ③ 여성가족실장 밑에 저출생담

평등담당관·영유아담당관·아이돌봄담당관·아동담당관·가족다문화담당관·1인가구담당관을 두고, 양성평등담당관·영유아담당관·아이돌봄담당관·아동담당관·가족다문화담당관·1인가구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당관·양성평등담당관·영유아담당관·아이돌봄담당관·아동담당관·가족담당관을 두고, 저출생담당관·양성평등담당관·영유아담당관·아이돌봄담당관·아동담당관·가족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④ 양성평등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⑤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성평등 노동정책 수립 및 시행, 일·생활 균형 업무	6. ---------- 시행
7.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지원 및 지도감독	<삭 제>
<신 설>	13. 안심귀가스카우트, 안심마을보안관, 안심물품·장비, 안심이 시스템 등 안심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8. ~ 13. (생 략)	7. ~ 12. (현행 제8호부터 제13호까지와 같음)
14. 자녀양육 환경개선 등 출산 및 양육 친화적인 업무에 관한 사항	<삭 제>
15. 저출생 대응 인구·가족 정책개발 및 기본계획 수립	<삭 제>

16. 그 밖에 실 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삭 제>
⑤ (생 략)	⑥ (현행 제5항과 같음)
⑥ 아이돌봄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⑦ ----------.
1. 영유아 및 초등돌봄계획 수립 및 정책 개발	1. 돌봄 지원 기본계획 ----------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4. 아이돌보미 사업지원	4. 서울형 키즈카페,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5. 서울형 키즈카페, 열린육아방, 보육반장, 공동육아나눔터, 가족품앗이 등 영유아 돌봄사업 운영	<삭 제>
6. ~ 9. (생 략)	5. ~ 8. (현행 제6호부터 제9호까지와 같음)
⑦ (생 략)	⑧ (현행 제7항과 같음)
⑧ 가족다문화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⑨ 가족담당관----------.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생 략)	7. (현행 제3호와 같음)
<신 설>	8. 청소년 한부모·부모 지원사업
4. (생 략)	9. (현행 제4호와 같음)

<신 설>	5. 아이돌보미 사업지원, 공동육아방, 공동육아나눔터 등 영유아 돌봄사업 운영
5.·6. (생 략)	3.·4. (현행 제5호 및 제6호와 같음)
7. (생 략)	6. (현행 제7호와 같음)
8. 외국인주민·다문화가족 생활 지원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총괄 기획·조정	<삭 제>
9.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삭 제>
10.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개발·추진에 관한 사항	<삭 제>
<신 설>	11.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상담시설 운영 지원
11. 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지원	10. ---------- 보호·자립 ----------
⑨ 1인가구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저출생담당관----------.
1. 1인가구 대책 총괄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1. 저출생 대응 인구·가족 정책개발 및 기본계획 수립
2. 1인가구 실태조사 및 사업 개발	2. 자녀양육 환경개선 등 출산 및 양육 친화에 관한 사항

3. 각 실·본부·국별 1인가구 지원사업 추진상황 점검 및 개선	3.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지원 및 지도 감독
4. 1인가구 대책 자문단 구성 운영	4. 일·생활 균형 업무
5. 1인가구 지원 관련 유관기관 협력에 관한 사항	5. 늘봄학교 지원----------
<신 설>	6. 그 밖에 실 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7조의2(노동·공정·상생정책관) ①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지방이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	제17조의3(민생노동국) ① 민생노동국에 소상공인정책과·노동정책과·상권활성화과·공정경제과·농수산유통과를 둔다.
②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노동행정, 소상공인정책, 상권활성화 지원, 공정경제·사회적 경제 육성, 농수산물 유통 사무에 관하여 행정(1)부시장을 보좌한다.	② 민생노동국장은 지방이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소상공인정책과장·노동정책과장·상권활성화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공정경제과장·농수산유통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노동·공정·상생정책관 밑에 노동정책담당관·소상공인담당관·상권활성화담당관·공정경제담당관·농수산유통담당관을 두고, 노동정책담당관·소상공인담당관·상권활성화담당	<삭 제>

관은 지방서기관으로, 공정경제담당관·농수산유통담당관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④ 노동정책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노동정책과장----------.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사각지대 근로자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9. 프리랜서, 플랫폼종사자, 노무제공자 등 비정형노동자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10. (생 략)	10. (현행과 같음)
⑤ 소상공인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③ 소상공인정책과장----------.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중소기업 적합업종 보호 활성화에 관한 사항	<삭 제>
<신 설>	7. 소상공인 온라인 판매 활성화 및 매출 확대 지원에 관한 사항
6.·7. (생 략)	5.·6. (현행 제6호 및 제7호와 같음)
7. 시민시장 등 소상공인 판로 지원에 관한 사항	6. 소상공----------
8. 소상공인 온라인·모바일 등 디지털 플랫폼 기반 지원에 관한 사항	<삭 제>

9. (생 략)	8. (현행 제9호와 같음)
10. 디지털 기반의 소상공인 경영 지원에 관한 사항	<삭 제>
11. 소상공인 공정 수수료 보장에 관한 사항	<삭 제>
12. ~ 15. (생 략)	9. ~ 12. (현행 제12호부터 제15호까지와 같음)
16. (생 략)	13. (현행 제16호와 같음)
⑥ 상권활성화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⑤ 상권활성화과장----------.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⑦ 공정경제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⑥ 공정경제과장----------.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민생대책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6. 공정경제 기본계획 ----------
7. ~ 16. (생 략)	7. ~ 16. (현행과 같음)
17. 사회적기업·마을기업·협동조합 관리·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7. ---------- 육성 시책 수립 및 관리·운영----------
<신 설>	18. 사회적경제와 관련된 인프라, 지원에 관한 사항
18. (생 략)	19. (현행 제18호와 같음)
19. 사회투자기금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삭 제>

<신 설>	20. 중소기업육성기금(사회적경제계정)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⑧ 농수산유통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⑦ 농수산유통과장----------.
1. ~ 14. (생 략)	1. ~ 14.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7조의4(디지털도시국) ① 디지털도시국에 디지털정책과·데이터전략과·정보시스템과·정보보안과·정보통신과·공간정보과를 둔다.
	② 디지털도시국장은 지방이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디지털정책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데이터전략과장·정보시스템과장·정보보안과장·정보통신과장·공간정보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제2항의 데이터전략과장 및 정보보안과장은 개방형 직위로서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④ 디지털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중장기계획 수립·조정 및 총괄 2. 서울디지털재단 운영 지원 및 지도·감독 3. 인공지능 정책 수립·조정 4. 인공지능 기반 서비스 구축·운영 5. 블록체인 플랫폼 운영 및 비대면 디지털행정서비스 구축·운영 6. 데이터센터 운영의 지도·감독 7. 디지털정책 홍보·마케팅 및 해외교류 협력 추진 8. 위고(WeGO) 사무국 운영 지원 9. 메타버스 계획 총괄 및 행정서비스 구축·운영 10. 전자정부 플랫폼(Platform)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한 사항 11. 디지털 취약계층 역량 강화 관련 사업 12.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데이터전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빅데이터 분석·활용 전략계획 수립·조정 2. 빅데이터 수집·저장·분석·활용 총괄조정 3. 시정 주요 사업 기획·평가를 위한 데이터 분석·지원 등 데이터 기반 행정 추진 4.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운영 5. 공공데이터 표준화 및 품질관리 6. 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 활성화 7. 통계조사의 총괄·조정 및 시행 8. 통계자료 분석 가공·생산, 데이터베이스 구축·운영 ⑥ 정보시스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행정정보시스템 정책 수립·조정 2. 업무관리, 데스크톱가상화(VDI), 영상협업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3. 공인 관리·고시·공고·공포 및 발령번호 부여에 관한

		사항 4. 문서접수·배부, 우편물 접수·발송 등 문서실 운영에 관한 사항 5.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 심사에 관한 사항 6. 정보화사업 추진 절차에 관한 사항 7. 정보기술아키텍처(EA) 운영에 관한 사항 8. 행정포털, 메일, 메신저, 문자전송시스템, 우편물관리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9. 공공서비스예약, 시도·시군구 행정, 공통행정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10. 모바일오피스, 인공지능회의록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11. 중앙정부와의 정보시스템 연계 추진 12.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관한 사항 13. 행정정보 공개제도 총괄·조정·운영에 관한 사항 14. 정보소통광장 및 문서공개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15. 기록관, 기록문화관, 기록관리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16. 서울기록원 운영의 지도·감독 ⑦ 정보보안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정보보안 정책 수립·조정 2. 정보보안감사 총괄 조정 및 시행 3.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 및 사이버침해사고 대응 총괄 4.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 및 운영·관리 5.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에 관한 사항 6. 정보보호시스템 및 서울시사이버안전센터 구축·운영 7. 개인정보보호 정책 수립·조정 8. 개인정보보호시스템 구축·운영 9.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평가 및 유·노출 대응 총괄 10. 사이버공격 대응훈련 및 사이버보안진단의 날 시행 11.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계획 수립·시행 12.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신기술 및 기술기준 보급 13. 중앙정부·유관기관과의 사이버침해 대응 및 개인정보보호 공동협력에 관한 사항 ⑧ 정보통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정보통신 정책 수립·조정 및 총괄 2. Wi-Fi, 이동통신 등 유·무선 통신인프라 구축·운영 3. 초고속정보통신 인프라 구축·운영 및 통신망운영센터 운영·관리 4. 소프트웨어기반 정보통신인프라 구축·운영 5. 사물인터넷 계획 수립·조정 및 총괄 6. 정보통신 관련 신기술 및 기술기준 보급 7. 국가정보통신 서비스 관련 사항 8. 영상회의시스템 구축 및 운영

		9. 영상정보처리기기 정책 수립·조정 10. 스마트서울 안전망 및 서울시CCTV안전센터 구축·운영 11. 정보통신공사업, 자가전기통신설비 민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2. 다기능 사무기기 및 소프트웨어 보급·관리 ⑨ 공간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간정보정책 수립·조정 2. 국가공간정보체계 구축 추진 3. 공간정보 데이터 구축 및 시스템 운영·유지관리 4. 공간정보 표준화 및 품질관리 5. 공간정보 통합·유통·개방 및 이용 활성화 6. 공간정보 교육·홍보 및 정책발굴 7. 3차원 기반 Virtual Seoul 구축·운영 8. 주소정보 정책 수립 및 조정·운영 9. 수치지형도 제작, 갱신 및 유

	지관리 10. 지도정보 플랫폼 및 스마트 서울맵 구축·운영 11. 지하시설물 통합관리체계 구축·운영 12. 실내 공간정보 구축·활용 13. 항공사진의 촬영·관리·활용 14. 무인 비행장치(드론) 및 위성 공간정보 활용체계 구축 15. 서울스마트불편신고 구축·운영 16. 공간정보 보안정책 관리·운영
제9조(디지털정책관) ① 디지털정책관은 지방이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 디지털정책관은 정보화사업에 관하여 행정(1)부시장을 보좌한다. ③ 디지털정책관 밑에 디지털정책담당관·빅데이터담당관·정보시스템담당관·정보공개담당관·공간정보담당관·정보통신보안담당관을 두고, 디지털정책담당관·정보공개담당관은 지	제9조(미래청년기획관) ① 미래청년기획관은 ----------. ② 미래청년기획관은 청년정책----------. ③ 미래청년기획관 밑에 청년정책담당관·청년사업담당관을 두고, 청년정책담당관·청년사업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방서기관으로, 빅데이터담당관·정보시스템담당관·공간정보담당관, 정보통신보안담당관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④ 제3항의 빅데이터담당관은 개방형직위로서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미래청년기획관은 개방형직위로서 제1항의 규정에도 ----------.
⑤ 디지털정책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⑤ 청년정책담당관----------.
1.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중장기계획 수립·조정 및 총괄	1.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및 총괄 조정
2. 서울디지털재단 운영 지원 및 지도·감독	2.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운영 및 민관협의체 운영지원
3. 사물인터넷 계획 수립·조정 및 총괄	3. 청년정책 관련 자치법규(조례, 규칙)의 제·개정 및 운영
4. 블록체인 플랫폼 운영 및 비대면 디지털행정서비스 구축·운영	4. 서울청년참여기구 ---- 지원
5. 데이터센터 운영의 지도·감독	5. 국내외 청년교류 및 네트워크 구축
6. 디지털정책 홍보·마케팅 및 해외교류 협력 추진	6. 청년인재 발굴 및 지원
7. 위고(WeGO) 사무국 운영 지원	7. 청년 주간 운영

8. 메타버스 계획 총괄 및 행정 서비스 구축·운영	<삭 제>
9. 전자정부 플랫폼(Platform)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한 사항	<삭 제>
10. 그 밖에 디지털정책관 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삭 제>
⑥ 빅데이터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⑥ 청년사업담당관----------.
1. 빅데이터 활용 전략계획 수립·조정	1. 청년수당 등 청년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2. 빅데이터 수집·저장·활용 총괄조정	2. 사회적 고립청년 등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민관 빅데이터 활용협의회 구성 및 운영	3. 청년의 정신건강 증진 지원에 관한 사항
4. 공공데이터 표준화 및 품질 관리	4. 청년시설 설치 및 운영
5. 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 활성화	5. 서울광역청년센터 등 청년지원기관의 운영 및 지원
6. 데이터 기반 과학행정 추진	6. 청년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사항
7. 통계조사의 총괄·조정 및 시행	7. 청년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사항
8. 통계자료 분석 가공·생산, 데이터베이스 구축·운영	<삭 제>
⑦ 정보시스템담당관은 다음 사	<삭 제>

항을 분장한다. 1. 행정정보시스템 정책 수립·조정 2. 행정정보시스템 표준화·공동활용 3. 인공지능 정책 수립·조정 4. 인공지능 기반 서비스 구축·운영 5. 정보화사업 관리에 관한 사항 6. 정보시스템[행정포털, 메일, 메신저, 문자전송, 모바일오피스, 정보기술아키텍처(EA), 시도·시군구 행정, 공통행정시스템] 운영·관리 7. 한국지역정보개발원 관련 사항 8.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9. 중앙정부와의 정보시스템 연계추진 10. 개인정보보호 정책 수립·조정 및 개인정보보호 시스템 구축·운영	
⑧ 정보공개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삭 제>

1. 행정정보 공개제도 총괄·조정·운영에 관한 사항 2. 정보소통광장 및 문서공개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3. 업무관리시스템 운영·유지관리 및 고도화 4. 공인 관리에 관한 사항 5. 고시·공고·공포 및 발령번호 부여에 관한 사항 6. 문서접수·배부에 관한 사항 7. 우편물 접수·발송 및 우편물관리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8. 기록관, 기록문화관 등 운영에 관한 사항 9. 기록관리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10. 서울기록원 운영의 지도·감독	
⑨ 공간정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간정보정책 계획 수립·조정 및 국가공간정보체계 구축 추진 2. 3차원 기반 Virtual Seoul 구축·운영	<삭 제>

3. 수치지형도 제작, 갱신 및 유지관리 4. 공간정보 교육·홍보 및 정책발굴 5. 공간정보 표준화 및 보안관리 6. 공간정보 데이터 구축·운영, 유통·개방 및 개발 지원 7. 공간정보 플랫폼 및 정책지도 구축·운영 8. 2차원 기반 공간정보 시스템 관리·운영 9. 항공사진의 촬영·관리·활용 10. 지하시설물 및 지반 통합관리체계 구축·운영 11. 실내공간 및 3차원 공간정보시스템 구축·운영 12. 사회약자 위치기반 안전서비스 보급 및 이용 활성화 13. 무인동력 비행장치(드론)를 이용한 공간정보 구축·활용 14. 서울스마트불편신고 구축·운영 15. 새주소 사업에 관한 사항		
⑩ 정보통신보안담당관은 다음	<삭 제>	

사항을 분장한다. 1. 정보통신 정책 수립·조정 및 총괄 2. 스마트도시 통신인프라 정책 수립·조정 3. 초고속정보통신 인프라 구축·운영 및 통신망운영센터 운영·관리 4. 공공무선인터넷 인프라 구축·운영 5. 정보통신·정보보안 관련 신기술 및 기술기준 보급 6. 국가정보통신 서비스 관련 사항 7. 정보보안 정책 수립·조정 8. 정보보호시스템 구축·운영 및 서울사이버안전센터 운영 9.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 및 운영관리 10.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 11.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관리 실태 점검, 보안수준평가 및 침해사고에 관한 사항 12.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계획 수립·시행 13. 영상회의시스템 구축 및 운		

영 14. 영상정보처리기기 정책 수립·조정 및 스마트도시 안전망·안전센터 구축·운영 15. 정보통신공사업, 자가전기통신설비 민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6. 다기능 사무기기 및 소프트웨어 보급·관리	
제9조의3(민생사법경찰단) ①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민생사법경찰단장은 특별사법경찰 직무와 관련된 사무에 관하여 행정(1)부시장을 보좌한다. ③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특별사법경찰 지명직무에 대한 단속계획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특별사법경찰 직무교육 등 역량함양에 관한 사항 3. 자치구 특별사법경찰 운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삭 제>

4. 특별사법경찰 운영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특별사법경찰 운영 관련 유관기관 협력에 관한 사항	
제9조의4(미래청년기획단) ① 미래청년기획단장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미래청년기획단장은 청년정책 업무에 관하여 행정(1)부시장을 보좌한다. ③ 제1항의 미래청년기획단장은 개방형직위로서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④ 미래청년기획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및 총괄 조정 2. 청년정책위원회 운영 및 민관협의체 운영지원 3. 청년정책 관련 자치법규(조례, 규칙)의 제·개정 및 운영 4. 청년허브 등 청년활동지원기관 운영 및 지원 5. 서울청년의회 운영 및 지원	<삭 제>

6. 국내외 청년교류 및 네트워크 구축	
7. 청년미래기금,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등 금융지원 시행에 관한 사항	
8. 청년활동지원사업 및 청년공간 조성·운영	
9. 청년인재 발굴 및 지원	
제10조(기획조정실에 두는 담당관) ① 기획조정실장 밑에 정책기획관·재정기획관·기획담당관·조직담당관·창의행정담당관·법무담당관·법률지원담당관·예산담당관·재정담당관·공공자산담당관·평가담당관·공기업담당관을 둔다.	제10조(기획조정실) ① ---------- 정책기획관·재정기획관·기획담당관·조직담당관·약자동행담당관·창의행정담당관·법무담당관·법률지원담당관·예산담당관·재정담당관·평가담당관·공기업담당관-----.
② 기획조정실장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 규정에 따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정책기획관은 지방이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재정기획관은 지방부이사관으로, 기획담당관·창의행정담당관·법무담당관·법률지원담당관·예산담당관·재정담당관·평가담당관·공기업담당관은	② ---------- 기획담당관·약자동행담당관·창의행정담당관·법무담당관·법률지원담당관·예산담당관·재정담당관·평가담당관·

지방서기관으로, 조직담당관·공공자산담당관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공기업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조직담당관----------. ③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④ ---------- 조직관리, 약자동행, 창의행정----------성과평가----------.
④ 정책기획관은 시정계획, 조직관리, 법무행정 등에 관하여, 재정기획관은 투자재원 배분·조정, 정부재정 지원·협력, 중장기재정계획 수립·조정, 공공자산 운용, 성과평가 등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⑤ ----------.
⑤ 기획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8. (현행과 같음)
1. ~ 18. (생 략)	19. 서울시 인구변화대응 정책 총괄·조정
19. 정책과제 개발 및 자문에 관한 사항	20. 도시경쟁력 평가에 관한 사항
<신 설>	21. (현행 제20호와 같음)
20.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⑥ (생 략)	⑦ 약자동행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 설>	1. 사회적 약자와의 동행 계획 수립·총괄 조정
	2. 사회적 약자 사각지대 발굴

	및 정책 지원에 관한 사항
	3. 사회적 약자 동행 지수 개발, 평가에 관한 사항
	4. 사회적 약자 지원 관련 유관기관 협력에 관한 사항
	5. 각 실·본부·국별 사회적 약자 지원 사업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6. 각 실·본부·국별 사회적 약자 지원 사업 재구조화 및 개선에 관한 사항
	7. 각 실·본부·국별 사회적 약자 지원사업 협력에 관한 사항
⑦ 창의행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⑧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도시경쟁력 평가에 관한 사항	8. 정책과제 개발 및 자문----------
⑧·⑨ (생 략)	⑨·⑩ (현행 제8항 및 제9항과 같음)

⑩ 예산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삭 제>
1. 세입·세출 예산편성	
2. 예산집행 및 사후관리 총괄	
3. 교육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4. 예비비 관리	
5. 중기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6.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운용에 관한 사항	
7. 복권 수익금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8. 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운용에 관한 사항	
⑪ 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⑪ 예산담당관----------.
1. 시 재정의 경영합리화 총괄	1. 세입·세출 예산편성
2. 민간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사항	2. 예산집행 및 사후관리 총괄
3. 부채관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및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3. 교육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4. 시 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4. 예비비 관리
5. 민간보조금사업에 관한 사항	5. 중기재정계획 수립--------
6. 재정수요 통계지표 선정 및	6.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운용-

개발에 관한 사항	----------
7. 정부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7. 복권 수익금 운용·관리---- --
8. 기금관리 총괄	<삭 제>
9. 시민참여예산제 및 숙의예산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삭 제>
10. 시민 예산절감과 예산낭비 신고 및 예산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	<삭 제>
⑫ 공공자산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⑫ 재정담당관---------- ---------.
1. 주요 공공토지 및 건축물의 활용방안에 관한 사항	1. 시 재정의 경영합리화 총괄
2. 주요 자산 매입 등 취득 결정에 관한 사항	2. 민간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사항
3. 공공 토지자원의 종합적 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용에 관한 사항	3. 부채관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4. 공유재산 위탁개발에 관한 사항	4. 시 재정 투자사업 심사
5. 공공기여시설 통합관리에 관한 사항	5. 민간보조금사업---------- -----
6. 공공기여 관련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	6. 재정수요 통계지표 선정 및 개발에 관한 사항
<신 설>	7. 정부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신 설>	8. 기금관리 총괄

<신 설>	9. 시민참여예산제 운영에 관한 사항
<신 설>	10. 시민 예산절감과 예산낭비 신고 및 예산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
<신 설>	11. 고향사랑 기부에 관한 사항
⑬·⑭ (생 략)	⑬·⑭ (현행과 같음)
제10조의2(소방재난본부에 두는 과) ① ~ ⑧ (생 략)	제10조의2(소방재난본부) ① ~ ⑧ (현행과 같음)
제11조(경제정책실에 두는 국·과) ① 경제정책실에 경제일자리기획관·창조산업기획관·경제정책과·일자리정책과·창업정책과·대학창업과·금융투자과·첨단산업과·창조산업과·뷰티패션산업과·국제교류과·산업입지과를 둔다.	제11조(경제실) ① 경제실에 경제일자리기획관·창조산업기획관·경제정책과·일자리정책과·창업정책과·대학협력과·금융투자과·창조산업과·뷰티패션산업과·첨단산업과·산업입지과를 둔다.
② 경제정책실장은 지방관리관 또는 지방이사관으로, 경제일자리기획관은 지방이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창조산업기획관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경제정책과장·일자리정책과장·창업정책과장·대학창업과장·금융투자과장·창조산업과장·국제교류과장은	② 경제실장---------- 경제일자리기획관·창조산업기획관은 지방부이사관으로, 경제정책과장·일자리정책과장·창업정책과장·대학협력과장·금융투자과장·창조산업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뷰티패션산업과장·첨단산업과장·산업입지과장--

지방서기관으로, 첨단산업과장·뷰티패션산업과장·산업입지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
③ 경제일자리기획관은 제5항부터 제10항까지의 사무를 분장한다.	③ ---------- 제4항부터 제8항까지의 사무를, 창조산업기획관은 제9항부터 제12항----.
④ 창조산업기획관은 창조산업 및 국제협력 관련 사무에 관하여 경제정책실장을 보좌한다.	<삭 제>
⑤ 경제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서울산업진흥원 지도·감독	3. 서울경제진흥원 --------
4. ~ 19. (생 략)	4. ~ 19. (현행과 같음)
⑥·⑦ (생 략)	⑤·⑥ (현행 제6항 및 제7항과 같음)
⑧ 대학창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⑧ 금융투자과장----------.
1. 대학 창업 활성화 정책 수립 및 시행	1. 금융산업 육성 및 금융중심지 조성에 관한 사항
2. 대학 창업 정책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2. 서울국제금융센터 관리----------
3. 대학·청년 창업 및 대학 지역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국제금융지구 조성 추진에 관한 사항

4. 대학 창업지원시설 조성·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역금융특화를 위한 금융수요 개발에 관한 사항
5. 대학 창업기업 성장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5. 금융전문인력 양성 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6. 대학 창업 사업 성과 평가 및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6. 국제금융기구 및 글로벌 금융기업 유치에 관한 사항
7. 서울 지역 대학, 민간기관, 해외 대학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7. 외국인 투자유치 종합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신 설>	8. 외국인 투자유치 홍보·마케팅에 관한 사항
<신 설>	9. 글로벌기업 등 투자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신 설>	10. 여의도 금융중심지 기부채납 계획수립 등 금융허브 조성에 관한 사항
<신 설>	11. 외국인투자 촉진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신 설>	12. 외국인 투자자를 위한 전담 지원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⑨ 금융투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삭 제>
1. 금융산업 육성 및 거점 조성에 관한 사항	
2. 서울국제금융센터 건립 추진	

·지원 3. 국제금융지구 조성 추진 4. 지역금융특화를 위한 금융수요 개발 5. 금융전문인력 양성 계획 수립 및 추진 6. 국제금융기구 및 글로벌 금융기업 유치 7. 외국인 투자유치 종합계획 수립·시행 8. 외국인 투자유치 홍보·마케팅 9. 글로벌기업·외국인 정주여건 조성 등 투자 환경개선 10. 외국인 학교 건립 및 교육환경 개선 11. 외국인투자 촉진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2. 외국인 투자자를 위한 전담 지원시설 설치·운영 13. 서울 글로벌센터 빌딩 운영 및 관리	
<신 설>	⑩ 뷰티패션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뷰티산업 육성·지원정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패션·봉제산업 육성·지원 정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귀금속·보석 산업 육성 지원정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4. 동대문 패션 클러스터 조성 추진 5. 서울패션허브 추진에 관한 사항 6. 서울뷰티허브 추진에 관한 사항 7. 도시제조업 등 지역특화산업 육성계획의 수립·조정 8. 서울도시제조허브 및 패션제조 기반시설 조성·운영에 관한 사항 9. 도시제조업 및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사항
⑩ 첨단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2. (생 략) 3. 서울바이오허브 운영에 관한 사항 4. (생 략) 5. 창동·상계 바이오메디컬 클	⑪ ----------. 1.·2. (현행과 같음) 3. 서울바이오허브 앵커시설 ---- 4. (현행과 같음) 5. 바이오·의료 ----------

러스터 육성에 관한 사항	----------
6. ~ 10. (생 략)	6. ~ 10. (현행과 같음)
11. 양자 기술 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11.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
⑪ (생 략)	⑨ (현행 제11항과 같음)
⑫ 뷰티패션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⑫ 산업입지과장---------- ----------.
1. 뷰티산업 육성·지원정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신 설>	1. 산업 거점 조성에 관한 사항 총괄
	2. 산업입지 수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패션·봉제산업 육성·지원 정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4. 뿌리산업 ---------- --
3. 동대문 패션 클러스터 조성 추진	3. 산업단지 지정에 관한 사항
4. 서울패션허브 추진에 관한 사항	4.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5. 서울뷰티허브 추진에 관한 사항	5. 산업·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운영---------- --
6. 도시제조업 등 지역특화산업 육성계획의 수립·조정	6. 온수산업단지 재생·활성화에 관한 사항
7. 도시제조업 혁신거점 및 기반시설 조성·운영에 관한 사	7.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정 및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

항	관리에 관한 사항
8. 도시제조업 및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사항	8. 준공업지역 내 임대산업시설 운영·관리----
<신 설>	9. 수도권 공장총량제 운영에 관한 사항
<신 설>	10. 마곡산업단지 관리·운영 총괄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신 설>	11. 서울디지털산업단지(G밸리) 활성화에 관한 사항
<신 설>	12. 서울무역전시장(SETEC) 복합개발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신 설>	13. 디지털미디어시티(DMC) 용지 공급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신 설>	15. 인쇄·기계금속 산업 지원 시설 조성·운영에 관한 사항
⑬ 국제교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삭 제>
1. 국제교류·협력 총괄·조정	
2. 외국도시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3. 대외협력기금 국제협력계정 운용에 관한 사항	
4. 동북아지역협력 협의체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5. 외교부,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 등과의 국제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	
6. 국제의전 및 외국인 상훈에 관한 사항	
7. 서울특별시 각종 국제회의 총괄 및 조정	
8. 주한 외국 공관의 지원에 관한 사항	
9. 시민·민간단체의 국제교류에 대한 지원	
10. 외국 공무원 초청 연수 프로그램 총괄·조정	
11. 국제기구·회의 유치 및 지원·협력에 관한 사항	
12. 시티넷 사무국 운영에 관한 사항	
13. 우수정책의 해외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	
14. 글로벌 전문가 등을 활용한 시정 현안 자문 및 국제 협력 방안 논의에 관한 사항	
⑭ 산업입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⑦ 대학협력과장----------.
1. 산업 거점 조성에 관한 사항 총괄	1.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정책에 관한 사항

2. 산업입지 수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계획 수립, 시행,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3. 산업단지 지정에 관한 사항	3.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전담 센터 지정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4.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4. 서울 지역고등교육위원회 운영----------
5. 산업·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	5. 대학 창업 활성화 정책 수립, 시행,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6. 온수산업단지 재생·활성화에 관한 사항	6. 대학 창업지원시설 조성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7.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정 및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관리에 관한 사항	7. 대학 창업기업 성장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8. 준공업지역 내 임대산업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대학 관련 대외 협력에 관한 사항
9. 수도권 공장총량제 운영에 관한 사항	<삭 제>
10. 마곡산업단지 총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삭 제>
11. 마곡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수립 및 산업시설용지 토지공급·관리에 관한 사항	<삭 제>
12. 마곡산업단지 국내·외 투자기업 유치 및 홍보·마케팅,	<삭 제>

대외협력, 입주기업 지원·관리에 관한 사항	
13. 마곡산업단지 관리기구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삭 제>
14. 마곡산업단지 공공지원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삭 제>
15. 마곡광장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삭 제>
16. 서울디지털산업단지(G밸리) 활성화에 관한 사항	<삭 제>
17. 서울무역전시장(SETEC) 복합개발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삭 제>
18. 디지털미디어시티(DMC) 용지 공급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삭 제>
제12조(복지정책실에 두는 국·과) ① 복지정책실에 복지기획관·복지정책과·안심소득추진과·안심돌봄복지과·어르신복지과·장애인복지정책과·장애인자립지원과·자활지원과를 둔다.	제12조(복지실) ① 복지실에 복지기획관·돌봄·고독정책관·복지정책과·안심소득과·장애인복지과·장애인자립지원과·자활지원과·어르신복지과·고독대응과·돌봄복지과·1인가구지원과를 둔다.
② 복지정책실장은 지방관리관 또는 지방이사관으로, 복지기획관은 지방이사관 또는 지방부이	② 복지실장---------- ---------- ----------

사관으로, 복지정책과장·안심소득추진과장·안심돌봄복지과장·어르신복지과장·장애인복지정책과장·장애인자립지원과장·자활지원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각각 보한다.	-------- 돌봄·고독정책관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복지정책과장·안심소득과장·장애인복지과장·장애인자립지원과장·자활지원과장·어르신복지과장·고독대응과장·돌봄복지과장·1인가구지원과장---.
③ 복지기획관은 같은 조 제4항부터 제10항까지의 사무를 분장한다.	③ ---------- 제4항부터 제8항까지의 사무를, 돌봄·고독정책관은 제9항부터 제12항----------.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안심소득추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⑤ 안심소득과장----------.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장애인복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장애인복지종합계획의 수립·조정 및 시행 2. 사회복지기금(장애인복지계정)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3. 장애인복지 관련 법인 및 비영리단체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5. 장애인단체 활동지원 및 육

	성에 관한 사항
	6. 장애인 인권분야 상시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7. 장애인 권익증진 및 사회적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⑥ 안심돌봄복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⑪ 돌봄복지과장----------.
1. 복지사각지대 종합지원계획 수립·조정 및 시행	<삭 제>
2.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관리	<삭 제>
3.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	<삭 제>
4. 사회적 고립가구 발굴, 지원, 관리	<삭 제>
5. ~ 11. (생 략)	1. ~ 7. (현행 제5호부터 제11호까지와 같음)
12. (생 략)	8. (현행 제12호와 같음)
⑦ (생 략)	⑨ (현행 제7항과 같음)
⑧ 장애인복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⑧ 자활지원과장----------.
1. 장애인복지종합계획의 수립·조정 및 시행	1. 노숙인 종합업무계획, 쪽방촌 지원 종합대책, 지역자활계획 수립
2. 사회복지기금(장애인복지계정)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2. 노숙인 시설 확충·운영·지원·평가----------

3. 장애인복지 관련 법인 및 비영리단체에 관한 사항	3. 노숙인 복지 -------- 비영리 단체----------
4.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4. 거리노숙인 감소대책 수립 및 상담활동
5. 장애인단체 활동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5. 노숙인 통합정보시스템 운영·관리
6. 장애인 인권분야 상시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6. 노숙인 일자리·재활·자활·의료지원------
7. 장애인 권익증진 및 사회적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7. 노숙인·쪽방주민 주거지원 및 생활안정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신 설>	8. 자활근로사업 및 자활공동체에 관한 사항
<신 설>	9. 사회복지기금(자활계정)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⑨ (생 략)	⑦ (현행 제9항과 같음)
⑩ 자활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⑩ 고독대응과장---------- ------.
1. 노숙인 종합업무계획, 지역자활계획 수립	1. 고독·고립 대응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노숙인보호시설 확충계획 수립 및 운영·지원·평가에 관한 사항	2.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에 관한 사항
3. 거리노숙인 감소대책 수립 및 상담활동	3. 사회적 고립가구 발굴, 지원, 관리
4. 노숙인 통합정보시스템 운영	4.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에

·관리	관한 사항
5. 노숙인 일자리사업·재활사업·의료구호사업에 관한 사항	5. 고독 고립 관련 사회적 교류 지원 사업 개발·시행·조정 등에 관한 사항
6. 노숙인 주거지원 및 생활안정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6. 고독·고립 관련 네트워크 및 민·관 협력체계 구축
7. 자활근로사업 및 자활공동체에 관한 사항	7. 독거어르신 돌봄----------
8. 사회복지기금(자활계정)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8. 어르신 주거복지시설, 재가노인지원 서비스 제공 기관에 관한 사항
<신 설>	⑫ 1인가구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1인가구 대책 총괄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1인가구 실태조사 및 사업 개발
	3. 각 실·본부·국별 1인가구 지원사업 추진상황 점검 및 개선
	4. 1인가구 대책 자문단 구성 운영
	5. 1인가구 지원 관련 유관기관 협력에 관한 사항
제13조(도시교통실에 두는 과) ① 도시교통실에 교통기획관·교	제13조(교통실) ① 교통실에 교통기획관·교통운영관·교통정책

통정책과·도시철도과·버스정책과·미래첨단교통과·택시정책과·주차계획과·보행자전거과·물류정책과·교통운영과·교통지도과를 둔다.	과·도시철도과·버스정책과·미래첨단교통과·택시정책과·주차계획과·보행자전거과·물류정책과·교통운영과를 둔다.
② 도시교통실장은 지방관리관 또는 지방이사관으로, 교통기획관은 지방부이사관으로, 교통정책과장·도시철도과장·버스정책과장·미래첨단교통과장·택시정책과장·물류정책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주차계획과장·보행자전거과장·교통운영과장 및 교통지도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교통실장---------- 교통기획관·교통운영관---------- 주차계획과장·보행자전거과장·교통운영과장----------.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교통기획관은 교통정책, 철도정책, 버스정책, 미래첨단교통정책, 택시정책, 주차계획, 보행·자전거정책, 물류정책, 교통운영, 교통지도 등에 관하여 도시교통실장을 보좌한다.	④ 교통기획관은 제5항부터 제9항까지의 사무를, 교통운영관은 제10항부터 제13항까지의 사무를 분장한다.
⑤ ~ ⑨ (생 략)	⑤ ~ ⑨ (현행과 같음)
⑩ 주차계획과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⑩ ---------- 다음 사항----------.

1. ~ 14. (생 략)	1. ~ 14. (현행과 같음)
<신 설>	15. 교통지도단속 종합계획 수립
<신 설>	16. 주·정차위반 관련 단속, 지도점검 및 자치구 지도·감독
<신 설>	17. 사업용차량 관련 단속, 지도점검 및 자치구 지도·감독
<신 설>	18. 전용차로 통행 위반 단속, 과태료 부과·징수
<신 설>	19.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단속, 과태료 부과·징수
<신 설>	20. 교통지도단속 관련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시스템·장치에 관한 사항
<신 설>	21. 교통불편민원에 대한 조사·단속 등 처리
<신 설>	22. 교통사법경찰(교통 분야 특별사법경찰) 운영 및 관리
⑪ ~ ⑬ (생 략)	⑪ ~ ⑬ (현행과 같음)
⑭ 교통지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삭 제>
1. 주·정차위반단속 종합계획 수립	
2. 주·정차위반 단속에 대한 자치구·단속반 지도·감독	
3. 전용차로 통행 위반 차량 및	

주·정차 위반 차량 단속 업무 4. 단속 관련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에 관한 사항 5.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이용한 단속 및 운용요원 관리 6. 무인단속시스템 구축 및 운영 7. 개인 휴대용 정보단말기 운영, 주·정차위반 관제시스템 구축 8. 사업용차량 단속, 지도점검 및 자치구 지도·감독 9. 교통불편민원에 대한 조사·단속 등 처리 10. 전용차로위반 단속, 지도점검 및 자치구 지도·감독 11. 전용차로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12.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단속 및 과태료 부과·징수	
제15조(문화본부에 두는 과) ① 문화본부에 문화정책과·문화예술과·문화재정책과·문화재관리과·박물관과·문화시설과	제15조(문화본부) ① ---------- --------- 문화정책과·문화예술과·문화유산보존과·문화유산활용과·박물관과·문화시설

를 둔다.	과----.
② 문화본부장은 지방이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문화정책과장·문화예술과장·문화재정책과장·문화재관리과장·박물관과장·문화시설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각각 보한다.	② ---------- 문화정책과장·문화예술과장·문화유산보존과장·문화유산활용과장·박물관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문화시설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
③ 문화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③ ----------.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10. 문화시민도시정책위원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0. 서울시문화도시위원회 ----------
11. ~ 15. (생 략)	11. ~ 15.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문화재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⑤ 문화유산보존과장----------.
1. 역사 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을 위한 기본정책 수립 및 시행	1. ---------- 보존----------
2. 무형문화재 보유자의 발굴·지정·보호·육성에 관한 사항	2. 무형유산 ----------
3. 서울시 문화재위원회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3. ---- 국가유산위원회 ----------
4. 문화재 관련 비영리법인·단	4. 국가유산 ----------

체에 관한 사항	----------
5. 문화재 지정 및 해제·현상변경에 관한 사항	5. 국가유산 ----------
6. 매장문화재 지표·발굴조사 및 보존조치에 관한 사항	6. 매장유산 ----------
7. 문화재주변 건축물 심의, 문화재 보호구역 내 발굴 허가 및 지도·감독	7. 국가유산주변 ------- 국가유산 보호구역 ----------
8.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 표석 설치에 관한 사항	8. ---------- 국가유산 및 표석----------
9. (생 략)	9. (현행과 같음)
10. 문화재매매업 및 문화재사범에 관한 사항	10. 국가유산매매업 및 국가유산사범------
11. 등록문화재 추진에 관한 사항	11. 등록문화유산 ----------
<신 설>	12. 서울미래유산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
12. 문화재 보수·복원정비 설계 및 시공관리, 문화재보수 등 관련단체 지도·감독	13. 국가유산 보수 ---------- 국가유산보수 ----------
<신 설>	14. 국가유산 안전관리 총괄 및 국가유산 수리업 등의 등록에 관한 사항
13.·14. (생 략)	16.·17. (현행 제13호 및 제14호와 같음)

15. 한성백제박물관 운영의 지도·감독	15. 국가유산 관리에 관한 기술지도 및 보급·선양에 관한 사항
16. (생 략)	18. (현행 제16호와 같음)
⑥ 문화재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⑥ 문화유산활용과장---------.
1. 문화재 관리계획 수립 및 문화재 안전관리 총괄	1. 역사 문화유산의 활용을 위한 기본정책 수립 및 시행
2. 문화재관리에 관한 기술지도 및 보급 선양에 관한 사항	2. 국가유산 복원정비 설계 및 시공관리, 활용에 관한 사항
3. 문화재 수리업 등의 등록에 관한 사항	<삭 제>
<신 설>	12. 한성백제박물관 운영의 지도·감독
4. ~ 12. (생 략)	3. ~ 11. (현행 제4호부터 제12호까지와 같음)
⑦ 박물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⑦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박물정책심의위원회·미술관정책심의위원회 운영	8. 박물관정책심의위원회·미술관정책심의위원회 ----------
⑧ (생 략)	⑧ (현행과 같음)
제17조의2(시민건강국에 두는 과) ① 시민건강국에 보건의료정책과·스마트건강과·정신건강과	제17조의2(시민건강국) ① ---------- 보건의료정책과·스마트건강과·건강관리과

·감염병관리과·식품정책과·감염병연구센터·공공의료추진단을 둔다.	·정신건강과·감염병관리과·식품정책과·공공의료과를 ----------.
② 시민건강국장은 지방이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 보건연구관으로, 보건의료정책과장·스마트건강과장·정신건강과장·감염병관리과장·식품정책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감염병연구센터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공공의료추진단장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각각 보한다.	② ---------- --- 보건의료정책과장·스마트건강과장·건강관리과장·정신건강과장·감염병관리과장·식품정책과장·공공의료과장---------- 지방기술서기관---------- ----------.
③ 제2항의 감염병연구센터장은 개방형직위로서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③ 보건의료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보건의료행정계획의 총괄·조정 2. 자치구 보건소의 육성·지원 3. 응급의료에 관한 사항 4. 재난응급의료 대응 및 대비 업무에 관한 사항 5. 보건·의료 복지 관련 법인 및 단체에 관한 사항 6. 의료행정에 관한 사항 7. 약무행정에 관한 사항 8.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

	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사항
	9. 병상 수급관리 및 병상 확보에 관한 사항
	10. 외국인 환자 유치기관 등록에 관한 사항
	11. 보건·의료 복지 관련 법인 및 단체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시민의 보건, 의료 증진에 관한 사항
④ 보건의료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스마트건강과장----------.
1. 지역보건의료행정계획의 총괄·조정	<삭 제>
2. 자치구 보건소의 육성·지원	2. 서울형 헬스케어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신 설>	3. 서울형 헬스케어 플랫폼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어르신건강 증진 정책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1. 서울형 헬스케어 ----------
4. 어르신에 대한 사전 예방적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4. 서울형 헬스케어 플랫폼 고도화에 관한 사항
5. 어르신 등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5. 서울형 헬스케어 데이터 관리에 관한 사항
6. 방문건강관리 전문인력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6. 서울형 헬스케어 사업 평가 분석에 관한 사항

7. 응급의료에 관한 사항	7. 서울형 헬스케어 국내·외 유관기관 협력------
8. 보건·의료 복지 관련 법인 및 단체에 관한 사항	<삭 제>
9. 의료행정에 관한 사항	<삭 제>
10. 약무행정에 관한 사항	<삭 제>
11.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사항	<삭 제>
12. 병상 수급관리 및 병상 확보에 관한 사항	<삭 제>
⑤ 스마트건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⑤ 건강관리과장----------.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서울형 헬스케어 추진에 관한 사항	7. 임신 및 난임 등----------
8. 서울형 헬스케어 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	8. 어르신건강 증진 정책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9. 서울형 헬스케어 사업 평가 분석에 관한 사항	9. 어르신에 대한 사전 예방적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신 설>	10. 어르신 등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신 설>	11. 방문건강관리 전문인력 역량강화에 관한 사항
10. (생 략)	12. (현행 제10호와 같음)
⑥ 정신건강과장은 다음 사항을	⑥ ----------

분장한다.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2. 정신건강사업 종합 진단·평가에 관한 사항
2. (생 략)	3. (현행 제2호와 같음)
<신 설>	4.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사업에 관한 사항
<신 설>	5. 정신건강증진시설에 관한 사항
3. ~ 8. (생 략)	6. ~ 11. (현행 제3호부터 제8호까지와 같음)
<신 설>	12. 실종노인의 발생 예방 및 배회감지기 보급에 관한 사항
⑦ 감염병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⑦ ----------.
1. ~ 14. (생 략)	1. ~ 14. (현행과 같음)
<신 설>	15. 감염병 정책 연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신 설>	16. 감염병 정책 관련 국제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신 설>	17. 감염병 정보 분석 및 동향 파악에 관한 사항
<신 설>	18. 감염병 관련 데이터 관리 및 자료집 발행에 관한 사항
<신 설>	19. 감염병 환자치료 및 임상시험 지원에 관한 사항

<신 설>	20. 의료자원 분석 및 의료인력 교육에 관한 사항
⑨ (생 략)	⑧ (현행 제9항과 같음)
⑩ 감염병연구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삭 제>
1. 감염병 정책 연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감염병 정책 관련 국제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감염병 정보 분석 및 동향 파악에 관한 사항	
4. 감염병 관련 데이터 관리 및 자료집 발행에 관한 사항	
5. 감염병 환자치료 및 임상시험 지원에 관한 사항	
6. 의료자원 분석 및 의료인력 교육에 관한 사항	
⑪ 공공의료추진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⑨ 공공의료과장----------.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제17조의3(행정국에 두는 과) ① ~ ⑤ (생 략)	제17조의5(행정국)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인력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⑥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의무실·치과운영에 관한 사	6. 부속의원 운영----------

항	--
7. ~ 15. (생 략)	7. ~ 15. (현행과 같음)
⑦·⑧ (생 략)	⑦·⑧ (현행과 같음)
⑨ 대외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⑨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등 광역자치단체 간 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	2.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
3. ~ 7. (생 략)	3. ~ 7. (현행과 같음)
⑩ (생 략)	⑩ (현행과 같음)
제17조의4(재무국에 두는 과) ① ~ ④ (생 략)	제17조의6(재무국)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계약심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⑤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원가관리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삭 제>
5. ~ 8. (생 략)	4. ~ 7. (현행 제5호부터 제8호까지와 같음)
⑥ 세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⑥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지방세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처리에 관한 사항	8. ---- 이의신청 ----------
9. ~ 14. (생 략)	9. ~ 14. (현행과 같음)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⑧ 38세금징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⑧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불납 결손처분된 조세채권 징수 및 관리	3. 정리보류된 ----------
4. ~ 7. (생 략)	4. ~ 7.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7조의7(민생사법경찰국) ① 민생사법경찰국에 경제수사과·안전수사과를 둔다.
	②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경제수사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안전수사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각각 보한다.
	③ 경제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특별사법경찰 지명직무에 따른 방문판매, 대부, 부동산, 상표 범죄(이하 “경제분야”라 한다) 수사계획 수립
	2. 경제분야 수사 및 송치에 관한 사항
	3. 특별사법경찰 직무교육 등 역량강화에 관한 사항
	4. 자치구 특별사법경찰 운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특별사법경찰 운영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특별사법경찰 운영 관련 유관기관 협력에 관한 사항 7. 수사 관련 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④ 안전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특별사법경찰 지명직무에 따른 공중위생, 동물보호, 청소년, 사회복지, 식품 위생·원산지 표시, 환경, 의약범죄(이하 “안전분야”라 한다) 수사계획 수립 2. 안전분야 수사 및 송치에 관한 사항 3. 안전분야 수사 특화교육 등 수사관 역량강화에 관한 사항 4. 안전분야 수사 유관기관 협력에 관한 사항
제18조(미래공간기획관) ①·② (생 략) ③ 미래공간기획관 밑에 미래공간기획담당관, 공공개발기획담당관, 공공개발사업담당관을 두	제18조(미래공간기획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미래공간담당관, 공공개발담당관, 용산입체도시담당관, 도시활력담

고, 미래공간기획담당관·공공개발기획담당관·공공개발사업담당관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당관을 두고, 미래공간담당관·도시활력담당관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공공개발담당관·용산입체도시담당관---.
<신 설>	④ 제3항의 도시활력담당관은 개방형직위로서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④ 미래공간기획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⑦ 용산입체도시담당관----------.
1. 건축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계획 수립 및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2. 공공건축가 선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용산국제업무지구 사업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등에 관한 사항
3. 공공건축 기획, 사전검토, 심의 등 공공건축 품질향상에 관한 사항	3. 용산국제업무지구 기반시설 복합화 및 공공시설 조성에 관한 사항
4. 공간환경사업 기획 및 발전에 관한 사항	4. 용산국제업무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5. 총괄건축가(민간전문가)의 서울시 공간환경사업(공공건축, 도시계획, 조경 등) 조정·자문 활동 등 지원에 관한 사	5. 용산국제업무지구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

항	
6. 공공건축 설계공모에 관한 사항	6. 용산국제업무지구 토지분양 및 보상----------
<신 설>	7. 용산전자상가 도시재생활성화사업 및 도시재생혁신지구 사업에 관한 사항
<신 설>	8. 용산 게이트웨이 조성에 관한 사항
<신 설>	9. 용산공원 조성 및 시민소통에 관한 사항
⑤ 공공개발기획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⑤ 미래공간담당관----------.
1. 공공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 건축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도시계획·도시개발사업 공공성 확보 및 공공지원방안에 관한 사항	2. 공공건축가 선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대규모 민간부지 도시계획적 활용방안 수립·검토에 관한 사항	3. 공공건축 기획, 사전검토, 심의 등 공공건축 품질향상에 관한 사항
<신 설>	4. 공간환경사업 기획 및 발전에 관한 사항
4. 사전협상제도 운영·관리 및 사전협상 추진에 관한 사항	8. 도시·건축디자인혁신 제도--- 사업 추진----------
5. 기반시설 입체복합 활용에	5. 총괄건축가(민간전문가)의

관한 사항	서울시 공간환경사업(공공건축, 도시계획, 조경 등) 조정·자문 활동 등 지원에 관한 사항
6. 지역거점 활용구상 및 선제적 전략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6. 공공건축 설계공모에 관한 사항
7. 저이용, 낙후 도시계획시설의 활용방안에 관한 사항	7. 건축서비스산업의 발전 기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사항
<신 설>	9. 노들 글로벌 예술섬 조성에 관한 사항
⑥ 공공개발사업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⑥ 공공개발담당관----------.
1.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에 관한 사항	1. 공공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용산공원 조성 및 시민소통에 관한 사항	2. 도시계획·도시개발사업 공공성 확보 및 공공지원방안에 관한 사항
<신 설>	3. 대규모 민간부지 도시계획적 활용방안 수립·검토에 관한 사항
3. (생 략)	8. (현행 제3호와 같음)
<신 설>	9. 주요 토지자원을 활용한 민관협력, 민자사업 발굴 및 기획·실행에 관한 사항
<신 설>	10. 주요 공공토지 및 건축물의

	활용방안에 관한 사항
<신 설>	11. 주요 자산 매입 등 취득 결정에 관한 사항
<신 설>	12. 공공 토지자원의 종합적 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문화시설 조성, 공영차고지 고도화 등 공공 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4. 사전협상제도 운영·관리 및 사전협상 추진에 관한 사항
<신 설>	5. 기반시설 입체복합 활용에 관한 사항
<신 설>	6. 지역거점 활용구상 및 선제적 전략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신 설>	7. 저이용, 낙후 도시계획시설의 활용방안에 관한 사항
<신 설>	13. 공유재산 위탁개발에 관한 사항
<신 설>	⑧ 도시활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시활력을 위한 주요거점 종합전략 수립 및 총괄 조정
	2. 도시활력을 위한 신규사업 발굴·기획 및 실행
	3. 도시활력을 위한 거점 공간 조성 및 활력 콘텐츠 구상

	4. 상암 일대 활성화를 위한 종합전략 수립 및 실행에 관한 사항
제18조의2(디자인정책관) ① 디자인정책관에 디자인정책담당관·디자인산업담당관·도시경관담당관을 둔다.	제18조의2(디자인정책관) ① 디자인정책관은 지방이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 디자인정책관은 지방이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디자인정책담당관·디자인산업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도시경관담당관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디자인정책관은 디자인진흥정책, 디자인산업, 도시경관계획 및 도시빛정책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 행정(2)부시장을 보좌한다.
<신 설>	③ 디자인정책관 밑에 디자인정책담당관·디자인산업담당관·도시경관담당관을 두고, 디자인정책담당관·디자인산업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도시경관담당관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제2항의 디자인정책관은 개방형직위로서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디자인정책관---------- 제1항의 규정----------.
④ ~ ⑥ (생 략)	⑤ ~ ⑦ (현행 제4항부터 제6항까지와 같음)

제19조(기술심사담당관) ① 기술심사담당관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제19조(건설기술정책관) ① 건설기술정책관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 기술심사담당관은 건설기술 업무에 관하여 행정(2)부시장을 보좌한다.	② 건설기술정책관은 건설정책, 건설기술, 건설업, 건축물 안전관리 사무----------
<신 설>	③ 건설기술정책관 밑에 기술심사담당관·건설혁신담당관·지역건축안전센터를 두고, 기술심사담당관·건설혁신담당관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지역건축안전센터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기술심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
<신 설>	1. 건설정책 수립·총괄 조정
1. ~ 6. (생 략)	2. ~ 7. (현행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같음)
7. 건설사업 관리 감독제도에 관한 운영·지도	8. 건설사업관리 ----------
8. (생 략)	9. (현행 제8호와 같음)
9. 하자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하자관리 지원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삭 제>
10. 건설부실 근절대책 총괄(공	<삭 제>

공·민간)	
11. (생 략)	10. (현행 제11호와 같음)
12. 건설기술정보통합전산망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연구	<삭 제>
<신 설>	18. 불법·부조리 하도급관련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지도감독
13. ~ 18. (생 략)	11. ~ 16. (현행 제13호부터 제18호까지와 같음)
18. 설계심의 이행관리 자문에 관한 사항	16. ---------- 확인----------
19. 건설기술용역업 등록, 변경등록, 휴업·폐업 신고	17. 건설엔지니어링업 ----------
20. 불법·부조리 하도급 관련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지도감독	<삭 제>
21. 건설기술용역업자 업무정지, 과태료 부과	19.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
22.·23. (생 략)	20.·21. (현행 제22호 및 제23호와 같음)
24. 설계 경제성 검토에 관한 사항	22. 설계경제성 ----------
<신 설>	⑤ 건설혁신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건설업분야 주요계획 수립, 법령 및 제도개선

	2. 건설 혁신대책 총괄 3. 건설혁신 정책포럼 서울 운영 4. 불법·부조리 하도급 관련 건설업체 지도감독 5. 하도급 부조리 근절 종합대책 수립 및 제도개선 6. 하도급 관련 법령 및 조례에 관한 사항 7. 하도급 관련 업무지침 작성 및 시행 8. 하도급 개선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9. 하도급 실태 정기점검 및 조치 10. 건설공사대금지급시스템 사용지원 및 모니터링 11. 건설기계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2. 긴급복구, 건설업체·장비 동원 등 충무계획 수립 운영 13. 종합건설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4. 전문건설업 등록 및 관리업무의 지도·감독 15. 하자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하자관리 지원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16. 공공·민간 건설부실 근절 대책 총괄
<신 설>	⑥ 지역건축안전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민간건축물의 안전에 관한 조사연구와 분석 및 건축물 부문의 안전관리에 대한 정책 개발 2. 주택·건축분야의 안전업무 및 민간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종합계획 수립 3. 건축물 안전 관련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건축행정(건축허가·신고, 착공신고, 사용승인) 수행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보고·확인·검토·심사 및 점검 5. 지진·화재 등 민간건축물 부문 재난대비 안전대책 수립 6. 기존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 보강 지원에 관한 사항 7. 임의관리대상 건축물의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8. 소규모 노후건축물 등 보수·보강 지원에 관한 사항 9. 안전취약 건축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0. 민간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1. 건축물관리법 및 조례 운용에 관한 사항 12. 해체공사장 안전관리 정책개발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13. 건축물 관리점검기관 및 해체공사 감리자 모집·등재·관리 등에 대한 사항 14. 건축물 안전관리 관련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 15. 자치구 건축안전센터 기술 및 제도 지원
제20조(재난안전관리실에 두는 과) ① 재난안전관리실에 안전총괄관·재난안전정책과·재난상황관리과·재난안전예방과·중대재해예방과·건설혁신과·도로계획과·도로관리과·도로시설과·교량안전과를 둔다. ② 재난안전관리실장은 지방관	제20조(재난안전실) ① 재난안전실에 재난안전기획관·도로기획관·재난안전정책과·재난상황관리과·재난안전예방과·중대재해예방과·도로계획과·도로관리과·보행환경개선과·도로시설과·교량안전과를 둔다. ② 재난안전실장----------

리관 또는 지방이사관으로, 안전총괄관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재난안전정책과장·재난안전예방과장·중대재해예방과장·건설혁신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도로계획과장·도로관리과장·도로시설과장·교량안전과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재난상황관리과장은 소방정으로 보한다.	---------- 재난안전기획관·도로기획관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재난안전정책과장·재난안전예방과장·중대재해예방과장---------- ---------- 도로계획과장·도로관리과장·보행환경개선과장·도로시설과장·교량안전과장---------- ----------.
③ 안전총괄관은 도시안전관리의 기획, 재난 및 중대재해 대응, 시설안전, 건설정책, 도로계획, 도로관리, 도로시설관리, 교량관리 등에 관하여 재난안전관리실장을 보좌한다.	③ 재난안전기획관---------- ---------- -- 시설안전 ---------- ---------- ---------- 재난안전실장을 보좌한다.
<신 설>	④ 도로기획관은 제9항부터 제13항까지의 사무를 분장한다.
④ 재난안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⑤ ---------- ----------.
1. 안전관리계획 수립 등 안전관리업무의 총괄 및 조정	1. 안전관리업무---------- ----------
2. ~ 18. (생 략)	2. ~ 18. (현행과 같음)
⑤ (생 략)	⑥ (현행 제5항과 같음)
⑥ 재난안전예방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⑦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2.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점검·관리에 관한 사항
2. ~ 11. (생 략)	3. ~ 12. (현행 제2호부터 제11호까지와 같음)
⑦ (생 략)	⑧ (현행 제7항과 같음)
⑧ 건설혁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삭 제>
1. 건설분야 주요계획 수립, 법령 및 제도개선	
2. 건설업 혁신대책(3불대책) 총괄	
3. 총괄 건설정책자문단 운영	
4. 불법·부조리 하도급 관련 건설업체 지도감독	
5. 하도급 부조리 근절 종합대책 수립 및 제도개선	
6. 하도급 관련 법령 및 조례에 관한 사항	
7. 하도급 관련 업무지침 작성 및 시행	
8. 하도급 개선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9. 하도급 실태 정기점검 및 조치	
10. 건설공사대금지급시스템 사	

용지원 및 모니터링	
11. 건설기계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2. 긴급복구, 건설업체·장비 동원 등 충무계획 수립 운영	
13. 일반건설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4. 전문건설업 등록 및 관리업무의 지도·감독	
15. 삭제	
16. 삭제	
17. 삭제	
⑨ (생 략)	⑨ (현행과 같음)
⑩ 도로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⑩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도로유지관리 예산편성 및 심사분석에 관한 사항	<삭 제>
5.·6. (생 략)	4.·5. (현행 제5호 및 제6호와 같음)
7.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관리에 관한 조례 운영	<삭 제>
8. (생 략)	6. (현행 제8호와 같음)
9. 도로부속물(방음벽, 방호울타리, 중앙분리대 등)에 관한 유지관리	<삭 제>

10. 도로사면 안전관리 계획 수립 및 안전점검	<삭 제>
<신 설>	16. 노면표시 정비계획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1. ~ 19. (생 략)	7. ~ 15. (현행 제11호부터 제19호까지와 같음)
<신 설>	21. 지하안전평가 이행 실태점검에 관한 사항
20.·21. (생 략)	17.·18. (현행 제20호 및 제21호와 같음)
22. 지하안전영향평가 및 전문기관 등록·관리에 관한 사항	19. 지하안전평가 ----------
23.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운영	<삭 제>
24. (생 략)	20. (현행 제24호와 같음)
25. 지하시설물·지하개발사업 현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삭 제>
26. ~ 28. (생 략)	22. ~ 24. (현행 제26호부터 제28호까지와 같음)
29. 보도블록 10계명 시행 및 관리	<삭 제>
30. 보도정비, 보도블록 관리	<삭 제>
31. 보도 순찰 및 점검	<삭 제>
32. 친환경 보도환경 조성 및 보도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삭 제>
33. 보도공사 실명제 등 각종제	<삭 제>

도 시행 및 관리	
34. 거리모니터링단 운영 및 관리	<삭 제>
35.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에 관한 사항	<삭 제>
36. 보도상 불법행위 단속 및 보도상 영업시설물 지도·감독	<삭 제>
<신 설>	⑪ 보행환경개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도유지관리 계획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보도유지관리에 대한 중기투자 재정계획 수립 조정에 관한 사항 3. 보도포장 관련 지침, 제도개선 연구 4. 보도포장 전문기술교육에 관한 사항 5. 보도공사 실명제 등 각종제도 시행 및 관리 6. 보도정비, 보도블록 관리 7. 친환경 보도환경 조성 및 유지관리 8. 보도공사 설계 및 현장 지도점검 9. 자치구 위임 보도관리에 관

	한 사항 10. 보도포장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 11. 거리모니터링단 운영 및 관리 12. 가공배전선로 지중화 및 공중케이블 정비에 관한 사항 13.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에 관한 사항 14. 보도상 불법행위 단속 및 보도상 영업시설물 지도·감독 15. 도로부속물(방음벽, 방호울타리, 중앙분리대 등)에 관한 유지관리 16. 도로사면 안전관리 계획 수립 및 안전점검
⑪ (생 략)	⑫ (현행 제11항과 같음)
⑫ 교량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⑬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교량에서의 안전사고 및 투신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안전난간 등)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 6. (생 략)	5. ~ 7. (현행 제4호부터 제6호까지와 같음)

제20조의2(주택정책실에 두는 과) ① 주택정책실에 주택공급기획관·주택정책과·전략주택공급과·공공주택과·공동주택지원과·주거정비과·주택정책지원센터·건축기획과·재정비촉진사업과·주거환경개선과·지역건축안전센터·한옥정책과를 둔다.	제20조의2(주택실) ① 주택실에 주택정책관·건축기획관·주택정책과·임대주택과·주택정책지원센터·공공주택과·주거환경개선과·건축기획과·전략주택공급과·공동주택과·주거정비과·재정비촉진과·한옥건축자산과를 둔다.
② 주택정책실장은 지방관리관 또는 지방이사관으로, 주택공급기획관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주택정책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공공주택과장·공동주택지원과장·주거정비과장·건축기획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전략주택공급과장·주택정책지원센터장·재정비촉진사업과장·주거환경개선과장·지역건축안전센터장·한옥정책과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주택실장은 지방관리관 또는 지방이사관으로, 주택정책관·건축기획관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주택정책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임대주택과장·공공주택과장·건축기획과장·공동주택과장·주거정비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주택정책지원센터장·주거환경개선과장·전략주택공급과장·재정비촉진과장·한옥건축자산과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제2항의 주택정책실장 및 주택정책지원센터장은 개방형직위로서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	③ ----- 주택실장 ----------

할 수 있다.	--------.
④ 주택공급기획관은 주거복지정책, 임대주택 공급 및 관리,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등에 관하여 주택정책실장을 보좌한다.	④ 주택정책관은 제5항에서 제9항까지의 사무를, 건축기획관은 제10항에서 제15항까지의 사무를 분장한다.
⑤ 주택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⑤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삭 제>
8. ~ 11. (생 략)	7. ~ 10. (현행 제8호부터 제11호까지와 같음)
12. 민간임대주택 공급 활성화에 관한 사항	<삭 제>
13. 공공임대주택관리 종합개선대책에 관한 사항	<삭 제>
14. 공공임대주택 관리 총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삭 제>
15. 다가구·원룸 매입 공공임대 총괄에 관한 사항	<삭 제>
16. (생 략)	11. (현행 제16호와 같음)
17. 사회주택·공동체주택 공급에 관한 사항	<삭 제>
18. (생 략)	12. (현행 제18호와 같음)
⑥ 전략주택공급과장은 다음 사	⑥ 임대주택과장----------

항을 분장한다.	----------.
1.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계획 수립 및 지원·활성화에 관한 사항	1. 공공임대주택 혁신방안 ---------- 제도개선----------
2.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통합심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2.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3.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 법령 및 조례 제정·운영 등에 관한 사항	3. 민간임대주택 공급 활성화에 관한 사항
<신 설>	4. 재건축·재개발·재정비촉진·민영주택건설사업·소규모주택정비사업·민영주택건설사업 등으로 건립되는 공공임대주택 매입·귀속 및 공급에 관한 사항
4. 민간토지 활용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관한 사항	5. 임차형 ----------
5.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의 운용에 관한 사항	<삭 제>
6.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 기준에 관한 사항	6. 다가구·원룸 공공임대주택 매입·귀속 및 공급에 관한 사항
7.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관리 및 입주지원,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7. 공공임대주택 관리 종합개선대책에 관한 사항

8. 역세권청년주택 매입에 관한 사항(공공기여·SH공사 선·후 매입)	8. 공공임대주택 관리 총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9. 역세권 청년주택 임차인 주거비 지원에 관한 사항	9. 사회주택·공동체주택 공급에 관한 사항
10. 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삭 제>
11. 역세권 청년주택 운영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삭 제>
⑦ 공공주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⑦ 주택정책지원센터장----------.
1. 공공임대주택, 공공분양주택 공급 총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1. 주택정책 개발 및 연구 수행에 관한 사항
2. 공공주택 공급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주택수요 및 공급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3. 공공임대주택, 공공분양주택 중장기 수급에 관한 사항	3. 주택·건축관련 정책 수립 및 추진 지원에 관한 사항
4. 공공임대주택, 공공분양주택 개발·공급에 관한 사항	4. 주택시장 동향분석·시장 안정대책 및 연구에 관한 사항
5. 공공주택 특별법령 및 조례에 관한 사항	5. 주택통계, 주거실태조사 및 주거지표에 관한 사항
6. 공공주택 통합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6. 준주택, 비아파트 등 공급관리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7. 공공주택 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7. 주택청약, 특별공급 등 주택배분체계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8. 공공임대주택·공공분양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	8. 건축행정시스템 및 제반건축주택정보시스템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9. 재건축·재개발·재정비촉진·민영주택건설사업 등으로 건립되는 공공임대주택 매입·귀속 및 공급에 관한 사항	9. 정비사업 시기조정에 관한 사항
10. 임차형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관한 사항	10. 주택시장 모니터링단 운영에 관한 사항
11. 타 공공기관에 의한 공공임대주택, 공공분양주택 건설사업(승인, 협의)에 관한 사항	<삭 제>
12. 공공주택지구 지정, 공공주택 지구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삭 제>
13. 택지개발사업·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등 공공주택 공급을 위한 계획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삭 제>
14. 공공주택·택지개발지구 내 용지·택지 매각·공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삭 제>
15.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에 관한 사항	<삭 제>
16. 공공임대주택 재건축 등에	<삭 제>

관한 사항	
17. 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건립에 관한 사항	<삭 제>
18. 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사업관리와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삭 제>
19.「주택법」에 의한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관한 사항	<삭 제>
⑧ 공동주택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⑧ 공공주택과장----------.
1. 공동주택 수요공급 및 관리계획 수립 시행	1. 공공주택 공급 총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아파트 지구 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2. 공공주택 공급 기본계획 수립----
3. 공동주택 재건축 기본계획 수립	3. 공공주택 중장기 수급에 관한 사항
4. 공동주택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재건축사업에 관한 사항	4. 공공주택 개발·공급에 관한 사항
5. 공동주택 시유지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5. 공공주택 특별법령 및 조례에 관한 사항
6.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한 공동주택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공공주택 통합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7.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 관한 사항	7. 공공주택 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8.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단 및 공동주택상담실 운영	8. 공공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
9.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계획수립 및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9. 타 공공기관에 의한 공공주택 건설사업(승인, 협의)에 관한 사항
10. 시범·시민아파트 관리 및 정리에 관한 사항	10. 공공주택지구 지정, 공공주택 지구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11.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운용에 관한 사항	11. 택지개발사업·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등 공공주택 공급을 위한 계획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12.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에 관한 사항	12. 공공주택·택지개발지구 내 용지·택지 매각·공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3. 공동주택 감사에 관한 사항	13.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에 관한 사항
14.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자치구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	14. 공공임대주택 단지 재건축 등에 관한 사항
15.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사항	15. 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관리에 관한 사항
16. 민영주택 품질점검단 운영에 관한 사항	16. 역세권 주택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17. 소규모재건축에 관한 사항	17. 「주택법」에 의한 지역주

	택조합 사업에 관한 사항
18. 공동주택 행위허가에 관한 사항	<삭 제>
19.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에 관한 사항	<삭 제>
20. 재건축 안전진단에 관한 사항	<삭 제>
21. 공동주택 관리사업 자치구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	<삭 제>
22.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 및 전자결재시스템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삭 제>
23.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결정에 관한 사항	<삭 제>
⑨ 주거정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⑨ 주거환경개선과장----------.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 및 조례에 관한 사항	1. 저층주거지 주거환경개선 및 재생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부문) 수립 및 정비에 관한 사항	2. 주거환경개선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공공재개발 포함)의 구역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별 정비계획 수립 및 사업추진 등에 관한 사항
4. 공공정비계획수립 지원에 관	4. 주거환경개선사업 거점시설

한 사항	확충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재개발 관리대책에 관한 사항	5. 성곽마을 보전·관리 종합계획 수립 및 권역별 사업추진 등에 관한 사항
6. 정비구역 직권해제 계획수립·실행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파견 계획 수립·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7. 빈집 관련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8. 공공지원 추진위원회 구성 및 조합설립 지원 제도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8. 빈집 매입 및 정비에 관한 사항
9. 공공지원 정비사업 표준 선거관리규정 및 공공지원 추진위원회 구성 선거관리기준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9. 저층주거지 재생사업 모델 개발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0. 공공지원 시공자·설계자·정비업체·공동시행 건설업자 선정기준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10. 주거지보전사업에 관한 사항
11. 공공지원 정비사업 예산·회계규정, 표준 행정업무규정, 조합설립지원을 위한 업무기준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11. 주거재생지역 내 생활편의시설 확충에 관한 사항
12. 조합운영 실태점검 계획수립·실행 및 개선에 관한 사	12. 도시재생뉴딜사업(근린재생일반형·주거지지원형·우리

항	동네살리기)에 관한 사항
13. 조합설립추진위원회·조합에 대한 정비사업 융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13. 서울형 도시재생사업(근린재생일반형) 선정, 활성화계획 수립 등 추진에 관한 사항
14. 정비사업 종합정보관리시스템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14. 휴먼타운 및 뉴빌리지 사업에 관한 사항
15. 정비사업 관련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 운영에 관한 사항	15. 도시재생지원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16. 정비사업 관련 통계에 관한 사항	<삭 제>
17.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사용비용 보조에 관한 사항	<삭 제>
18.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구역 내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삭 제>
19. 주택사업특별회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계정 운용 및 시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삭 제>
20.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삭 제>
21. 민간·공공재개발 공모 및 선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삭 제>
22. 공공정비사업 통합심의에 관한 사항	<삭 제>
23. 정비사업 실태조사 및 모니	<삭 제>

터링에 관한 사항	
24. 정비사업 강제철거 예방대책 추진에 관한 사항	<삭 제>
⑩ 주택정책지원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⑩ 건축기획과장----------.
1. 주택수요 및 공급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1. 건축 정책 및 행정의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
2. 주택·건축관련 정책 수립 및 추진 지원에 관한 사항	2. 건축 관련 법령 및 조례의 운용에 관한 사항
3. 주택시장 동향분석·안정대책 및 연구에 관한 사항	3. 건축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주택통계, 주거실태조사 및 주거지표에 관한 사항	4. 「건축사법」 운용 및 건축사 관리에 관한 사항
5. 특별공급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건축사징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건축행정시스템 및 제반건축주택정보시스템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6. 건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정비사업 시기조정에 관한 사항	7. 건축행정(건축허가, 사용승인 및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
8. 주택시장 모니터링단 운영에 관한 사항	8. 건축민원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신 설>	9. 건축물 기계·전기설비 및 승강기 관리 등에 관한 사항
<신 설>	10. 녹색건축물 조정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신 설>	11. 건축물 에너지소비총량 관리에 관한 사항
<신 설>	12.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기준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신 설>	13. 무허가 및 위법건물의 단속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신 설>	14. 건축행정관리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신 설>	15. 건축물 생애관리 및 공적공간 관리에 관한 사항
<신 설>	16. 건축물의 건축계획 및 교통영향분석, 경관 등 통합심의에 관한 사항
<신 설>	17. 공공임대 사업승인에 따른 평면계획 등 건축계획 심의 또는 자문에 관한 사항
<신 설>	18.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신 설>	19. 경관법령에 의한 공공건축물 경관심의에 관한 사항
<신 설>	20. 초고층건축물 등 서울시 허가대상 건축물의 인허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신 설>	21. 「건축법」 제25조에 따른 허가권자 지정 감리자 및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업무대행 건축사 선발과 운영에 관한 사항
<신 설>	22.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계획 수립 및 조례의 운용에 관한 사항
<신 설>	23. 집합건물 관리 체계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신 설>	24. 민간건축물 설계시공 품질 관리 강화 및 감리의 독립성 확보에 관한 사항
⑪ 건축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⑪ 전략주택공급과장----------.
1. 건축 정책 및 행정의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	<삭 제>
2. 건축 관련 법령(건축법, 건축기본법 등) 및 조례의 운용에 관한 사항	2. 소규모주택정비사업(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3. 건축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 지침 마련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건축사법」 운용 및 건축	4.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승

사 관리에 관한 사항	인·고시에 관한 사항
5. 건축사징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공공지원에 관한 사항
6. 건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소규모주택정비 사업 현장지원단 운영에 관한 사항
7. 건축행정(건축허가, 사용승인 및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	7.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통합심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신 설>	8.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 법령 및 조례 제정·운영 등에 관한 사항
8. 건축민원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 모아주택·모아타운 정책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 건축물 기계·전기설비 및 승강기 관리 등에 관한 사항	9. 민간토지 활용 공공주택 공급에 관한 사항
10. 녹색건축물 조정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10. 서울형 민간 임대형기숙사 사업관리 및 입주지원,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11. 건축물 에너지소비총량 관리에 관한 사항	11. 임대형기숙사 건립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의 운용에 관한 사항
12.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기준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12. 청년안심주택 및 어르신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의 운용에 관한 사항
13. 무허가 및 위법건물의 단속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3. 청년안심주택 및 어르신안심주택 건립 및 운영 기준에

	관한 사항
14. 건축행정관리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14. 청년안심주택 및 어르신안심주택 사업관리 및 입주지원,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15. 건축물 생애관리 및 공적공간 관리에 관한 사항	15. 청년안심주택 및 어르신안심주택 매입에 관한 사항(공공기여·SH공사 선·후 매입)
16. 건축물의 건축계획 및 교통영향분석, 경관 등 통합심의에 관한 사항	16. 청년안심주택 및 어르신안심주택 임차인 주거비 지원에 관한 사항
17. 공공임대 사업승인에 따른 평면계획 등 건축계획 심의 또는 자문에 관한 사항	17.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18. 서울건축문화제(건축상)에 관한 사항	18.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운영자문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19.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삭 제>
20. 경관법령에 의한 공공건축물 경관심의에 관한 사항	<삭 제>
21. 초고층건축물 등 서울시 허가대상 건축물의 인허가 및	<삭 제>

관리에 관한 사항	
22. 「건축법」 제25조에 따른 허가권자 지정 감리자 및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업무대행 건축사 선발과 운영에 관한 사항	<삭 제>
23.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계획 수립 및 조례의 운용에 관한 사항	<삭 제>
24. 집합건물 관리 체계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삭 제>
25. 건축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	<삭 제>
26.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추진에 관한 사항	<삭 제>
27. 서울 도시건축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삭 제>
⑫ 재정비촉진사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⑫ 공동주택과장----------.
1. 재정비촉진사업 종합(지구)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 공동주택 수요공급 및 관리계획 수립 시행
2.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및 재정비촉진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	2. 아파트 지구 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3. 재정비촉진지구(구역) 및 단독주택재건축 구역 지정·해제 등에 관한 사항	3. 공동주택 재건축 기본계획 수립

4. 도시재정비위원회 및 소위원회, 시·구합동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공동주택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재건축사업에 관한 사항
5.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령·조례 운영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공동주택 시유지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6. 주택사업특별회계 재정비촉진사업 계정 운영에 관한 사항	6.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한 공동주택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재정비촉진지구 기반시설확보·부담기준 및 설치비용 지원기준 등에 관한 사항	7.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 관한 사항
8. 재정비촉진지구 기반시설 설치비 국고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	8.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단 및 공동주택상담실 운영
9. 재정비촉진사업 계획수립 및 매몰·융자금 등 비용지원에 관한 사항	9.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추진----------
10. 재정비촉진지구 및 단독주택재건축구역 사업현황 등 통계에 관한 사항	10. 시범·시민아파트 관리 및 정리에 관한 사항
11. 재정비촉진지구 내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 준공검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1.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운용에 관한 사항
12. 재정비촉진지구 및 단독주택재건축구역 내 공사장 안전	12.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에 관한 사항

점검 지원에 관한 사항	
13. 단독주택재건축구역 내 기반시설 설치계획 수립 및 추진사항 관리	13. 공동주택 감사에 관한 사항
14. 재정비촉진지구 및 단독주택재건축구역 내 강제철거예방대책 및 인권지킴이 활동에 관한 사항	14.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자치구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
15. 단독주택재건축구역 세입자 대책에 관한 사항	15.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사항
16. 재정비촉진구역 및 단독주택재건축구역(해제지역) 공공재개발 정비계획 결정 및 사업시행에 관한 사항	16. 민영주택 품질점검단 운영에 관한 사항
<신 설>	17. 소규모재건축에 관한 사항
<신 설>	18. 공동주택 행위허가에 관한 사항
<신 설>	19.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에 관한 사항
<신 설>	20. 재건축 안전진단에 관한 사항
<신 설>	21. 공동주택 관리사업 자치구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
<신 설>	22.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 및 전자결재시스템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신 설>	23.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결정에 관한 사항
⑬ 주거환경개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⑬ 주거정비과장----------.
1. 저층주거지 주거환경개선 및 재생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 및 조례에 관한 사항
2. 주거환경개선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부문) 수립 및 정비에 관한 사항
3.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별 정비계획 수립 및 사업추진 등에 관한 사항	3.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공공재개발 포함)의 구역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주거환경개선사업 거점시설 확충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공공정비계획수립 지원에 관한 사항
5. 성곽마을 보전·관리 종합계획 수립 및 권역별 사업추진 등에 관한 사항	5. 재개발 관리대책에 관한 사항
6.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정비구역 직권해제 계획수립·실행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빈집 관련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7.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파견 계획 수립·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8. 빈집 매입 및 정비에 관한 사항	8. 공공지원 추진위원회 구성 및 조합설립 지원 제도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9. 저층주거지 재생사업 모델 개발 및 시행에 관한 사항	9. 공공지원 정비사업 표준 선거관리규정 및 공공지원 추진위원회 구성 선거관리기준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10. 주거지보전사업에 관한 사항	10. 공공지원 시공자·설계자·정비업체·공동시행 건설업자 선정기준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11. 주거재생 지역 내 생활편의시설 확충에 관한 사항	11. 공공지원 정비사업 예산·회계규정, 표준 행정업무규정, 조합설립지원을 위한 업무기준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12. 도시재생뉴딜사업(근린재생일반형·주거지지원형·우리동네살리기)에 관한 사항	12. 조합운영 실태점검 계획수립·실행 및 개선에 관한 사항
13. 서울형 도시재생사업(근린재생일반형) 선정, 활성화계획 수립 등 추진에 관한 사항	13. 조합설립추진위원회·조합에 대한 정비사업 융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14. 창신숭인 채석장 일대 명소화 사업에 관한 사항	14. 정비사업 종합정보관리시스템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15. 도시재생지원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15. 정비사업 관련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 운영에 관한 사항
<신 설>	16. 정비사업 관련 통계에 관한 사항
<신 설>	17.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사용비용 보조에 관한 사항

<신 설>	18.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구역 내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신 설>	19. 주택사업특별회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계정 운용 및 시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신 설>	20.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신 설>	21. 민간·공공재개발 공모 및 선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신 설>	22. 정비사업 통합심의에 관한 사항
<신 설>	23. 정비사업 실태조사 및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신 설>	24. 정비사업 강제철거 예방대책 추진에 관한 사항
⑭ 지역건축안전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⑭ 재정비촉진과장----------.
1. 건축물 안전정책 수립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 재정비촉진사업 종합(지구)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건축물 안전 관련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2.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및 재정비촉진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
3. 건축행정의 기술적인 사항 검토·확인에 관한 사항	3. 재정비촉진지구(구역) 및 단독주택재건축 구역 지정·해

	제 등에 관한 사항
4. 재난대비 건축물 실태조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도시재정비위원회 및 소위원회, 시·구합동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건축물 안전점검 및 개량·보수에 대한 사항	5.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령·조례 운영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민간공사장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주택사업특별회계 재정비촉진사업 계정 운영에 관한 사항
7. 기존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 보강에 관한 사항	7. 재정비촉진지구 기반시설확보·부담기준 및 설치비용 지원기준 등에 관한 사항
8. 기존 건축물의 지진안전에 관한 사항	8. 재정비촉진지구 기반시설 설치비 국고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
9. 안전취약 건축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9. 재정비촉진사업 계획수립 및 매몰·융자금 등 비용지원에 관한 사항
10. 건축물관리법 및 조례에 관한 사항	10. 재정비촉진지구 및 단독주택재건축구역 사업현황 등 통계에 관한 사항
11. 건축물 안전관리 관련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	11. 재정비촉진지구 내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 준공검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신 설>	12. 재정비촉진지구 및 단독주

	택재건축구역 내 공사장 안전 점검 지원에 관한 사항
<신 설>	13. 단독주택재건축구역 내 기반시설 설치계획 수립 및 추진사항 관리
<신 설>	14. 재정비촉진지구 및 단독주택재건축구역 내 강제철거예방대책 및 인권지킴이 활동에 관한 사항
<신 설>	15. 단독주택재건축구역 세입자 대책에 관한 사항
<신 설>	16. 재정비촉진구역 및 단독주택재건축구역(해제지역) 공공재개발 정비계획 결정 및 사업시행에 관한 사항
⑮ 한옥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⑮ 한옥건축자산과장----------.
1. ~ 16. (생 략)	1. ~ 16. (현행과 같음)
<신 설>	17. 서울건축문화제 및 서울시 건축상에 관한 사항
<신 설>	18. 건축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
<신 설>	19.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추진에 관한 사항
<신 설>	20. 서울도시건축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제21조(도시공간본부에 두는 과)	제21조(도시공간본부) ① (현행과

① (생 략)	같음)
② 도시공간본부장은 지방이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도시공간기획관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지방기술서기관으로, 도시공간전략과장·도시계획과장·도시계획상임기획과장·도시재창조과장·신속통합기획과장·도시관리과장·시설계획과장 지방기술서기관으로, 토지관리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 ---------- ---------- ---------- ---------- ------- 도시공간전략과장·도시계획과장·도시계획상임기획과장·도시재창조과장·신속통합기획과장·도시관리과장·시설계획과장은 ---------- ---------- ---------- ---.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⑤ 도시공간전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⑤ ----------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신 설>	9. 국가철도구간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에 관한 종합계획 및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9.·10. (생 략)	10.·11. (현행 제9호 및 제10호와 같음)
<신 설>	12. 도시계획 및 도시공간 정책 홍보에 관한 사항
11. (생 략)	13. (현행 제11호와 같음)
⑥ 도시계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⑥ ----------

분장한다.	------.
1. ~ 13. (생 략)	1. ~ 13. (현행과 같음)
<신 설>	14. 공공기여시설 통합관리에 관한 사항
<신 설>	15. 공공기여 관련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
⑦ 도시계획상임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⑦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서울 도시계획 연혁관리 및 도시계획 홍보에 관한 사항	6. ---------- 연혁관리----------
7. ~ 11. (생 략)	7. ~ 11. (현행과 같음)
<신 설>	12. '미래서울도시관'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⑧ 도시재창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⑧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서울도심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삭 제>
3. 서울도심 내 도시계획(지구단위계획) 수립·운영에 관한 사항	<삭 제>
<신 설>	4.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관련 계획 의제처리 포함)
4.·5. (생 략)	2.·3. (현행 제4호 및 제5호와

	같음)
6.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6. 역세권 활성화사업에 대한 정책 및 제도 수립·운영에 관한 사항
<신 설>	7. 역세권 활성화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7. (생 략)	5. (현행 제7호와 같음)
8. 역세권활성화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삭 제>
⑨ (생 략)	⑨ (현행과 같음)
⑩ 도시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⑩ ----------.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신 설>	10. 서울도심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관한 사항
<신 설>	11. 서울도심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⑪ (생 략)	⑪ (현행과 같음)
⑫ 토지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⑫ ----------.
1. 지적 및 토지행정 기본계획의 수립·조정	1. ------ 부동산정책 ----------
2. 토지관리·토지조사에 관한 사항	2.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부동산 실명제 및 부동산매매계약서 검인에 관한 사항	3.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운용에 관한

	사항
4. 부동산실거래 신고 및 주택 거래 신고제 운영에 관한 사항	4.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운용에 관한 사항
5. 서울부동산정보광장 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5. 부동산정보포털시스템 및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6.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결정에 관한 사항	6.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운용에 관한 사항
7. 토지정보시스템 운영 및 지적전산화에 관한 사항	7. 공익사업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추천에 관한 사항
8. 지적에 관한 사항 총괄·조정	8.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운용에 관한 사항
9. 개발부담금에 관한 사항	9. 「공인중개사법」 운영에 관한 사항
10. 부동산 중개업소 및 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	10. 지적측량 적부심사 및 지방지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1. 공유토지분할정리에 관한 사항	11. 부동산 시장 동향분석, 거래상황 조사 및 부동산동향 작성에 관한 사항
12. 「외국인토지법」 운용에 관한 사항	1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운용에 관한 사항
13.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운영에 관한 사항	<삭 제>
<신 설>	14.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

	법」 운용에 관한 사항
14. (생 략)	13. (현행 제14호와 같음)
15.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운용에 관한 사항	<삭 제>
<신 설>	18. 외국인을 위한 글로벌 공인중개사무소 지정, 운영에 관한 사항
16. ~ 18. (생 략)	15. ~ 17. (현행 제16호부터 제18호까지와 같음)
<신 설>	19. 조상 땅찾기 및 공공기관 부동산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제22조(균형발전본부에 두는 과) ① (생 략)	제22조(균형발전본부) ① (현행과 같음)
② 균형발전본부장은 지방이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균형발전기획관은 지방부이사관으로, 균형발전정책과장·도시정비과장·동남권사업과장·동북권사업과장·광화문광장사업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서부권사업과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지방기술서기관으로, 균형발전정책과장·도시정비과장·동남권사업과장·동북권사업과장·광화문광장사업과장----------.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균형발전정책과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④ ----------.
1. ~ 15. (생 략)	1. ~ 15. (현행과 같음)

<신 설>	16. 균형발전특별회계 운용에 관한 사항
16. (생 략)	17. (현행 제16호와 같음)
⑤ ~ ⑨ (생 략)	⑤ ~ ⑨ (현행과 같음)
제23조(푸른도시여가국에 두는 과) ① 푸른도시여가국에 공원여가정책과·공원여가사업과·공원조성과·조경과·자연생태과·동물보호과·산지방재과를 둔다.	제23조(정원도시국) ① 정원도시국에 정원도시정책과·공원여가사업과·공원조성과·조경과·자연생태과·동물보호과·산지방재과를 둔다.
② 푸른도시여가국장은 지방이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공원여가정책과장·공원조성과장·자연생태과장·동물보호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공원여가사업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조경과장·산지방재과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정원도시국장---------- ---------- 정원도시정책과장·공원조성과장·자연생태과장·동물보호과장---------- ---------- ---------- ---------- ----------.
③ 공원여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③ 정원도시정책과장---------- ----------.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신 설>	10. 공원·산림 등 여가·문화사업 홍보에 관한 사항
10. (생 략)	11. (현행 제10호와 같음)
④ 공원여가사업과장은 다음 사	④ ----------

항을 분장한다.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공원·산림 등 여가·문화사업 홍보에 관한 사항	<삭 제>
⑤ ~ ⑨ (생 략)	⑤ ~ ⑨ (현행과 같음)
제71조(과의 설치) ① ~ ⑩ (생략)	제71조(과의 설치) ① ~ ⑩ (현행과 같음)
⑪ 영동대로복합개발추진단에 사업총괄과·복합개발토목과·복합개발건축과·복합개발설비과를 두며, 사업총괄과장·복합개발토목과장·복합개발건축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복합개발설비과장은 지방공업사무관으로 보한다. <단서 신설>	⑪ ----------. 다만, 복합개발건축과장은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제76조(과의 설치) ① 삭 제	제76조(과의 설치)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⑤ (생 략)	④ (현행 제5항과 같음)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85조(하부조직) ① ~ ⑦ (생략)	제85조(하부조직)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한강전략사업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⑧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수상택시 및 도선사업의 인·허가 및 관리
4.·5. (생 략)	5.·6. (현행 제4호 및 제5호와 같음)
6. 한강협력사업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삭 제>
⑨ 한강여가사업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⑨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수상택시 및 도선사업의 인·허가 및 관리	<삭 제>
4. ~ 15. (생 략)	3. ~ 14. (현행 제4호부터 제15호까지와 같음)
제90조(하부조직) ① 서울특별시 데이터센터(이하 이 절에서 "데이터센터"라 한다)에 기획관리과·정보자원운영과·인터넷통신과·클라우드센터운영과·에스플렉스센터운영과를 두고, 기획관리과장, 정보자원운영과장, 클라우드센터운영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인터넷통신과장, 에스플렉스센터운영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제90조(하부조직) ① ---------- 기획관리과·정보자원운영과·인터넷통신과·상암정보운영과·에스플렉스센터운영과를 두고, 기획관리과장·정보자원운영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인터넷통신과장·상암정보운영과장·에스플렉스센터운영과장----------.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정보자원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③ ----------.
1. 내부행정정보시스템서버·주변기기 운영	1. 내부행정 전산장비 서버·주변기기 운영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통합정보관리시스템(SMS) 운영 및 성능개선	3. 종합관제시스템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5. 전산장비 유지관리
6. 데이터센터 H/W, S/W도입	6. 데이터센터 정보자원(H/W, S/W 등) 도입 및 유지보수
7. 정보시스템 서비스 수준 관리	7. 정보자원 ----------
8. 정보시스템 운영실태조사 및 장애진단·대응	8. 정보자원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클라우드센터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⑤ 상암정보운영과장----------.
1. 클라우드센터 서버 및 주변기기 운영	1. 상암센터 ----------
2. 클라우드센터 정보통신 및 정보보호시스템 운영	2. 상암센터 ----------
3. 클라우드센터 H/W, S/W 도입 및 유지관리	3. 상암센터 ----------
4. 클라우드포털·종합관리시스	4. 클라우드포털 및 관제시스템

템 운영	운영
5. 클라우드센터 시설물 유지관리	<삭 제>
6. 클라우드센터 정보시스템 서비스 수준 관리	<삭 제>
7. 클라우드센터 정보자원 장애 진단·대응	<삭 제>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92조(하부조직) ① 어린이병원에 진료부·간호부·간호1과·간호2과·약제과 및 원무과를 두고, 진료부장 및 간호부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간호1·2과장은 지방간호사무관으로, 약제과장은 지방약무사무관으로, 원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92조(하부조직) ① ---------- 진료부·간호부·약제---------- 약제과장---------- 보하고, 간호부 밑에 간호행정과·31병동간호과·32병동간호과·33병동간호과·34병동간호과·41병동간호과·42병동간호과·43병동간호과·51병동간호과를 두며 각 과장은 지방간호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서북병원에 진료부·간호부·약제부·간호1과·간호2과·원무과 및 의료지원과를 두고,	② --------- 진료부·간호부·약제부·원무----------

진료부장·간호부장 및 약제부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간호1·2과장은 지방간호사무관으로, 원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의료지원과장은 지방의료기술사무관으로 보한다.	---------- --- 지방기술서기관으로----- ---------- ---------- ---------- ---------- 보하고, 간호부 밑에 간호행정과·14병동간호과·15병동간호과·17병동간호과·25병동간호과·34병동간호과·35병동간호과·53병동간호과·54병동간호과를 두며 각 과장은 지방간호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은평병원에 진료부·간호부·간호1과·간호2과·약제과 및 원무과를 두고, 진료부장·간호부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간호1과장·간호2과장은 지방간호사무관으로, 약제과장은 지방약무사무관으로, 원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 진료부·간호부·마약관리센터·약제------- ---------- 진료부장·간호부장, 마약관리센터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 ---------- 보하고, 간호부 밑에 간호행정과·24병동간호과·41병동간호과·42병동간호과·51병동간호과·52병동간호과를 두며 각 과장은 지방간호사무관으로 보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각 진료부장은 개방형직위로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④ ----------진료부장과 제3항 마약관리센터장----------.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 간호부에 간호과를 두고, 간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⑥ 간호부에 간호행정과와 병동간호과를 두고, 간호행정과장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을, 병동간호과장은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을 분장한다.
1. 환자의 간호 및 위생관리	1. 간호부 내 행정에 관한 사항
2. 병실 내 물품의 관리	2. 간호부 인력 운영 및 근무에 관한 사항
3. 간호사 근무에 관한 사항	3. 공급실, 외래간호 등---
<신 설>	4. 병동 내 간호인력 근무에 관한 사항
<신 설>	5. 병동 환자의 간호 및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신 설>	6. 병동 내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항
⑦·⑧ (생 략)	⑦·⑧ (현행과 같음)
<신 설>	⑨ 은평병원 마약관리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마약류 중독 검사, 외래 진료 및 입원 치료

	2. 마약 중독 관련 상담 및 재활 3. 마약류 중독 연구 및 교육 4. 마약류 중독 대응 관련 민관 파트너십 구축
제99조(하부조직) ① ~ ③ (생 략) ④ 학예연구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2. (생 략) 3. 문화재·유적조사, 도시역사 자료 발굴조사 4. (생 략) 5. 한양도성연구소, 한양도성박물관, 청계천박물관, 동대문역사관 및 서울생활사박물관 등 운영관리	제99조(하부조직)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1.·2. (현행과 같음) 3. 국가유산·유적조사---------- 4. (현행과 같음) 5. ---------- 동대문역사관, 서울생활사박물관 및 서울우리소리박물관 ----------
제104조(하부조직) ① 한성백제박물관에 총무과·전시기획과·교육홍보과·유물과학과 및 백제학연구소를 두고, 총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전시기획과장 및 교육홍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학예연구관으로, 유물과학과장 및 백제학연구소장은 지방학예연구관으	제104조(하부조직) ① ---------- ---------- ---------- ---------- ----- 백제학연구소장------ ---------- --- 교육홍보과장 및 유물과학과장----------

로 보한다. 다만, 전시기획과장은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 ---- 백제학연구소장----------.
② 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②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몽촌토성·몽촌역사관·백제집자리전시관 유지 및 운영관리	3. 몽촌토성·서울백제어린이박물관·백제집자리전시관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③ 전시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③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국내·외 문화재 및 소장유물 전시운영에 관련된 사항	2. ------ 국가유산 ----------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유물과학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⑤ ----------.
1. 유물 수집(구입, 기증, 기탁) 및 국가귀속문화재 위임·위탁 관련 업무	1. ---------- 국가귀속문화유산 ----------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106조(하부조직) ①·② (생략)	제106조(하부조직)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전시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③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국내·외 문화재 및 소장유물 전시운영에 관한 사항	2. ------ 국가유산 ----------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수집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⑤ ----------.
1. 자료 수집(구입, 기증, 기탁) 및 국가귀속문화재 위임·위탁 관련 업무	1. ---------- 국가귀속문화유산 ----------
2. ~ 8. (생 략)	2. ~ 8. (현행과 같음)
제108조(하부조직) ① ~ ④ (생략)	제108조(하부조직)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시립북서울미술관 운영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⑤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서울사진미술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111조(하부조직) ① (생 략)	제111조(하부조직) ① (현행과 같음)
② 운영기획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목동사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스포츠마케팅과장은 지	② ----------

방행정사무관으로, 시설개선과장은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스포츠마케팅과장은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 <단서 삭제>
③ 운영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③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잠실종합운동장, 구의야구공원 및 뚝섬승마훈련원 운영	4. ---------- 구의야구공원 ----------
5.·6. (생 략)	5.·6. (현행과 같음)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⑥ 시설개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⑥ ----------.
1. 잠실종합운동장, 효창운동장, 구의야구공원 및 뚝섬승마훈련원의 건축물·토목 구조물 유지관리	1. ---------- 구의야구공원----------
2. 잠실종합운동장, 효창운동장, 구의야구공원 및 뚝섬승마훈련원의 기계·전기·냉난방 등 각종 시설 설비 유지관리	2. ---------- 구의야구공원----------
3. 잠실종합운동장, 효창운동장, 구의야구공원 및 뚝섬승마훈련원의 조경시설 및 녹지대 유지관리	3. ---------- 구의야구공원----------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113조(하부조직) ①·② (생략)	제113조(하부조직)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지식문화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③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	<삭 제>
4. 책 보물섬 조성, 관리,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3. 서울책보고 및 서울아트책보고 ---
5.·6. (생 략)	4.·5. (현행 제5호 및 제6호와 같음)
7. 사업소 내 다른 과 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6. ---------- 과의 ----------
④ 도서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도서관 진흥 및 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	2. 지역도서관 발전 및 도서관 서비스 강화를 위한 시책 수립·시행
<신 설>	3. 지역도서관 지원 및 협력사업 수행
3. (생 략)	6. (현행 제3호와 같음)
<신 설>	7. 독서문화진흥 시책 발굴 및 시행
4. 도서관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사항	<삭 제>

5. 교육청 도서관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사항	5. 지역도서관 협력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6. 도서관에 관한 조사·연구 및 사서교육에 대한 사항	4. 지역도서관 업무 및 운영개선---
<신 설>	8. 그 밖에 도서관 등록·평가 등 광역대표도서관으로서의 업무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115조(하부조직) ① 서울역사편찬원에 시사편찬과를 두고, 시사편찬과장은 지방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다만, 시사편찬과장은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제115조(하부조직) ① ---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학예연구관---------.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27조(하부조직) ① 서울특별시동부공원여가센터에 공원운영과·공원여가과·시설과·조경지원과 및 서울숲관리사무소를 두고, 공원운영과장 및 공원여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시설과장은 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조경지원과장 및 서울숲관리사무소장은 지방녹지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공원여가과장은 지방	제127조(하부조직) ① --- 공원운영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공원여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으로--------------- --. <단서 삭제>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129조(하부조직) ① 서울특별시중부공원여가센터에 공원운영과·공원여가과·시설과·조경지원과 및 서울로관리사무소를 두고, 공원운영과장 및 공원여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시설과장은 지방녹지사무관으로, 조경지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으로, 서울로관리사무소장은 지방녹지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공원여가과장은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제129조(하부조직) ① --- 공원운영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공원여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으로----------. <단서 삭제>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131조(하부조직) ① 서울특별시서부공원여가센터에 공원운영과·공원여가과·시설과·환경녹지과·여의도공원관리사무소 및 문화비축기지관리사무소를 두고, 공원운영과장은 지방녹지사무관으로, 공원여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시설과장은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	제131조(하부조직) ① --- --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으로, 시설과장은 지

시설사무관으로, 환경녹지과장은 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으로, 여의도공원관리사무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으로, 문화비축기지관리사무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공원여가과장 및 문화비축기지관리사무소장은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방공업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으로----------. <단서 삭제>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133조(하부조직) ① 서울특별시북부공원여가센터에 공원운영과·공원여가과·시설과·조경지원과를 두고, 공원운영과장 및 공원여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시설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으로, 조경지원과장은 지방녹지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공원여가과장은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제133조(하부조직) ① ----------. <단서 삭제>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44조(위원장) ① (생 략)	제144조(위원장) ① (현행과 같음)
② 감사위원장은 감사 및 인권사무에 관하여 시장을 보좌한	② ---------- 감사 ----------

다.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45조(하부조직) ①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에 감사담당관·공공감사담당관·안전감사담당관·조사담당관·인권담당관을 두고, 감사담당관·공공감사담당관·안전감사담당관·조사담당관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인권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제145조(하부조직) ① ---------- ---------- 감사담당관·청렴담당관·공공감사담당관·안전감사담당관·조사담당관----- ---------- ---------- ----------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청렴담당관---- ----------.
②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② ----------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적극행정 지원, 사전컨설팅, 적극행정 면책심의에 관한 사항	<삭 제>
7. 청렴시책 관련 업무	<삭 제>
<신 설>	9. 감사위원장이 명하는 감사 및 조사사항의 처리
8. ~ 10. (생 략)	6. ~ 8. (현행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와 같음)
11. 감사위원장이 명하는 감사사항의 처리	<삭 제>
12. (생 략)	10. (현행 제12호와 같음)
③ 공공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	③ 청렴담당관----------

을 분장한다.	--------.
1. 지방공사·공단 및 출연기관 감사에 관한 계획 수립·조정	1. 청렴도 향상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지방공사·공단 및 출연기관 감사, 감사결과 처리	2. 부패방지에 관한 추진계획 수립·운영 및 부패영향평가 총괄
3. 지방공사·공단 및 출연기관 자체감사기구 평가	3. 반부패·청렴 교육 및 홍보에 관한 계획·운영 총괄
4. 지방공사·공단 및 출연기관 상임감사 성과평가	4. 청렴·부패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5. 지방공사·공단 및 출연기관 비리신고센터	5. 이해충돌 및 공무원행동강령에 관한 사항
6. 일상감사에 관한 사항	6. 적극행정 지원, 사전컨설팅, 적극행정 면책 운영--------
7. 소관 사항 관련 징계 처분된 공무원의 소청 및 행정소송에 관한 사항	7. 공직자 재산등록 및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8. 감사위원장이 명하는 감사사항의 처리	8. ---------- 감사 및 조사사항----------
④ 안전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공공감사담당관----------
1. 기술, 안전분야 감사에 관한 계획 수립·조정	1. 지방공사·공단 및 출연기관 ----------

2. 도시기반시설의 시설계획 및 건설기술 관련사항의 감사	2. 지방공사·공단 및 출연기관 감사, 감사결과 처리
3. 시설물·공사장 및 주택·건축물의 안전관리실태 감사	3. 지방공사·공단 및 출연기관 자체감사기구 평가
<신 설>	4. 지방공사·공단 및 출연기관 상임감사 성과평가
4. (생 략)	6. (현행 제4호와 같음)
5. 하도급 관련 시·자치구 및 그 산하기관 감사	5. 일상감사에 관한 사항
6.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자치구, 공사·공단 포함)	<삭 제>
7. 하도급 부조리 민원사항 조사 및 처리	7. 감사위원장이 명하는 감사 및 조사사항의 처리
8. 하도급호민관제 운영에 관한 사항	<삭 제>
9. 감사위원장이 명하는 감사사항의 처리	<삭 제>
⑤ 조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⑤ 안전감사담당관----------.
1. 비위사항의 조사·처리	1. 기술, 안전분야 감사에 관한 계획 수립·조정
2. 정보 및 동향보고사항의 처리	2. 도시기반시설의 시설계획 및 건설기술 관련사항의 감사
3. 사이버 정보유출 조사사항의 처리	3. 시설물·공사장 및 주택·건축물의 안전관리실태 감사

4. 감사위원장이 명하는 조사사항의 처리	9. ---------- 감사 및 조사사항----------
5. 주요시책 사항의 점검	5. 하도급 관련 시·자치구 및 그 산하기관 감사
<신 설>	6.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자치구, 공사·공단 포함)
6. (생 략)	4. (현행 제6호와 같음)
7. 공직자 재산등록 및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하도급 부조리 민원사항 조사 및 처리
8. 공직자비리신고센터 및 공익제보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8. 하도급호민관제 ----------
9. 공익제보자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	<삭 제>
10. 공무원행동강령에 관한 사항	<삭 제>
11. 부조리신고보상금 지급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삭 제>
12. 공직자 기강감찰에 관한 사항	<삭 제>
13. 공무직, 공공안전관 비위사항 조사·처리	<삭 제>
⑥ 인권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⑥ 조사담당관----------

분장한다.	------.
1. 인권정책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1. 비위사항의 조사·처리
2.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운영	2. 정보 및 동향 보고사항의 처리
3. 인권보호 및 인권증진 정책 개발	3. 사이버 정보유출 조사사항의 처리
4.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운영 및 인권침해 사항 상담·조사·결정·이행관리	<삭 제>
5. 공무원 등 인권교육 실시	5. 주요시책 사항의 점검
6. 시민 인권의식 확산	6. 소관 사항 관련 징계 처분된 공무원의 소청 및 행정소송에 관한 사항
7. 국내·외 인권단체 및 기관 교류 협력	7. 공직자비리신고센터 및 공익제보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8. 인권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8. 공익제보자 보호·지원--
<신 설>	9. 공무원행동강령에 관한 조사 및 처리
<신 설>	10. 부조리신고보상금 지급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신 설>	11. 공직자 기강감찰에 관한 사항
9. 감사위원장이 명하는 조사사항의 처리	4. ---------- 감사 및 조사사항----------

<신 설>	-------
	12. 공무직, 공공안전관 비위사항 조사·처리
제146조(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① 서울특별시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위원장(이하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이라 한다)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제146조(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① ---------- ---------- ---------- --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
②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은 시정감시 및 고충민원 조사·감사 사무에 관하여 시장을 보좌한다.	② ---------- 시정감시, 고충민원 조사·감사, 인권 관련 ----------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패트롤민원 직접조사·처리	<삭 제>
5. ~ 8. (생 략)	4. ~ 7. (현행 제5호부터 제8호까지와 같음)
9. 청렴계약 감시·평가에 관한 사항	8. 공공사업 ---------- --
10. 120현장민원, 시민불편살피미 등 시민생활불편민원 총괄·조정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9. 120현장민원 ---------- --

<신 설>	11. 민원배심제 운영에 관한 사항
11. (생 략)	10. (현행 제11호와 같음)
<신 설>	12. 인권정책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
<신 설>	13.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운영
<신 설>	14.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운영 및 인권침해사항 상담·조사·결정·이행관리
<신 설>	15. 인권보호 및 인권증진 정책 개발
<신 설>	16. 인권교육 실시 및 시민 인권의식 확산
<신 설>	17. 국내·외 인권단체 및 기관 교류 협력
<신 설>	18. 인권경영 및 인권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별표4] 서울특별시립병원별 진료과 (제91조제2항 관련)	[별표4] ---------- (제93조제3항 관련)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1585호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5월 23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민선8기 시정 실행력 제고를 위한 조직개편 사항 반영 및 새로운 행정수요 대응을 위해 총정원 변동없이 직렬·직급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율신설기구 · 한시기구 정비 및 사업 추진력 강화를 위한 직급조정
- 3급 +7명, 3 · 4급 △2명, 4급 +10명, 4 · 5급 △6명, 5급 +36명, 6급 +4명, 7급 △13명, 8급 △30명, 9급 △9명

※ 본청 4급 1명 감축 및 상계를 위한 7급 증원은 '24년 10월 13일부터 시행

나. 전문경력관의 효율적 인력 운영을 위하여 직군 조정 및 장기결원 조정
- 서울대공원 동식물관리요원(임기제) 퇴직 인력충원을 위한 전문경력관 다군 조정 (농업 · 녹지 9급 △4 → 전문경력관 +4)
- 물재생센터 위험물취급요원(전문경력관) 장기결원 정원 조정 사항 포함 (전문경력관 △1→ 공업(화공) · 환경 6급 +1)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12일까지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참조 : 조직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조직담당관(전화: 02-2133-672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의견서에 기재할 사항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2)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 조직담당관
- 이메일 : syg1108@seoul.go.kr
- 온라인 :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 이 입법예고문 및 규칙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규칙 제 호

이 규칙의 개정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총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총 계	11,730	4,762	429	1,146	5,166	227

같은 표 일반직 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일반직 계	10,700	4,708	420	368	4,979	225

같은 표 3급 소계란, 부이사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3급 소계	25	15		1	9	
부이사관	25	15		1	9	

같은 표 3·4급 소계란, 부이사관또는서기관란, 부이사관또는서기관·기술서기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3·4급 소계	3	2				1
부이사관또는서기관	1					1
부이사관또는서기관·기술서기관	2	2				

같은 표 4급 소계란, 서기관란, 기술서기관란, 서기관또는기술서기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4급 소계	269	164	19	8	71	7
서기관	105	77	9	7	9	3
기술서기관	65	25			40	
서기관또는기술서기관	84	62			18	4

같은 표 4·5급 소계란, 서기관또는행정사무관을 다음과 같이 하고, 서기관또는행정사무관란 아래 서기관·기술서기관또는행정사무관·시설사무관란을 다음과 같이 삭제한다.

4·5급 소계	2	1				1
서기관또는행정사무관	2	1				1

같은 표 5급 소계란, 행정란, 사회복지란, 공업란, 의무란, 간호란, 보건란, 시설란, 방송통신란, 시설관리란, 행정또는녹지란, 행정또는보건란, 행정또는방송통신란, 행정또는사회복지란, 행정또는학예연구관란, 행정·공업또는시설란, 공업또는환경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시설관리란 아래 행정또는간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급 소계	1,621	1,082	56	58	367	58
행정	756	552	52	26	74	52
사회복지	5	4			1	
공업	76	46			29	1
의무	72	4		4	64	
간호	27	3			24	

보건	12	12				
시설	221	150			70	1

방송통신	18	15		1	2	

시설관리	1	1				
행정또는간호	1	1				

행정또는녹지	15	5			10	
행정또는보건	6	6				

행정또는방송통신	11	9			2	

행정또는사회복지	15	15				

행정또는학예연구관	15	4			11	

행정・공업또는시설	73	64		1	8	

공업또는환경	12	11			1	

같은 표 6급 소계란, 행정란, 전산란, 공업란, 녹지란, 간호란, 식품위생란, 보건진료란, 환경란, 시설란, 방재안전란, 방송통신란, 위생란, 시설관리란, 행정또는시설란, 행정또는학예연구사란, 행정·공업또는시설란, 행정또는전산란, 공업또는시설란, 공업또는환경란, 녹지또는시설란, 간호또는보건란, 환경또는환경연구사란, 토목운영란, 통신운영란, 사무운영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6급 소계	3,730	1,958	176	110	1,387	99
행정	1,443	889	147	44	294	69
전산	102	76	3	3	18	2
공업	353	108	6	5	232	2
녹지	76	40			36	
간호	152	18			134	
식품위생	8	3			5	
보건진료	12	6			6	
환경	49	29		13	7	
시설	609	348	3	2	237	19
방재안전	4	4				
방송통신	59	36	3	2	18	
위생	8			1	7	
시설관리	38	11			27	

행정또는시설	48	46			2	
행정또는학예연구사	25	8			17	
행정・공업또는시설	76	69			6	1
행정또는전산	11	7	1		2	1
공업또는시설	16	9			7	
공업또는환경	10	2			8	
녹지또는시설	2	1			1	
간호또는보건	3	1			2	
환경또는환경연구사	6			6		
토목운영	2				2	
통신운영	8	3		1	4	
사무운영	27	8	1	2	15	1

같은 표 7급 소계란, 행정란, 사회복지란, 전산란, 공업란, 간호란, 위생란, 간호조무란, 시설관리란, 운전란, 행정또는공업란, 행정또는시설란, 행정또는전산란, 행정또는학예연구사란, 공업또는시설란, 간호또는보건란, 기계운영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공업또는시설란 아래 공업또는환경란을 삭제하며, 방재안전또는공업란 아래 방재안전또는녹지란을 삭제하고, 토목운영란 아래 건축운영란을 삭제한다.

7급 소계	3,267	1,302	123	131	1,654	57
행정	1,210	653	88	59	368	42
사회복지	35	25	1		8	1
전산	135	77	4	10	43	1
공업	405	20	6	10	367	2
간호	141	13		3	125	
위생	1	1				
간호조무	1				1	
시설관리	6	2			4	
운전	56	12	1	2	41	
행정또는공업	10	3		1	6	
행정또는시설	38	34			2	2
행정또는전산	13	6			7	

행정또는학예연구사	23	4			19	

공업또는시설	11	4			7	

간호또는보건	2	1			1	

기계운영	54	2	1	1	50	

같은 표 8급 소계란, 행정란, 방호란, 공업란, 간호란, 시설란, 위생란, 시설관리란, 토목운영란, 전기운영란, 기계운영란, 사무운영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행정또는공업란 아래 행정또는녹지란을 삭제하며, 토목운영란 아래 건축운영란·통신운영란을 삭제하고, 기계운영란 아래 화공운영란을 삭제한다.

8급 소계	1,067	125	38	56	847	1
행정	98	14	7	11	66	

방호	81	24	6	3	48	
공업	98	4	2	4	88	

간호	108				108	

시설	75	5			70	

위생	5	2			3	

시설관리	175			2	173	

토목운영	1				1	

전기운영	14	1			13	
기계운영	12	1			11	

사무운영	116	39	13	15	48	1

같은 표 9급 소계란, 공업란, 시설관리란, 농업또는녹지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농업또는녹지란 아래 기계운영란·사무운영란을 삭제한다.

9급 소계	523	4	3	1	515	

공업	52				52	

시설관리	329	1		1	327	
농업또는녹지	4				4	

같은 표 전문경력관 소계란, 나군 소계란, 위험물취급요원란, 다군 소계란, 동물사육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전문경력관 소계	160	28	4	2	126	

나군 소계	66	24	4	2	36	

위험물취급요원	2				2	

다군 소계	90				90	

동물사육	44				44	

같은 표 연구직 계란, 연구사 소계란, 학예연구란, 기록연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연구직 계	410	24		199	187	

연구사 소계	337	18		157	162	
학예연구	101	14		2	85	
기록연구	9	1			8	

같은 표 조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조교	77			77		

※ 2024년 7월 1일부터 2024년 10월 12일까지 4급 소계 총계란은 270으로 하고 본청란은 165로 하며, 4급 기술서기관 총계란은 66으로 하고 본청란은 26으로 하며, 7급 소계 총계란은 3,266으로 하고 본청란은 1,301로 하며 7급 행정또는시설 총계란은 37로 하고 본청란은 33으로 한다.

별표 2의 소방공무원 계란, 소방령란, 소방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소방공무원 계	7,434	160		7,274		

소방령	184	28		156		

소방사	3,666	25		3,641		

부 칙

이 규칙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별표 1]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 직급별·직렬별 정원표(제2조제1항 관련)

구 분	총계	본청	의회 사무처	직속 기관	사업소	합의제 행정기관
총 계	11,730	4,739	429	1,148	5,187	226
(생략)						
일반직 계	10,700	4,681	420	371	5,004	224
(생략)						
3급 소계	18	8		1	9	
부이사관	18	8		1	9	
3·4급 소계	5	5				
부이사관또는서기관	4	4				
부이사관또는서기관·기술서기관	1	1				
4급 소계	259	154	19	8	70	8
서기관	101	72	9	7	9	4
기술서기관	64	25			39	
서기관또는기술서기관	79	57			18	4
(생략)						
4·5급 소계	8	8				
서기관또는행정사무관	6	6				
서기관·기술서기관또는행정사무관·시설사무관	2	2				
5급 소계	1,585	1,079	56	58	338	54
행정	746	543	52	26	77	48
사회복지	4	3			1	
(생략)						
공업	74	44			29	1
(생략)						
의무	63	4		4	55	
(생략)						
간호	22	16			6	
(생략)						
보건	13	13				
시설	215	144			70	1
(생략)						
방송통신	22	19		1	2	
(생략)						
시설관리	1	1				
칸추가						
(생략)						
행정또는녹지	13	5			8	
행정또는보건	5	5				
(생략)						
행정또는방송통신	6	5			1	

개 정 안

[별표 1]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 직급별·직렬별 정원표(제2조제1항 관련)

구 분	총계	본청	의회 사무처	직속 기관	사업소	합의제 행정기관
총 계	11,730	4,762	429	1,146	5,166	227
(현행과 같음)						
일반직 계	10,700	4,708	420	368	4,979	225
(현행과 같음)						
3급 소계	25	15		1	9	
부이사관	25	15		1	9	
3·4급 소계	3	2				1
부이사관또는서기관	1					1
부이사관또는서기관기술서기관	2	2				
4급 소계	269	164	19	8	71	7
서기관	105	77	9	7	9	3
기술서기관	65	25			40	
서기관또는기술서기관	84	62			18	4
(현행과 같음)						
4·5급 소계	2	1				1
서기관또는행정사무관	2	1				1
칸삭제						
5급 소계	1,621	1,082	56	58	367	58
행정	756	552	52	26	74	52
사회복지	5	4			1	
(현행과 같음)						
공업	76	46			29	1
(현행과 같음)						
의무	72	4		4	64	
(현행과 같음)						
간호	27	3			24	
(현행과 같음)						
보건	12	12				
시설	221	150			70	1
(현행과 같음)						
방송통신	18	15		1	2	
(현행과 같음)						
시설관리	1	1				
행정또는간호	1	1				
(현행과 같음)						
행정또는녹지	15	5			10	
행정또는보건	6	6				
(현행과 같음)						
행정또는방송통신	11	9			2	

현 행						
(생략)						
행정또는사회복지	14	14				
(생략)						
행정또는학예연구관	15	6			9	
(생략)						
행정·공업또는시설	76	67		1	8	
(생략)						
공업또는환경	11	10			1	
(생략)						
6급 소계	3,726	1,940	176	110	1,396	104
행정	1,440	887	147	44	287	75
(생략)						
전산	101	75	3	3	17	3
(생략)						
공업	353	109	6	5	231	2
(생략)						
녹지	75	39			36	
(생략)						
간호	152	13			139	
(생략)						
식품위생	9	3			6	
보건진료	21	6			15	
환경	51	29		15	7	
시설	601	342	3	2	236	18
방재안전	3	3				
방송통신	59	35	3	2	19	
위생	11			1	10	
(생략)						
시설관리	42	11			31	
(생략)						
행정또는시설	47	45			2	
(생략)						
행정또는학예연구사	24	10			14	
행정·공업또는시설	77	69			7	1
(생략)						
행정또는전산	10	7	1		2	
(생략)						
공업또는시설	15	9			6	
(생략)						
공업또는환경	9	2			7	
(생략)						
녹지또는시설	1				1	
(생략)						
간호또는보건	1	1				
(생략)						
환경또는환경연구사	4			4		
(생략)						
토목운영	3				3	
(생략)						
통신운영	9	3		1	5	
(생략)						
사무운영	25	6	1	2	15	1
7급 소계	3,280	1,287	123	132	1,682	56
행정	1,221	649	88	59	383	42
사회복지	36	21	1		13	1

개 정 안						
(현행과 같음)						
행정또는사회복지	15	15				
(현행과 같음)						
행정또는학예연구관	15	4			11	
(현행과 같음)						
행정·공업또는시설	73	64		1	8	
(현행과 같음)						
공업또는환경	12	11			1	
(현행과 같음)						
6급 소계	3,730	1,958	176	110	1,387	99
행정	1,443	889	147	44	294	69
(현행과 같음)						
전산	102	76	3	3	18	2
(현행과 같음)						
공업	353	108	6	5	232	2
(현행과 같음)						
녹지	76	40			36	
(현행과 같음)						
간호	152	18			134	
(현행과 같음)						
식품위생	8	3			5	
보건진료	12	6			6	
환경	49	29		13	7	
시설	609	348	3	2	237	19
방재안전	4	4				
방송통신	59	36	3	2	18	
위생	8			1	7	
(현행과 같음)						
시설관리	38	11			27	
(현행과 같음)						
행정또는시설	48	46			2	
(현행과 같음)						
행정또는학예연구사	25	8			17	
행정·공업또는시설	76	69			6	1
(현행과 같음)						
행정또는전산	11	7	1		2	1
(현행과 같음)						
공업또는시설	16	9			7	
(현행과 같음)						
공업또는환경	10	2			8	
(현행과 같음)						
녹지또는시설	2	1			1	
(현행과 같음)						
간호또는보건	3	1			2	
(현행과 같음)						
환경또는환경연구사	6			6		
(현행과 같음)						
토목운영	2				2	
(현행과 같음)						
통신운영	8	3		1	4	
(현행과 같음)						
사무운영	27	8	1	2	15	1
7급 소계	3,267	1,302	123	131	1,654	57
행정	1,210	653	88	59	368	42
사회복지	35	25	1		8	1

현 행							개 정 안						
(생략)							(현행과 같음)						
전산	137	79	4	10	43	1	전산	135	77	4	10	43	1
(생략)							(현행과 같음)						
공업	407	22	6	10	367	2	공업	405	20	6	10	367	2
(생략)							(현행과 같음)						
간호	140	7		3	130		간호	141	13		3	125	
(생략)							(현행과 같음)						
위생	6	1		2	3		위생	1	1				
(생략)							(현행과 같음)						
간호조무	3				3		간호조무	1				1	
시설관리	4	2			2		시설관리	6	2			4	
운전	53	11	1	2	39		운전	56	12	1	2	41	
(생략)							(현행과 같음)						
행정또는공업	9	2		1	6		행정또는공업	10	3		1	6	
행정또는시설	34	31			2	1	행정또는시설	38	34			2	2
(생략)							(현행과 같음)						
행정또는전산	12	4			8		행정또는전산	13	6			7	
(생략)							(현행과 같음)						
행정또는학예연구사	23	5			18		행정또는학예연구사	23	4			19	
(생략)							(현행과 같음)						
공업또는시설	10	4			6		공업또는시설	11	4			7	
공업또는환경	1	1					**칸삭제**						
(생략)							(현행과 같음)						
방재안전또는공업	1				1		방재안전또는공업	(현행과 같음)					
방재안전또는녹지	1	1					**칸삭제**						
(생략)							(현행과 같음)						
간호또는보건	4	1			3		간호또는보건	2	1			1	
(생략)							(현행과 같음)						
토목운영	2				2		토목운영	(현행과 같음)					
건축운영	1				1		**칸삭제**						
(생략)							(현행과 같음)						
기계운영	54	3	1		50		기계운영	54	2	1	1	50	
(생략)							(현행과 같음)						
8급 소계	1,097	140	38	58	860	1	8급 소계	1,067	125	38	56	847	1
행정	104	20	7	11	66		행정	98	14	7	11	66	
							(현행과 같음)						
방호	87	28	6	3	50		방호	81	24	6	3	48	
공업	99	5	2	4	88		공업	98	4	2	4	88	
(생략)							(현행과 같음)						
간호	113				113		간호	108				108	
(생략)							(현행과 같음)						
시설	76	5			71		시설	75	5			70	
(생략)							(현행과 같음)						
위생	6	2			4		위생	5	2			3	
(생략)							(현행과 같음)						
시설관리	154			2	152		시설관리	175			2	173	
(생략)							(현행과 같음)						
행정또는공업	1	1					행정또는공업	(현행과 같음)					
행정또는녹지	2				2		**칸삭제**						
(생략)							(현행과 같음)						
토목운영	4				4		토목운영	1				1	
건축운영	1				1		**칸삭제**						
통신운영	2	1			1		**칸삭제**						
전기운영	21	1			20		전기운영	14	1			13	
기계운영	23	1		1	21		기계운영	12	1			11	
화공운영	1				1		**칸삭제**						
(생략)							(현행과 같음)						
사무운영	122	42	13	16	50	1	사무운영	116	39	13	15	48	1

현 행							개 정 안						
9급 소계	532	5	3	1	523		9급 소계	523	4	3	1	515	
(생략)							(현행과 같음)						
공업	53	1			52		공업	52				52	
(생략)							(현행과 같음)						
시설관리	331	1		1	329		시설관리	329	1		1	327	
농업또는녹지	8				8		농업또는녹지	4				4	
기계운영	1				1		칸삭제						
사무운영	1				1		칸삭제						
전문경력관 소계	157	28	4	2	123		전문경력관 소계	160	28	4	2	126	
(생략)							(현행과 같음)						
나군 소계	67	24	4	2	37		나군 소계	66	24	4	2	36	
(생략)							(현행과 같음)						
위험물취급요원	3				3		위험물취급요원	2				2	
(생략)							(현행과 같음)						
다군 소계	86				86		다군 소계	90				90	
(생략)							(현행과 같음)						
동물사육	40				40		동물사육	44				44	
(생략)							(현행과 같음)						
연구직 계	410	28		199	183		연구직 계	410	24		199	187	
(생략)							(현행과 같음)						
연구사 소계	337	22		157	158		연구사 소계	337	18		157	162	
학예연구	101	17		2	82		학예연구	101	14		2	85	
기록연구	9	2			7		기록연구	9	1			8	
(생략)							(현행과 같음)						

※ 2024년 7월 1일부터 2024년 10월 12일까지 4급 소계 총계란은 270으로 하고 본청란은 165로 하며, 4급 기술서기관 총계란은 66으로 하고 본청란은 26으로 하며, 7급 소계 총계란은 3,266으로 하고 본청란은 1,301로 하며 7급 행정또는시설 총계란은 37로 하고 본청란은 33으로 한다.

[별표 2] 서울특별시에 두는 소방공무원 정원의 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제2조제2항 관련)

구 분	총계	본청	의회 사무처	직속 기관	사업소	합의제 행정기관
소방공무원 계	7,434	157		7,277		
(생략)						
소방령	179	27		152		
(생략)						
소방사	3,671	23		3,648		

[별표 2] 서울특별시에 두는 소방공무원 정원의 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제2조제2항 관련)

구 분	총계	본청	의회 사무처	직속 기관	사업소	합의제 행정기관
소방공무원 계	7,434	160		7,274		
(현행과 같음)						
소방령	184	28		156		
(현행과 같음)						
소방사	3,666	25		3,641		

기관의 장
선람

공람									

발행인 서울특별시장 편집인 홍보기획관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 02-2133-6431 문의 : ☎120